

# 한·미 FTA 주요내용

2012. 6

---

## 관계부처 합동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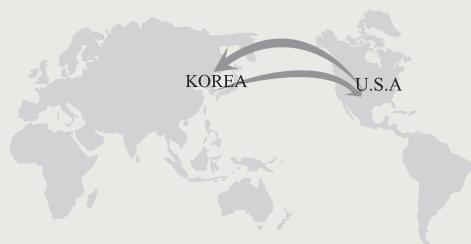




※ 동 설명자료는 한·미 FTA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협정문의 주요 내용 위주로 정리되었으며 자료상의 용어는 협정상의 법률적 용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Contents · 목 차

1	서문 / 최초 규정 및 정의	7
2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9
3	농 업	20
4	섬유 및 의류	37
5	의약품 및 의료기기	48
6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55
7	관세 행정 및 무역 원활화	66
8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69
9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71
9-1	자동차	74
10	무역구제	81
11	투 자	88
12	국경간 서비스 무역	103
13	금융서비스	121



14	통 신	135
15	전자상거래	141
16	경쟁 관련 사안	143
17	정부조달	147
18	지적재산권	153
19	노 동	169
20	환 경	175
21	투명성	182
22	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	184
23	예 외	193
24	최종 조항	196
※ 부록1 서비스투자위원회 및 중소기업 작업반 설치 서한		203
부록2 공동위원회 절차규칙		210
부록3 분쟁해결절차 모범절차규칙		212



# 서문 / 최초 규정 및 정의

## 「서문」주요 내용

- 서문은 협정의 기본정신 및 원칙에 대한 선언적 내용을 포함
  - 양국의 긴밀한 관계, 무역·투자의 자유화 목적, 양국간 무역 장벽 제거, 노동·환경 정책 강화, 협정에 따른 투자자 권리 보호의 수준, WTO의 권리·의무 존중 등

## 「최초 규정 및 정의」주요 내용

※ 제1절 최초규정(Initial Provisions)과 제2절 일반적 정의(General Definitions)로 구성

- 최초규정에서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타 협정과의 관계, 지역정부의 협정 이행 보장 의무를 규정
  - 정의규정에서 협정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정의 규정
    - ※ 영역(territory), 국민(national), 중앙·지역정부, 관세, 조치, 기업, FTA에 원용된 각종 협정 등의 정의를 규정
- ① 타 협정과의 관계
    -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기준의 양자 및 다자 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 확인
  - ② 지역정부에 대한 협정 적용 여부
    - 미국의 주정부(state government)에도 협정이 적용

## ③ 국민(national)의 정의

- 우리 :「국적법」의 의미 내에서 “대한민국의 국민”
- 미국 :「이민 및 국적법(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정의된 “미합중국의 국민”

※ 한국의 경우, 군사분계선(DMZ) 이북 주민에 대해서는 이 협정상 혜택이 부여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각주 포함

## ④ 중앙정부 및 지역정부, 지방정부의 정의

- 양국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정의

구 분	중앙 정부 (central level of government)	지역 정부 (regional level of government)	지방 정부 (local level of government)
한 국	중앙 정부	—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미 국	연방 정부	주 정부	별도 정의 없음 (County 수준의 기초자치체 의미)

※ 협정상 지방정부의 정의 : “대한민국의 경우, 지방정부라 함은 지방자치법에 정의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협정 제11장 각주8, 제12장 각주6, 제13장 각주3)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정의된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군·구

## ⑤ 영역(territory)의 정의

우리 나라	미 국
1) 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1) 50개 주, 콜럼비아 특별구 및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하는 미합중국의 관세 영역(customs territory)*
2) 대한민국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2) 미합중국 및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하는 대외 무역지대(foreign trade zone)**, 그리고 3) 해저 및 하부토양과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미합중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미합중국 영해 밖의 지역

\* 관세영역은 50개 주, 콜럼비아 특별구(워싱턴 DC) 및 푸에르토리코에 한정 (19 CFR 10.1) – 괌, 사이판 등은 제외

※ 19 CFR 10.1 : Customs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includes only the States, the District of Columbia, and Puerto Rico.

\*\* Foreign Trade Zone은 <http://ia.ita.doc.gov/ftzpage/letters/ftzlist-map.html>에서 확인 가능

# 2

##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 내국민대우 및 수출입제한금지

- ▣ 당사국은 1994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 (제2.2조)
- ▣ 당사국은 1994 GATT 제11조 및 그 주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수출 및 판매에 대해서 금지 또는 제한 부과 금지 (제2.8조)
- ▣ 내국민대우 및 수출입 제한 금지의 예외 (부속서 2-가)
  - 우리나라는 WTO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조치, WTO 절차에 따라 시장교란을 다루기 위하여 적용하는 조치를 예외로 규정
  - 미국은 상기 WTO관련 2가지 조치 외에 원목수출통제, Jones Act(미국내 수상운송 규제)를 추가 예외로 규정
    - ※ 미국은 기체결한 모든 FTA에서 상기 예외를 반영
      - 미국은 서부에 위치한 17개 주(Alaska 및 Hawaii 제외)의 연방 및 주정부 소유림에서 벌채된 원목의 수출을 금지(산림자원의 보존 및 부족완화법(Forest Resources Conservation & Shortage Relief Act of 1990))
      - 미국 상선법(제27장)은 미국내 화물운송은 “미국에서 ①건조되고

- ② 미국민이 소유(법인인 경우, 75%이상 미국민 소유)하고 있는  
 ③ 미국 국적선(U.S. built, U.S. owned, U.S. flag vessel)"에 의해  
 서만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

※ Jones Act는 넓은 뜻으로 미국의 국내수상운송과 관련된 법령을 통칭  
 하나, 좁은 의미로는 상선법 제27장(Section 27 of the Merchant  
 Marine Act of 1920)을 지칭

- 우리나라 역시 미국의 Jones Act와 같이 국내항간 운송선박은 내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국내 건조요건은 없음. (선박법 제2조, 제6조)

## 조정관세 반영 (대한민국 관세양허표 일반주해)

### □ 우리나라의 협정 관세율표 기준관세율: 조정관세

#### 참고: 조정관세

-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100%를 상한으로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

- 현 조정관세 대상 품목은 대부분 주수입원이 중국인 품목

#### 〈 조정관세 연도별 운용 현황 〉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폐지	–	24	8	3	1	3	–	3	1	1	2	–	–	1	–
세율인하	–	10	10	20	10	9	11	7	9	8	7	8	7	7	6
운용품목	62	38	30	27	26	23	23	20	19	18	16	16	16	15	15

#### ※ 2012년 조정관세 적용 품목 (15개)

- 당면, 새우젓, 활동, 활농어, 냉동민어, 냉동 오징어, 냉동명태, 냉동  
 꽁치, 활민어, 활뱀장어, 혼합조미료, 맥주, 표고버섯, 찐쌀, 합판

## 일시반입 상품에 대한 면세 (제2.5조)

- ▣ 양국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일부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일시반입을 허용

※ 일시반입 대상 물품

- 언론매체 또는 텔레비전을 위한 장비, 소프트웨어, 그리고 방송 및 영화 촬영 장비를 포함하는 전문 장비
-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 상업용 견본품과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 스포츠용으로 반입되는 상품

### 참고: 양국 관련 국내법

#### ○ 우리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4'를 통해 협정상 일시반입 대상인 미국 상품에 대한 면세를 규정

#### ○ 미국

- 관세율표(HTSUS) 개정을 통해 협정상 일시반입 대상인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면세를 규정 (HTSUS Chapter 98, Subchapter 22, US note 1(b)에 한미 FTA 추가)

※ 한·미 FTA는 무관세 일시반입(제2.5조)의 경우, 무관세가 아니었다면 부과되었을 부과금의 110% 이하의 담보율 제공이 가능하다고 규정(제2.5조제3항)하고 있으나, 미국은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거주민이 반입한 한국 원산지의 무관세 일시반입 상품에 대하여 채권 등 담보유지의무 면제 (19 CFR 10.31)

##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면세 (제2.6조)

- ▣ 양국은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적용

※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그 상품의 수출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리 또는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또는 수리 또는 개조가 그 상품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와 무관

### 참고: 양국 관련 국내법

#### ○ 우리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4'를 통해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미국에 수출된 후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면세를 규정

#### ○ 미국

- 관세율표(HTSUS) 및 세관국경보호국(CBP)의 통관규정 개정을 통해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한국에 수출된 후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면세를 규정
- ☞ HTSUS의 Chapter 98, Subchapter 22, US note 1(c)에 한미 FTA 추가
- ☞ 미 세관보호국(CBP)의 한미FTA 이행관련 통관규정(19 CFR Part 10)에 관련 규정 포함

## 미국의 물품취급수수료 면제 (제2.10조)

- ▣ 미국은 우리 상품에 대해 물품취급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를 면제

종 류	징수내역	징수근거 및 대상
물품취급수수료 (Merchandise Processing F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합예산총괄조정법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1985)</li> <li>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부과(종가세)</li> <li>(1) 미국속령의 제품, (2) 최빈 국가의 제품, (3) 카리브연안 특혜대상국가의 제품은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0불 이상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가격의 0.21% (최대 건당 \$485)</li> </ul> </li> <li>2,000불 이하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신고: \$2</li> <li>수동신고(개인): \$6</li> <li>수동신고(세관): \$9</li> </ul> </li> </ul>

### 참고: 미측 관련 국내법

- 한미 FTA 이행법으로 통합예산총괄조정법(19 USC 58c(b))을 개정하여 한국산 상품에 대한 물품취급수수료 면제
-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한국산 상품에 대한 물품취급수수료 면제를 규정한 통관 지침 발표

### 양국 특산품 인정 [제2.13조]

- 미국은 안동소주와 경주법주를 대한민국의 특산품으로 인정하고, 우리나라는 버본 위스키와 테네시 위스키를 미국의 특산품으로 인정
- 관련 법령에 따라 제조되지 아니한 경우 상대국에서 동일 명칭으로 판매하는 것을 불허
  - 미국은 재무부 고시(TTB Ruling)를 통해, 우리는 주세 관련 법령을 통해 각각 관련 의무 이행

## 상품(공산품/임수산물) 양허

- 양국은 상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FTA를 달성

### ■ 승용차

- 미국의 경우, 한·미 FTA 협정 이행 1년차부터 이행 4년차 까지는 기준관세율 2.5%를 적용하다가, 이행 5년차 1월 1일에 관세를 완전히 철폐

☞ 한·미 FTA가 2012.3.15에 발효하였으므로, 미국은 한국이 원산지인 승용차에 대하여 동 협정 이행 4년차인 2015.12.31까지 기준관세율 2.5%를 유지하고 이행 5년차인 2016.1.1부터 관세를 완전히 철폐

-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 협정이 발효되는 날에 현행 기준관세율 8%를 4%로 인하하여 이행 4년차까지 동 관세율을 적용하다가, 이행 5년차 1월 1일에 관세를 완전히 철폐

☞ 한·미 FTA 협정이 2012.3.15에 발효하였으므로, 한국은 미국이 원산지인 승용차에 대하여 2012.3.15부로 기준관세율 8%를 4%로 인하하여, 동 협정 이행 4년차인 2015.12.31까지 4%를 유지한 후, 이행 5년차인 2016.1.1부터 관세를 완전히 철폐

### ■ 전기자동차

- 미국의 경우, 한국 원산지 전기자동차(HS 870390)에 대한 관세 2.5%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하여, 한·미 FTA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관세를 완전히 철폐 (당초 9년간 철폐에서 4년간 철폐로 단축)

☞ 한·미 FTA 협정이 2012.3.15에 발효하였으므로, 미국은 한국이 원산지인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2012년부터 5단계에 걸쳐 매년 0.5% 씩 관세를 인하하여 한·미 FTA 이행 5년차인 2016.1.1부터 관세를 완전히 철폐

-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 발효일에 미국 원산지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현행 8%에서 4%로 인하하고, 한·미 FTA 이행 2년차 1월 1일부터 4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하다가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관세를 완전히 철폐 (당초 9년간 철폐에서 4년간 철폐로 단축)

☞ 한·미 FTA 협정이 2012.3.15에 발효하였으므로, 우리나라를 미국이 원산지인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2012년에 4%의 관세를 적용하고 2013.1.1부터 4단계에 걸쳐 매년 1%씩 관세를 인하하여 한·미 FTA 이행 5년차인 2016.1.1부터 관세를 완전히 철폐

## ▣ 화물자동차

-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 이행 1년차부터 이행 7년차까지는 미국의 현행 기준 관세율 25%를 유지한 후, 이행 8년차 1월 1일부터 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하여,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관세를 완전히 철폐
- ☞ 한·미 FTA 협정이 2012.3.15에 발효하였으므로, 미국은 한국이 원산지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2012.3.15부터 2018.12.31까지는 25%의 관세를 유지하다가 2019.1.1부터 3단계에 걸쳐 매년 8.33% 씩 관세를 인하하여 2021.1.1부터 관세를 완전히 철폐

### 참고: 한·미 자동차분야 특징

- 미국 자동차 시장은 우리의 8.7배 규모 : (韓) 147만대 vs. (美) 1,274만대
- 대미수출은 수입의 42배 규모 : (수출) 58.8만대 vs. (수입) 1.4만대
- 반면, 우리 자동차 관세는 미국의 3배 이상 : (韓) 8% vs. (美) 2.5%
  - ※ 추가협상 결과 이후에도, 발효후 4년간 우리는 4%, 미국은 2.5% 유지
- 또한, 우리 자동차의 미국내 시장점유율은 10%에 육박

- 우리측 민감 수산물 및 임산물에 대해 장기철폐, 비선형 관세철폐, TRQ 등을 도입하여 민감성 확보

- 명태는 15년, 민어는 12년의 장기철폐 기간 확보

〈 양국 상품(섬유, 농산물 포함) 양허결과 〉

(단위: 백만불, %)

양허 단계	우리나라 전체품목				미국 전체품목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즉시	9,003	80.0%	21,778	77.6%	8,623	82.1%	28,280	69.2%
2~3년	765	6.8%	3,362	12.0%	366	3.5%	508	1.2%
3년 이내	9,768	86.8%	25,140	89.6%	8,989	85.6%	28,788	70.4%
5년	589	5.2%	842	3.0%	756	7.2%	10,346	25.3%
5년 이내	10,357	92.0%	25,982	92.6%	9,745	92.8%	39,134	95.7%
6~7년	44	0.4%	122	0.4%	92	0.9%	31	0.1%
9~10년	667	5.9%	1,240	4.4%	586	5.6%	1,719	4.2%
10년 이내	11,068	98.3%	27,344	97.4%	10,423	99.2%	40,885	100.0%
10년초과	161	1.4%	477	1.7%	82	0.8%	2	0.0%
계절/현행관세	16	0.1%	213	0.8%	–	–	–	–
제외	16	0.1%	26	0.1%	–	–	–	–
합 계	11,261	100.0%	28,060	100.0%	10,505	100.0%	40,887	100.0%

※ 수입액 : 2003~2005년 3개년 평균

※ 2011.2월 추가협상 결과 반영

## 〈 양국 상품(섬유, 농산물 제외) 양허결과 〉

(단위: 백만불, %)

양허 단계	우리나라 공산품				미국 공산품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즉시	7,160	84.9%	19,957	80.3%	6,171	87.0%	26,441	69.7%
2~3년	719	8.5%	3,323	13.4%	356	5.0%	508	1.3%
3년 이내	7,879	93.4%	23,280	93.7%	6,527	92.0%	26,949	71.0%
5년	228	2.7%	453	1.8%	206	2.9%	9,838	25.9%
5년 이내	8,107	96.1%	23,733	95.5%	6,733	94.9%	36,787	96.9%
6~7년	—	—	—	—	—	—	—	—
9~10년	323	3.8%	1,100	4.4%	344	4.8%	1,167	3.1%
10년 이내	8,430	100.0%	24,833	100.0%	7,077	99.8%	37,953	100.0%
10년초과	4	0.0%	7	0.0%	17	0.2%	2	0.0%
계절/현행관세	—	—	—	—	—	—	—	—
제외	—	—	—	—	—	—	—	—
합 계	8,434	100.0%	24,840	100.0%	7,094	100.0%	37,955	100.0%

※ 수입액 : 2003~2005년 3개년 평균

※ 2011.2월 추가협상 결과 반영

## 〈 미국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

단계	품 목 수 (총 7,094개)	주요 품목 (관세율)
즉시	6,171	캠코더(2.1), TV카메라(2.1), 자동차 부품(2.5), 엔진(2.5), 헤드폰(4.9), 폴리아세틸수지(6.5), 에폭시수지(6.1), 피아노(4.7), 핸드백(3.3~20), 매트리스(3~6), 유리거울(6.5~7.8), 제트유 및 등유(배럴당 10.5~52.5센트) 등
3년	356	실리콘수지(3), 콘택트렌즈(2), 금속절삭가공기계(4.4), 유기계면활성제(4), 10인이상 승용자동차(2) 등
5년	206	승용차(2.5), 레디알타이어(4), 실리콘망간철(3.9), 폴리에스테르(6.5), 면직물(0~12.5) 등
10년	344	가정용 전자레인지(2), 폴리에스테르수지(6.5), 베어링(2.4~9), ABS수지(6.5), 섬유건조기(3.4), 화물자동차(25) 등 ※ 10년 비선형: 참치캔(6~35), 세라믹타(8.5/10), 철강(4.3~6.2)
10년 초과	17	특수신발(20~55.3, 12년 비선형)

## 〈 한국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

단계	품 목 수 (총 8,434개)	주요 품목 (관세율)		
		공산품	임산물	수산물
즉시	7,160	자동차 부품(3~8), 크실렌(5), 통신용광케이블(8), 기어박스(8), 전자계측기(8), 헬륨(5.5), 할로겐전구(8), 도난/화재/가스경보기(8), 카본블랙(5.5), 광섬유(8) 등	원목(2), 기타 비금속광물(3~8), 벼루(8) 등	브라인슈림프알(8), 냉동굴(20), 검정대구(10, 냉동), 연어(10-산것, 냉동), (20-신선.냉장, 훈제) 등
3년	719	폴리카보네이트(6.5), 요소(6.5), 실리콘오일(6.5), 폴리우레탄(6.5), 골프채(8), 콘택트렌즈(8), 냉각기(8), 샴푸(8), 향수(8), 알칼리망간건전지(13), 제초제(6.5) 등	제재목류(5), 단판(5~8)	해삼(20), 왕게(20), 먹장어(10, 산갓), 등
5년	228	승용차(8), 고주파증폭기(8), 안전면도날(8), 환자감시장치(8), 면도기(8), 헤어린스(8), 치석제거기(8) 등	창문/틀(8), 로진(6.5), 코르크(8), 바구니(8), 등	명란(10, 냉동), 대구(10, 냉동), 바다가재(20), 새우살(20, 냉동), 은대구(10, 냉동) 등
10년	323	아크릴니트릴(6.5), 기초화장품(8), 폐놀(5.5), 초음파 영상진단기(8), 자기공명 촬영기기(8), 불베어링(13), 폴리에틸렌(6.5), 복합형 확성기(8), 아세톤(5.5), 안전밸브(8), 내시경(8) 등	목제식탁용품(8), 목재틀(8), 마루판(12) 등 (10년 비선형) 파티클보드(8), 섬유판(8), 합판(12) 등	홍어(27, 냉동), 임연수어(10, 냉동), 문어(20, 냉동) 등 (10년 비선형) 명태어육(10, 냉동 필레트), 오징어(24, 냉동), 꼬치(36, 냉동), 등
12년 (비선형)	1			고등어(10, 냉동)
12년 (TRQ)	2			민어(63, 냉동), 기타 낍자(10, 냉동)
15년 (TRQ)	1			명태(30, 냉동)

※ 2011.2월 추가협상 결과 반영

## 농업

## 관세율할당 (TRQ) (제2장 부록 2-나-1, 제3.2조)

□ 관세율할당(TRQ: Tariff Rate Quota) : 일정 물량까지는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하고, 그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량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제도

- 우리측은 탈·전지·분유 및 연유, 오렌지 등 19개 품목 대상
- 미측은 낙농품 대상

※ 대상품목(19개 품목) : 넙치류, 명태, 민어, 탈·전지분유 및 연유, 식용유장, 버터, 치즈, 천연꿀, 감자(칩용 및 종자용 외), 오렌지, 보리(맥주맥 및 시리얼용 외), 맥아 및 맥주맥, 옥수수 전분, 식용대두, 사료용 근채류, 인삼, 조제분유, 보조사료, 덱스트린

※ 미측 대상품목 : 낙농품

□ 협정 부록 2-나-1에 규정된 품목들(19개 품목)의 TRQ 관리방식으로 우리측은 선착순·수입권 공매·허가제도를 통한 수입권 배분 등 다양한 관리방식 도입(미측은 선착순 방식 도입)

※ 우리측은 TRQ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한·미 FTA에 따른 TRQ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2-32호, 2012.3.12)」으로 정하여 운영

##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제3.3조, 부속서 3-가)

- ▣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 쇠고기, 돼지고기, 인삼 등 30개 품목에 대해 수입이 일정 물량 이상으로 급증하는 경우, 관세를 추가 부과하여 국내 시장을 보호

※ 대상품목(30개 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양파, 마늘, 고추, 콩류, 고구마, 기타 뿌리 및 괴경류, 사과, 녹차, 생강, 맥아 및 맥주맥, 보리, 팝콘, 옥수수(기타), 메밀, 곡류·곡물의 분쇄물·가공곡물, 감자의 분·조분·분말 등, 옥수수 전분, 감자 전분, 매니옥 전분, 고구마 전분, 기타 전분, 낙화생, 참깨, 인삼, 참기름, 설탕, 주정, 덱스트린

- 후지사과, 고추, 마늘, 양파, 생강, 인삼, 참깨, 참기름 등 주요 품목은 관세철폐 후에도 일정 기간(2~3년간) 농산물 세이프가드 유지
- 제3장에 의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제10장(무역구제)에 따른 긴급수입제한조치, 또는 1994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상의 조치와 동시 적용 또는 유지 불가
- 협정에 따른 원산지 농산물은 WTO 농업협정 상의 농업긴급 수입제한조치에 따른 관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 농산물무역위원회 (제3.4조)

- ▣ 설치 및 구성

- 협정 발효후 90일 이내 설치
- 각 당사국 대표로 구성

- ▣ 기능

- 협정 제3장의 이행 및 운영 점검 및 관련 협력 증진

- 협정에 따른 여타 위원회 등과 협정 제3장 관련 사안에 대해 협의
- 공동위원회가 부여하는 추가 업무 수행

▣ 회합

-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매년 최소 1회

**양측 농산품 양허협상 결과**

(단위 : 억불, %)

단계	우리나라 농산물				미국 농산물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즉시	578	37.8	16.5	55.3	1,065	58.7	1.8	82.0
2~3년	39	2.5	0.07	0.2	10	0.6	0	0.1
5년	337	22.0	3.6	11.9	401	22.1	0.05	2.0
6~7년	44	2.9	1.2	4.1	92	5.1	0.3	13.8
9~10년	344	22.5	1.4	4.7	180	9.9	0.05	2.0
10년초과	157	10.2	4.7	15.7	65	3.6	0	0.0
계절/현행관세	16	1.0	2.1	7.2	–	–	–	–
제외	16	1.0	0.26	0.9	–	–	–	–
합계	1,531	100	29.8	100	1,813	100	2.2	100

※ 수입액 : 2003~2005년 3개년 평균

**우리측 농산품 양허협상 결과**

**(1) 농산물 양허 개요**

- 국내 영향이 미미하거나 이미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관세를 즉시 철폐
  - 즉시철폐율 : 농산물 전체 품목수 기준 37.8%, 수입액 기준 55.3%
- 민감도가 낮은 품목은 즉시철폐에서 10년까지 철폐기간을 차별화하여 양허
  -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양허제외, 관세율할당,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도입, 세번 분리,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예외적 취급 및 15년 이상의 장기 관세철폐기간을 확보

## (2) 예외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

- (양허제외) 쌀 및 쌀 관련 제품(벼, 메현미, 칠현미, 맵쌀, 찹쌀, 쇠미, 쌀가루 등 16개 세번)은 완전 제외(양허표상 양허단계:Y)
- (현행관세 유지, TRQ)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관세율이 높아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경우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고, 일정량의 TRQ 제공
  - 식용대두, 감자(칩용 및 종자용 제외), 탈전지분유 및 연유, 천연꿀(부록 2-나-1에 규정된 품목 중 양허단계 X)
- (계절관세) 민감품목 중 수확·유통 기간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 되는 품목은 우리나라 수확·유통 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호
  - 칩용감자(양허단계 U)
    - (5.1~11.30) 이행 1년차부터 7년차까지 기준관세율(30.4%) 유지한 후, 이행 8년차부터 8단계에 걸쳐 균등 철폐
    - (12.1~4.30) 즉시철폐

■ 포도(양허단계 V)

- (5.1~10.15) 17년 균등 철폐
- (10.16~4.30) 협정 발효일에 24%로 인하된 후, 이행 2년차 부터 4단계에 걸쳐 균등 철폐

■ 오렌지(양허단계 W)

- (9.1~2월말일) 기준관세율(50%) 유지
  - (3.1~8.31) 협정 발효일에 30%로 인하된 후, 이행 2년차부터 6단계에 걸쳐 균등 철폐
- ※ 오렌지는 계절관세와 함께 TRQ 대상

▣ (세번 분리) 양국의 주력 품종이나 용도가 구분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부분을 집중 보호

■ 사과(HSK 0808100000)

- 후자는 20년간 관세철폐(23년 세이프가드)
-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10년 세이프가드)

■ 배(HSK 0808201000)

- 동양배 품종은 20년간
-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

■ 감자(HSK 0701900000)

- 칩용 감자는 계절관세(즉시 철폐 또는 15년간 관세철폐)
- 기타 감자는 현행관세 유지(TRQ 포함)

■ 대두(HSK 1201009000)

- 대두(장류박용, 간장원료)는 즉시 철폐
- 기타 대두는 현행관세 유지(TRQ 포함)

## 〈 우리족 농산물 양허 개요 〉

(단위: %, 천불)

양허 유형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주요 품목
양허제외	16	1.0	25,555	0.9	쌀 및 쌀 관련 제품
현행+TRQ	14	0.9	90,926	3.0	식용대두, 식용감자, 탈·전지분유 및 연유, 천연꿀
17년, 계절관세	1	0.1	4,099	0.1	포도
15년, 계절관세	0(1)	0.1	0	0.0	칩용 감자
7년, 계절관세+TRQ	1	0.1	118,409	4.0	오렌지
18년+TRQ	4	0.3	1	0.0	인삼(수삼, 백삼의 본삼, 미삼, 잡삼)
15년+TRQ	10	0.7	93,503	3.1	치즈, 보리, 맥아 및 맥주맥, 옥수수전분, 사료용 식물
12년+TRQ	6	0.4	8,369	0.3	보조사료, 덱스트린
10년+TRQ	11(1)	0.8	17,224 (체다 제외)	0.6	버터, 조제분유(유아용), 유장(식용), 체다치즈
20년	0(2)	0.1	0	0.0	사과(후지), 배(동양배)
18년	3	0.2	0	0.0	홍삼(본삼·미삼·잡삼)
16년	2	0.1	1,058	0.0	설탕
15년	98(2)	6.5	353,259	11.8	육우, 쇠고기, 계란, 녹용, 녹각, 고추, 마늘, 양파, 생강, 표고버섯, 키위, 호두(미탈각), 감귤, 녹차, 밤, 잣, 참깨, 참기름, 주정, 전분, 혼합조미료 등
12년	34	2.2	13,504	0.5	젖소, 닭고기(냉동가슴살, 냉동날개), 난황(건조, 기타), 냉동양파, 수박, 멜론 등

양허 유형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주요 품목
10년	332	21.7	122,792	4.1	산 데지, 복숭아, 감, 단감, 김귤쥬스, 사과쥬스(브릭스 20 이내), 잎담배, 자두, 로얄젤리, 인조꿀, 닭다리(냉동), 돼지고기(냉장 삼겹살, 목살, 갈비 등), 고구마, 사과(후지 제외), 배(동양배 제외), 찐쌀, 쌀의 배아, 송이, 느타리, 팽이, 영지버섯 등
9년	1	0.1	0	0.0	신선달기
7년	41	2.7	59,292	2.0	맥주, 아이스크림, 살구, 팝콘용 옥수수, 옥수수(가공용), 포도(조제저장처리), 사과(조제저장처리), 사과쥬스(브릭스 20 초과) 등
6년	2	0.1	13,070	0.4	옥수수유(기타), 호두(탈각)
5년	317(2)	20.7	347,007	11.6	오렌지쥬스(냉장), 토마토쥬스, 크랜베리 주스, 자두쥬스, 완두콩, 감자(냉동), 위스키, 스파게티, 국수, 당면, 냉면, 인스턴트 커피, 간장, 고추장 등
2016.1.1까지	1	0.1	49,984	1.7	냉동 기타 돼지고기(목살, 갈비살 등)
2014.1.1까지	20	1.3	7,705	0.3	돼지고기(냉장 도체 및 이분도체, 냉장 전, 후지, 냉동육, 설육, 가공품)
3년	33	2.2	65	0.0	해조류 등
2년	6	0.4	6,920	0.2	아보카도, 레몬, 프룬(건조 자두), 콜라베이스 등
즉시 철폐	578(9)	37.8	1,650,575	55.3	오렌지쥬스(냉동), 포도쥬스, 산동물, 종축, 원피, 면화, 마 등 섬유 원료, 화훼류, 커피, 포도주, 밀, 사료용 옥수수, 대두(채유용, 장류제조용), 사료용 완두, 사료용 유장 등
계	1,531(17)	100	2,983,317	100	

\* ( )안 품목은 세번분리된 품목, 수입액 : 2003-2005년 3개년 평균

### (3) 주요 품목별 양허 내용

#### 가. 식량작물

품 목	양허내용
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 및 쌀 관련 16개 세번은 양허 제외</li> </ul>
대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유박용 및 간장원료 세번 분리, 식용대두의 경우 현행관세(487%) 유지 조건으로 TRQ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유박용 및 간장원료 : 즉시철폐</li> <li>- 식용대두 : 현행관세 유지, TRQ 제공(1차년도 10천톤, 2차년도 20천톤, 3차년도 25천톤(이후 매년 복리3% 증량))</li> </ul> </li> </ul>
감자 · 감자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용감자는 현행관세(304%) 유지를 조건으로 TRQ 제공, 침용감자는 별도로 세번을 분리하여 계절관세를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용 : 현행관세 유지, TRQ 제공(1차년도 3천톤(이후 매년 복리3% 증량))</li> <li>- 침용 : 계절관세(12~4월: 즉시 / 5~11월: 7년 유예 후 8년간 균등 철폐)</li> </ul> </li> <li>○ 감자분(기준세율 304%) : 10년 철폐,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10년 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기간 동안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기준 이하의 수입량은 무관세 적용 (1차년도 5천톤, 이후 매년 복리3% 증량)</li> </ul> </li> </ul>
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년 철폐, TRQ 제공 및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곁보리(기준세율 324%) + 쌀보리(기준세율 299.7%) : 14년간 TRQ 적용(1차년도 물량 2,500톤, 이후 매년 복리2% 증량), 15년간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li> <li>- 맥아(기준세율 269%) + 맥주맥(기준세율 513%) : 14년간 TRQ 적용(1차년도 물량 9,000톤, 이후 매년 복리2% 증량), 15년간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li> </ul> </li> </ul>
옥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년 철폐, 7년간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수수밥콘(기준세율 630%) : 7년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기준 이하(1~4년차는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기준, 5~7년차는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물량)의 수입량은 무관세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년도 5,122톤(2,556톤), 2차년도 6,390톤(3,994톤), 3차년도 7,668톤(5,751톤), 4차년도 8,946톤(7,828톤), 5차년도 10,224톤, 6차년도 10,735톤, 7차년도 11,246톤</li> </ul> </li> </ul> </li> </ul> <p>※ 괄호안은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기준</p>

품 목	양 허 내 용
옥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수수기타(기준세율 328%) : 7년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기준 이하(1~4년차는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기준, 5~7년차는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물량)의 수입양은 무관세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년도 187,547톤(93,774톤), 2차년도 234,434톤(146,521톤), 3차년도 281,321톤(210,990톤), 4차년도 328,207톤(287,181톤), 5차년도 375,094톤, 6차년도 393,849톤, 7차년도 412,603톤</li> </ul> </li> </ul> <p>※ 팔호안은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기준</p>
전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수수전분(기준세율 226%) : 15년 관세철품, 15년간 농업 긴급수입 제한조치 적용, 14년간 TRQ 제공(1차년도 10,000톤, 이후 매년 복리3% 증량)</li> <li>○ 덱스트린(변성전분)(기준세율 385.7%) : 12년간 관세철품, 12년간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11년간 TRQ 적용(1차년도 14,000 톤, 이후 매년 복리3% 증량)</li> <li>○ 감자전분(기준세율 455%), 매니옥전분(기준세율 455%), 고구마전분 (기준세율 241.2%), 기타전분(기준세율 800.3%) : 15년간 관세철품, 15년간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4개 품목에 대해서는 15년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기준 내 일부 물량에 대해 무관세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년도 0.5톤, 이후 매년 0.5톤씩 증량</li> </ul> </li> </ul> </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년 또는 10년 철품, 동 기간 중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물량 내 무관세 적용 물량 설정(각 1천톤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년 철품 및 동 기간 중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 팔(기준세율 420.8%), 녹두(607.5%), 메밀(256.1%), 기타곡물(800.3%) · 기타 가공곡물(800.3%), 발효주정(270%)</li> <li>– 10년 철품 및 동 기간 중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 고구마 (기준세율 385%), 기타서류(385%)</li> </ul> </li> </ul>

## 나. 육류

품 목	협 상 결 과
쇠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체와 이분도체(냉장 및 냉동), 부분육(냉장 및 냉동)(기준세율 40%) : 15년 관세 철폐, 동 기간 중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물량 : 27만톤(1년차) → 35.4만톤(15년 차, 매년 6천톤 증량)</li> <li>-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세율 : (1~5차년도) 40% → (6~10차년도) 30% → (11~15차년도) 24%</li> </ul> </li> <li>○ 육우(40%)와 식용설육(족·꼬리 등)(18%), 쇠고기 가공품(72%) 등 : 15년 관세 철폐</li> </ul>
돼지 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냉장 삼겹살과 기타(갈비, 목살 등)(기준세율 22.5%) : 10년 관세 철폐, 동 기간 중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물량 : 8,250톤(1차년도) → 13,938톤(10차년도, 매년 6% 증량)</li> <li>-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세율 : (1~5차년도) 22.5%, (6~10년차) 15.8%~11.3%로 점차 인하</li> </ul> </li> <li>○ 냉장육(도체와 이분도체, 전·후지)(기준세율 22.5%), 식용설육(기준세율 18~30%), 돼지고기 가공품(기준세율 27~30%) : 2014.1.1 관세철폐</li> <li>○ 냉동 기타 돼지고기(목살, 갈비살 등)(기준세율 25%) : 2016.1.1 관세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2월 추가협상 결과</li> </ul> </li> <li>○ 소시지(기준세율 18%) : 5년 관세철폐</li> </ul>
닭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선·냉장/중량 550g 이하 냉동 통닭(기준세율 18~20%), 냉동 (가슴살, 날개)(기준세율 20%) : 12년 철폐</li> <li>○ 냉장육(기준세율 18%), 냉동(다리, 기타 절단육)(기준세율 20%), 닭고기 가공품(기준세율 30%) : 10년 철폐</li> </ul>
계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란(기준세율 41.6%) : 15년 철폐</li> <li>○ 난황(기준세율 27%) : 12년 철폐</li> <li>○ 종란(기준세율 27%) : 10년 철폐</li> </ul>
기타 육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리고기(기준세율 18~22.5%) : 냉장육 10년 철폐, 냉동육 12년 철폐</li> <li>○ 산양·면양고기(기준세율 22.5%) : 10년 철폐</li> <li>○ 칠면조고기(기준세율 18%) : 냉장육 10년 철폐, 냉동육 7년 철폐</li> <li>○ 녹용·녹각(기준세율 20%) : 15년 철폐</li> </ul>

## 다. 낙농품, 꿀, 사료

품 목	협 상 결 과
분유 연유 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지분유 · 전지분유(기준세율 176%) · 연유(기준세율 89%) : 현행관세 - 기준관세율 유지 하 TRQ 제공(1차년도 5천톤, 이후 매년 복리3% 증량)</li> <li>○ 혼합분유(기준세율 36%) : 10년 관세 철폐</li> <li>○ 조제분유(기준세율 36, 40%) : 10년 관세 철폐, TRQ 적용(1차년도 700톤, 이후 매년 3%씩 증량)</li> <li>○ 유당(49.5%) : 5년 관세 철폐</li> </ul>
치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다치즈(기준세율 36%) : 10년 관세 철폐 + TRQ 적용</li> <li>○ 체다 이외의 치즈(기준세율 36%) : 15년 관세 철폐 +TRQ 적용</li> <li>○ 치즈 품목에 대한 TRQ 물량 : 1차년도 7천톤, 이후 매년 3%씩 증량</li> </ul>
밀크와 크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15년 관세 철폐(기준세율 36%) - 지방함량 6% 이하 : 15년 철폐 - 기타 지방함량 6% 초과 : 12년 철폐 - 냉동크림 지방함량 6% 초과 : 10년 철폐</li> </ul>
버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관세 철폐(기준세율 89%)</li> <li>○ 버터 품목에 대한 TRQ 물량 : 1차년도 200톤, 이후 매년 3% 증량</li> </ul>
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용과 사료용을 세번 분리(기준세율 49.5%) - 식용 : 협정 발효일에 종가세 20%로부터 시작해 10년간 철폐 * TRQ 적용 : 1차년도 물량 3천톤, 이후 매년 3%씩 증량 - 사료용 : 즉시 철폐</li> </ul>
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연꿀(기준세율 243%) : 기준세율 유지, TRQ 적용(1차년도 물량 200톤, 이후 매년 3% 증량)</li> <li>○ 인조꿀(기준세율 243%), 로열 젤리(기준세율 8%), 벌꿀조제품(기준세율 8%) : 10년 철폐</li> </ul>
사료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료용 식물(기준세율 100.5%) : 15년 철폐, 14년간 TRQ 제공(1차년도 물량 20만톤, 이후 증량 없음)</li> <li>○ 보조사료(기준세율 50.6%) : 12년 철폐, 11년간 TRQ 제공(1차년도 5,500톤, 이후 매년 3% 증량)</li> <li>○ 사료용 옥수수, 대두(채유 및 박용) : 즉시 철폐</li> </ul>

## 라. 과일 · 과채류

품 목	협 상 결 과
오렌지 (기준세율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절관세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귤 성출하기(9~2월) : 기준세율(50%)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기간 TRQ 물량 수입 허용(1차년도 물량 2,500톤, 이후 매년 3% 증량)</li> </ul> </li> <li>- 감귤 비출하기(3~8월) : 관세 30%에서 시작하여 7년간 철폐</li> </ul> </li> </ul>
감귤류 (기준세율 144%) 키위 (기준세율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년 철폐</li> </ul>
사과 (기준세율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지 계통 품종 : 20년 철폐,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23년 적용</li> <li>○ 기타 품종 : 10년 철폐,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10년 적용</li> </ul>
배 (기준세율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양배 품종 : 20년 철폐</li> <li>○ 기타 품종 : 10년 철폐</li> </ul>
포도 (기준세율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출하기(5월~10.15) : 17년 철폐</li> <li>○ 비출하기(10.16~4월) : 협정 발효일에 24%로 인하 후, 4년 철폐</li> </ul>
복숭아 · 단감 (기준세율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철폐</li> </ul>
딸기 (기준세율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선초본류 딸기(기준세율 45%) : 9년 철폐, 나무딸기(신선, 기준세율 45%) : 12년 철폐</li> <li>○ 냉동딸기(초본류 및 나무딸기, 기준세율 30%) : 5년 철폐 – 30%</li> <li>○ 초본류딸기(일시저장처리, 기준세율 30%), 딸기쥬스(기준세율 50%) : 10년 철폐</li> <li>○ 초보류딸기(조제저장처리, 기준세율 45%) : 15년 철폐</li> <li>○ 신선 및 냉장(기준세율 45%) : 7년 철폐</li> </ul>
토마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제저장처리(기준세율 30%), 토마토 주스(기준세율 30%), 케첩(기준세율 8%), 소스(기준세율 45%) : 5년 철폐</li> <li>○ 토마토 페이스트(기준세율 5%) : 즉시 철폐</li> </ul>
오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선 및 냉장(기준세율 27%) : 즉시철폐</li> <li>○ 조제저장처리(기준세율 30%) : 5년 철폐</li> </ul>
가지 (기준세율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즉시 철폐</li> </ul>
호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선 및 냉장(기준세율 27%) : 즉시 철폐</li> <li>○ 건조호박(기준세율 30%) : 10년 철폐</li> </ul>
수박 (기준세율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년 철폐</li> </ul>
멜론 (참외 포함) (기준세율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년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껍질(기준세율 30%)은 즉시 철폐</li> </ul> </li> </ul>

## 마. 양념채소, 인삼, 특작

품 목	협 상 결 과
고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선고추, 건조고추, 고춧가루 등 핵심 품목(기준세율 270%) : 15년 철폐,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18년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선고추, 건조고추, 고춧가루 등</li> </ul> </li> <li>○ 냉동고추(기준세율 27%) : 15년 철폐</li> </ul>
마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마늘, 깐마늘, 일시저장·건조 마늘 등 핵심품목(기준세율 360%) : 15년 철폐,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18년간 적용</li> <li>○ 냉동마늘(기준세율 27%) : 15년 철폐</li> <li>○ 초산조제·조제저장처리 마늘 : 10년 철폐</li> </ul>
양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선 및 건조 양파(기준세율 135%) : 15년 철폐, 농업 긴급수입 제한 조치 18년간 적용</li> <li>○ 냉동양파(기준세율 27%) : 12년 철폐</li> <li>○ 초산조제·저장처리 양파(기준세율 30%) : 10년 철폐</li> </ul>
생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선 생강(기준세율 377.3%) : 15년 철폐,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18년간 적용</li> <li>○ 설탕저장처리 생강(기준세율 30%) : 5년 철폐</li> </ul>
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조 파(기준세율 30%) : 7년 철폐</li> <li>○ 조제저장처리 쪽파(기준세율 30%) : 5년 철폐</li> <li>○ 쪽파·기타파속채소(기준세율 27%) : 즉시 철폐</li> </ul>
인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삼 및 백삼 등 뿌리삼류(본삼, 미삼, 잡삼)(기준세율 222.8%) : 18년 철폐(동 기간 TRQ 제공:이행 1년차 5.7톤), 농업 긴급수입 제한조치 20년간 적용</li> <li>○ 흉삼(기준세율 754.3%) : 18년 철폐, 20년간 농업 긴급 수입제한 조치 적용</li> <li>○ 흉삼가공품(흉삼분, 타블렛, 엑스 등, 기준세율 754.3%) : 15년 철폐 및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18년간 적용</li> <li>○ 백삼분(기준세율 18%) : 15년 철폐</li> <li>○ 그 외 인삼품목 : 10년 철폐</li> <li>○ 인삼제제 의약품(30류) : 즉시철폐</li> </ul>
참깨, 참기름 땅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년 철폐, 세이프가드 18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깨·참기름(기준세율 630%)</li> <li>* 땅콩(230.5%)</li> </ul> </li> </ul>

## 바. 염근채류

품 목	협 상 결 과
당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선 · 냉장 : 기준세율 30% 5년 철폐</li> <li>○ 건조 · 일시저장처리 : 기준세율 30% 10년 철폐</li> </ul>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선 · 냉장 : 기준세율 30% 10년 철폐</li> <li>○ 건조 : 기준세율 30%, 7년 철폐</li> </ul>
배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선 · 냉장 : 기준세율 27% 5년 철폐</li> </ul>
채소류 혼합물, 순무, 양배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세율 27%, 즉시 철폐 * 건조 양배추(기준세율 30%)는 10년 철폐</li> </ul>
기타 (기준세율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뿌리 · 기타식물(설탕저장처리) : 기준세율 30%, 5년 철폐</li> <li>○ 고구마줄기 : 기준세율 30%, 7년 철폐</li> <li>○ 토란줄기 : 기준세율 30%, 10년 철폐</li> </ul>
채소 혼합쥬스 (기준세율 30%) 유아용퓨레콘 (기준세율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 철폐</li> </ul>

## 사. 가공식품

품 목	협 상 결 과
설탕 (기준세율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년차까지 30%로 균등 감축하고, 16년차에 관세 철폐 -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20년간 적용</li> </ul>
대두유, 옥수수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두유(기준세율 5.4%) : 조유는 10년, 정제유는 5년 철폐</li> <li>○ 옥수수유(기준세율 8%) : 조유는 5년, 기타는 6년 철폐</li> </ul>
혼합조미료 (기준세율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분 중 고추 · 마늘 · 양파의 비중이 각각 20% 이상 또는 이를 합쳐서 40% 이상일 때 : 15년 철폐</li> <li>○ 그 외 : 5년 철폐</li> </ul>
장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된장, 춘장(기준세율 8%) : 10년 철폐</li> <li>○ 간장(기준세율 8%), 고추장(기준세율 45%), 기타 장류(쌈장, 청국장) : 5년 철폐</li> </ul>
과자류, 빵류, 기타식품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코렛류(기준세율 8%), 파이&amp;케이크(기준세율 8%) 등 : 5년 철폐</li> <li>○ 식빵, 건빵 등 빵류(기준세율 8%) : 10년 철폐</li> <li>○ 커피(기준세율 3%), 라면(기준세율 8%), 소주(기준세율 30%), 포도주(기준세율 15%) 등 : 즉시철폐</li> </ul>

## 참고 우리측 주요 품목 TRQ 관리방식

품 목 명	TRQ 초기물량	TRQ 관리방식
넙치류 명 태 민 어	초기 1,530 미터톤 초기 4,000 미터톤 초기 1,000 미터톤	선착순 방식
탈진분유, 연유 천연꿀	초기 5,000 미터톤 초기 200 미터톤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입권 공매 - 분기별(12, 3, 6, 9월)
버 터	초기 200 미터톤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입권 공매 - 매년 1월 공매
신선 또는 냉장감자 (침용, 증자용 제외) 수삼, 백삼	초기 3,000 미터톤 초기 5.7 미터톤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입권 공매
오 렌 지	초기 2,500 미터톤	(이행 1~10년)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입권 공매 - 매년 8월 공매 (이행 11년~)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입권 배분 - 최근 3년 수입 실적 기준 매년 8월 배분 ※ TRQ 신청 자격: 대외무역법상 수입업자로 등록된 인 또는 실체
보리(맥주액, 시리얼용 제외)	초기 2,500 미터톤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입권 배분 - 매년 1월 첫째 영업일부터 서면신청에 따른 선착순에 기초하여 배분
맥아및맥주액	초기 9,000 미터톤	- 1월중 총 신청물량 > 쿼터 물량 : 신청량에 따라 비례배분 - 1월중 총 신청물량 < 쿼터 물량 : 연도 말까지 선착순 기초 지속 배분
옥수수전분	초기 10,000 미터톤	- 공사 발급 허가는 발급일로부터 90일간 유효 - 미사용 허가는 90일 만료후 공사에 반납되며, 공사는 반납 후 45일 이내에 선착순에 기초하여 미사용 허가를 재배분
덱스트린	초기 14,000 미터톤	
식용대두(IP)	초기 10,000 미터톤	대두기공자연합체가 관세율할당 배분/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그 배분 물량에 대해 수입허가 자동 발급 - 수입권 서면 신청시 최소 7개월 이후 배달을 위하여 미국의 IP 대두를 구매하겠다는 의향서 수반 - 대두기공자연합체는 수입 이전 연도의 4월 1일보다 늦지 않은 때에 TRQ 배분 시작 - 발급된 허가는 당해 쿼터 연도 전체에 걸쳐 유효 - 수입자 요청시 IP 대두 규격 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독립된 제3자 검증기관으로부터의 문서 수반 * IP대두 규격 요건 : 95%이상의 단일종 대두를 포함, 이물질은 1% 이하, 포대나 컨테이너로만 선적별로 선적 불가
식용유장 치 즈 조제분유	초기 3,000 미터톤 초기 7,000 미터톤 초기 700 미터톤	한국유가공협회 수입권 배분 - 과거 및 신규 수입자에게 허가제도를 통해 배분
사료용식물 (기타)	초기 20만 미터톤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사료협회 및 농협중앙회 수입권 배분 - 과거(24개월) 실적 및 당해 연도 수입 물량 기준 - 배분대상 : 등록한 배합사료제조업자, 등록한 단미사료 제조업자 및 양축농가
보조사료	초기 5,500 미터톤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수입권 배분 - 과거(24개월) 실적 및 당해 연도 수입 물량 기준

## 미측 농산품 양허협상 결과

- 대미 수출 농산물중 품목수 기준 58.7%, 대미수출액 기준 82.0%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합의함.
- 미측의 민감품목인 낙농품, 설탕, 쇠고기 등에 대해 10년 이상 관세철폐 또는 TRQ를 설정(양허제외품목 없음)
- 미국 관세율표(HTSUS) Chapter 99의 subchapter 20에 한·미 FTA 하 미국의 TRQ 적용 대상 품목 반영

(단위 : %, 백만불)

Staging	품목수	비 중	대미수출액 (03-05 평균)	비 중	품 목
즉시	1,065	58.7	184.33	82.0	라면, 배, 조제식료품, 음료, 주류, 간장, 삼계탕, 포도쥬스(신선), 오렌지쥬스(냉동)
2년	10	0.6	0.20	0.1	자두(조제저장), 단백질계 물질
5년	401	22.1	4.56	2.0	아이스크림, 버섯
6년	1	0.1	—	0.0	호두(탈각)
7년	91	5.0	30.92	13.8	담배, 대두유(조유), 채소(조제저장)
10년	154	8.5	4.33	1.9	설탕, 차
15년	65	3.6	0.03	0.0	멥쌀, 쇠고기, 치즈
10년철폐, TRQ	26	1.4	0.27	0.1	낙농품(300톤)
총 계	1,813	100	224.64	100	

## ▣ 대미 수출 주요 품목 양허협상 결과

(단위: %, 블)

품 목 명	기준 관세율	미측 양허(年)	대미수출액(03~05) (단위 : 달러)
라면	6.4	0	30,930,741
제조담배	12.4	7	30,702,033
음료베이스	6.4	0	17,278,185
배	0.2	0	16,046,876
인삼음료	0.2	0	11,510,161
포도 가공품	6.0	0	8,932,609
빵	0.0	0	8,201,423
국수	6.4	0	7,890,461
기타 해조류	0.0	0	6,841,015
브랜디	0.0	0	5,286,372
육류스프	3.2	0	4,572,069
물	0.1	0	4,448,275
사과주	0.5	0	4,181,775
국수	0.0	0	3,954,953
빵	4.5	0	3,944,570
음료베이스	13.6	10	3,419,421
된장	6.4	0	2,872,300
수삼	0.0	0	2,606,026
감초액스	5.6	0	2,508,484
김치	11.2	0	2,206,502
음료베이스	4.8	0	2,190,687
아이스크림	17.0	5	2,154,025
난초	0.0	0	2,128,267
멕아액스	6.4	0	1,988,070
식물성 액즙	3.2	0	1,739,280
밤	0.0	0	1,614,623
된장	6.4	0	1,601,332
백삼정	1.0	0	1,430,476
맥주	0.0	0	1,372,075
곡류조제품	14.0	5	1,351,614
젤라틴	4.4	0	1,338,131
채소종자	0.0	0	1,066,926
밀	1.3	0	1,055,188
간장	3.0	0	1,017,675
식물성 한약재	0.0	0	1,014,182

# 4

## 섬유 및 의류

### 섬유 양허

- 미국의 양허수준은 즉시철폐 비율이 수입액 기준 61%, 품목수 기준 87%이며, 스웨터(미국 관세율 32%), 양말(관세율 13.5%), 화섬 남성바지(관세율 28.2%) 등 우리 주력수출품목 상당수가 즉시 철폐
- 특히 스웨터(관세율 32%), 폴리에스텔 섬유(관세율 4.3%), 양말(관세율 13.5%) 및 남성셔츠(관세율 28%) 등 164개는 즉시 철폐

#### 〈 양국 섬유 양허 결과 〉

(단위: 백만불, %)

우리측					미 측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즉시	1,265	97.6	170	72	즉시	1,387	86.8	1,654	61.1
3년	7	0.5	32	13.4	3년	—	—	—	—
5년	24	1.9	35	14.6	5년	149	9.3	504	18.6
10년	—	—	—	—	10년	62	3.9	548	20.2
합계	1,296	100.0	236	100.0	합계	1,598	100.0	2,707	100.0

※ 수입액 : 2003-2005년 3개년 평균

## 〈 양국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

	우리측	미 측
즉시	데님, 폴리아미드 장섬유사	스웨터, 양말, 화섬 단섬유
3년	셀룰로오스 장섬유, 유리섬유	—
5년	폴리아미드 강력사	폴리에스터 장섬유직물, 남자면셔츠
10년	—	화섬편직물일부, 타이어코드 직물

## ◆ 주요 섬유 품목 양허 결과 (대미 수출 1,000만불 이상 품목)

(단위: %, 불)

HS 8단위	품목명	관세율	미측양허	대미 수출액(03~05)
52085230	염색	6	5년	53,566,395
54022030	폴리에스터사	9	10년	53,282,919
54076199	폴리에스터직물	15	5년	61,161,770
<b>55032000</b>	<b>폴리에스터섬유</b>	<b>4</b>	<b>즉시</b>	<b>139,544,057</b>
59022000	타이어코드	6	10년	45,100,008
60041000	편직물	12	10년	80,482,277
60063200	편직물	10	10년	60,834,761
61013020	코트 및 자켓	28	즉시	10,572,118
61023020	코트 및 자켓	28	즉시	12,075,747
61034315	바지 스커트	28	즉시	13,414,181
61051000	남성 아우터 셔츠	20	10년	27,211,034
61052020	남성 아우터 셔츠	32	5년	34,191,044
61062020	브라우스	32	5년	17,011,525
61099010	언더셔츠	32	10년	12,000,272
<b>61103030</b>	<b>스웨터</b>	<b>32</b>	<b>즉시</b>	<b>276,922,021</b>
61112060	유아복	8	즉시	22,405,773
<b>61159290</b>	<b>양말</b>	<b>14</b>	<b>즉시</b>	<b>134,468,076</b>

HS 8단위	품목명	관세율	미측양허	대미 수출액(03~05)
61161055	장갑	13	즉시	12,246,791
62031190	신사복	18	즉시	17,150,319
62046335	여성바지스커트	29	5년	20,749,793
62053020	남성셔츠	28	즉시	134,242,817
62064030	브라우스	27	즉시	12,180,744
62143000	손수건 스카프	5	즉시	18,281,145
62151000	넥타이	7	즉시	17,276,554
63014000	모포와 여행용러그	9	즉시	36,412,338
63062290	텐트 및 캠핑용품	9	즉시	13,230,308
65059060	모자	8	즉시	11,313,562

## 양자 긴급 조치 (제4.1조)

■ 양국은 섬유 및 의류 분야에 적용되는 양자 긴급 조치 제도를 도입

### ■ 발동 요건

- ① 한·미 FTA로 인한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 ② 타방 당사국으로부터의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를 받는 섬유·의류 제품 수입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급증이
- ③ 동종 또는 직접 경쟁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그러한 실제적 우려를 야기하는 경우

### ■ 조치 내용

- 피해의 방지·구제 및 구조조정의 원활화를 위해 필요한 한도 및 기간 내에서,

- ① 관세 감축의 정지 또는

② MFN 실행관세율까지 관세율 인상

- 조치 발동 시점의 MFN 실행관세율과 협정 발효일 직전의 MFN 실행관세율 중 낮은 것을 넘지 않는 수준까지 관세율 인상

■ 조치 기간

- 원칙적으로 2년 이하, 필요시 2년 연장 가능 (총 4년 이하)

■ 제도존속 기간

- 관세철폐 후 10년까지

■ 기타 사항

- 동일한 상품에 대해 재발동 금지

■ 섬유 긴급 조치 시행시 상대국에게 보상 제공

■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거나 그 긴급 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 형태로 보상 제공

- 양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한정

■ 양국이 긴급 조치 적용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긴급 조치의 무역효과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진 관세 조치 가능

- 대상 상품 제한 없음

■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협정에 따른 섬유 긴급 조치와 한미 FTA 제10장(무역구제) 상의 긴급수입제한조치 또는 WTO 협정에 따른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을 금지

## 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속서 4-가)

### (1) 일반 사항

- 섬유 · 의류 상품은 다음 두 가지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① 역내 원산지 재료만으로 당사국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하는 경우
  - ② 비원산지 재료 사용시 제4장(섬유 및 의류) 부속서 4-가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제4장(섬유 및 의류)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규정이 적용

### (2) 원사기준의 채택

- 섬유 및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으로서 원칙적으로 원사기준(yarn-forward rule) 채택
  - 원사기준에 따르면, 협정 당사국이 원산지인 ‘실’을 사용하여 직물을 제작 또는 편직하고 섬유 완제품을 재단 · 봉제해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참고: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예

##### 6101.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  
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 세번변경기준

☞ 원사기준  
(언급된 세번의  
재료는 원산지  
제품이어야 함.)

☞ 주요공정기준

### (3) 원사기준의 예외

- 원사기준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 직물 및 의류 제품
  - 견직물(5007), 리넨직물(5311), 합섬 여성재킷(6104.33, 6104.39) 및 합섬 남성셔츠(6205.30) 등의 품목에는 원사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해당 제품 생산시 비역내산 ‘실’을 사용하여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가능
- 섬유 비역내산 원사 사용이 가능한 경우
  - 견사(5006), 비스코스 레이온사(5403.10, 5403.31, 5403.32, 5403.41) 등 원사의 경우, 섬유 완제품 생산에 투입시 비역내산을 사용해도 원산지 인정

### 원산지 판정 일반 기준 (제4.2조제7항 및 제8항)

#### (1) 최소허용수준

- 섬유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이 상품의 총중량의 7퍼센트 이하일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 단, 탄성사는 한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히 형성되고 마무리된 것을 사용해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2) 세트의 취급

- 섬유 세트를 구성하는 비원산지 상품의 총가치가 세트의 관세가격의 10퍼센트 이하일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 공급부족재료의 역외조달 허용 (부속서 4-나)

-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 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원사·원단(공급부족재료)에 대해서는 원사기준에도 불구하고 역외산의 경우에도 원산지를 인정

### ■ 공급부족재료 목록 등재 및 효과

- 이해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시, 수입국이 상업적인 물량으로 시의적절하게 공급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거나, 이 요청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수입국은 그 섬유원료·원사·원단을 자국의 공급부족재료 목록에 등재
  - ※ 이해관계자 : 당사국 정부, 섬유 또는 의류 구매·공급자 또는 그 잠재적 구매·공급자, 법률적 대리인
- 섬유·의류 제품 생산시 공급부족재료 목록에 등재된 섬유원료·원사·원단은 역외산을 사용하여도 최종제품을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부속서 4-가의 제11부의 규칙2와 규칙3)

### ■ 역외조달 가능 물량

- 조달 가능 물량
  - 방직용 섬유제품(제51·52·54·55·58·60류) : 매년 1억 SME
  - 의류제품(제61·62류) : 매년 1억 SME
- 수출국의 생산자 등이 우회수출 등 불법행위 적발시, 수입국은 상기 1억 SME의 물량에서 불법행위 연루 물량의 3배까지 공제가능
  - ※ SME (제곱미터 상당, Square Meter Equivalent) : 섬유·의류 제품의 계산단위를 제곱미터로 환산한 것

▣ 존속기간

- 존속기간은 발효 후 5년이며 이후 협의에 따라 연장이 가능

▣ 미측 제도 현황

- 미국 섬유협정이행위원회(CITA: Committee for the Implementation of Textile Agreements)가 협정 부록4-나-1의 미국측 목록 등재를 위한 절차 마련

참고: 미국 공급부족재료 목록 등재 절차

1. 등재요청

- 요청자: 이해관계자
- 요청방법: 요청서 및 사실관계 확인증명을 이메일과 특송 2가지 방식으로 함께 송부(OTEXA.KOREA@trade.gov 및 Chairman, Committee of the Implementation of Textile Agreements, Room 3100, U.S. Department of Commerce, 14th Street and Constitution Avenue, NW. Washington DC 20230)
- 요청서 기재사항: ① 해당제품에 대한 상세정보, ② 요청자의 필요 수량, ③ 해당재료 획득을 위한 합리적 노력에 대한 기술(접촉 공급자 및 주소, 접촉 인사, 구체 요청내용, 접촉일시, 미국 공급자 확인 등), ④ 대체제품, ⑤ 기타 정보

2. 요청 접수 결정

- 요청서 기재사항 등 검토 후, 요청의 반려/접수 여부를 요청수령(이메일, 특송 서류 모두 수령시) 후 2 영업일 내 결정하여, 이해관계자에 이메일로 통보(접수시 웹사이트에도 공지)

### 3. 이의제기(공급제안 제출) 및 반론 제출

- 등재요청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자는 해당재료에 대한 자신의 공급제안을 제출 가능(등재요청 번호, 수량, 생산능력/공급능력 증명 기재, 공급능력 증명, 미국 공급자 위치)
- 동 공급제안에 대해 여타 이해관계자도 반론 제출 가능

### 4. 목록 등재 결정

- 요청 수령 후 30영업일 내 요청대상 제품의 공급부족 여부를 결정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이메일 통보, 웹사이트 게재
   
※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30 영업일간 심의 연장
- 한·미 FTA 협정 부록 4-나-1상 목록에 추가·삭제 시 Federal Register에 게재
- 등재 후 목록 삭제 요청
- 목록 등재 6개월 경과 후 이해관계자가 CITA에 목록 삭제 요청 가능

## 연례 기업정보 제공 (제4.3조)

### ▣ 연례 정보 제공

- 대미수출 섬유·의류 상품 및 원료 생산기업의 원산지 확인 관련 정보를 미측에 매년 제공
- 정보 제공 주체는 지식경제부이며, 업계단체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 가능(다만, 정보의 정확성 검증을 위해 조치 필요)

## ■ 제공 대상 정보

- ① 성명(명칭)주소(소유운영 설비 소재지 포함) ② 전화번호 및 e-mail주소 ③ 소유경영진의 성명, 국적, 직위 ④ 근로자수 및 업무 ⑤ 생산제품에 대한 설명 및 생산능력 ⑥ 보유설비 현황 ⑦ 주당 설비가동시간 ⑧ 원료공급처 ⑨ 미국내 고객 정보
- 미국내 수입처와 직거래하지 않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정보(설비가동 시간, 원료공급처, 미국내 수입처)를 제공 대상에서 배제하고, 최종제 생산기업에 의한 일괄제출도 가능토록 규정

## ■ 비밀 유지

- 비밀로 지정된 제공 정보에 대해서 협정 제7.6조상 비밀유지 의무  
※ 협정 제7.6조 상 비밀유지 의무 : 정보제공자의 명시적 허락 없이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것임을 서면으로 보장하고, 이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 거부 가능

## ■ 원산지 검증 (제4.3조)

### ■ 간접 검증 원칙

- 섬유·의류 제품의 원산지 검증 방식으로 수입국 정부의 요청에 의한 수출국 정부의 원산지 검증(이른바 간접검증)을 규정  
※ 직접검증의 경우 수출국에서 수입국이 직접 검증 수행
- 수출국 정부는 수입국 정부 요청시 다음에 대한 원산지 검증 수행
  - 섬유·의류 상품의 원산지 신청이 정확한지에 대한 검증  
(특혜관세 신청 여부와 무관)

-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섬유·의류 무역에 관한 불법행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증

■ 현장 방문

- 수입국 정부는 수출국 정부에 의한 원산지 간접 검증을 지원 할 수 있으며, 검증 지원의 한 형태로 ‘공동 현장 방문’ 가능
- 공동 현장 방문은 사전 통보 없이 수행되나, 실사 대상자의 현장 동의를 요하며 동의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실사 진행 불가
- 다만, 실사 대상자의 실사 거부로 검증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수입국 정부는 국내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 가능(특혜관세 거부 등)

■ 당사국은 환적된 섬유·의류 제품에 대한 조사요청이 있을 시 조사를 위하여 노력

-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라는 신청과 무관한 단순 환적물품인 경우, 수출국은 수입국에 대하여 정보공유 이상의 협력의무 없음.

**섬유 및 의류 무역 사안에 관한 위원회 [제4.4조]**

- 섬유 및 의류 무역 사안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어느 한 쪽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4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회합

## 의약품 및 의료기기

### 일반 규정 (제5.1조)

- ▣ 양국 보건의료 제도의 차이 존중, 혁신의 중요성,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중요성 등 강조
- ▣ 구체적으로 다음 원칙에 대한 약속 확인
  - 양질의 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충분한 접근의 중요성
  - 고비용 의료지출 절감에 있어 특히 및 복제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중요성
  - 의약품 ·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정부의 적절한 지원, 지적재산권 보호, 혁신에 대한 그 밖의 유인의 중요성
  - 투명하고 책임있는 절차를 통한 의약품 · 의료기기의 혁신과 이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비용부담 가능한 접근 촉진 필요성
  - 의약품 · 의료기기 제조자 또는 공급자, 보건의료 제공자에 의한 전 세계적인 차원의 윤리적 관행의 중요성
  - 의약품 · 의료기기의 안전성 · 유효성 증진을 위한 양 당사국 규제당국을 포함한 양국간 협력의 중요성

## 혁신에의 접근 (제5.2조)

- 동 조의 적용 범위: 동 조항은 양국 중앙정부의 보건의료당국이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프로그램에 따라 의약품·의료기기 또는 급여를 위한 적응증의 등재나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위한 급여액 설정을 위한 절차를 운영·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적용됨.
- 의약품·의료기기의 등재 및 급여액 설정에 적용되는 각종 절차·기준이 공평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일 것을 보장
- 급여액 결정의 기초
  -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급여액을 당사국이 결정하는 경우, 경쟁적 시장도출 가격에 기초하도록 보장
  - 당사국의 결정이 경쟁적 시장도출 가격에 따라, 기초하지 않는 경우, 아래 요건 충족 필요
    - 급여액 측면에서 특허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 (appropriately recognize)
    - ※ 동 조항은 우리 국내 제도 하에서 특허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인정한다는 의미
      - 우리나라의 의약품경제성평가 등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제약회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 직접 협상을 통해 신약의 가격을 결정
    - 비교제품이 있는 경우, 안전성·유효성 증거를 기초로 비교제품보다 높은 급여액 신청 허용
    - 최초 가격 설정 이후 추가적인 안전성·유효성 증거를 기초로 더 높은 급여액 신청 허용
- 안전성·유효성 증거에 기초하여 추가 적응증에 대한 급여 신청 허용

## 투명성 (제5.3조)

- 의약품·의료기기의 가격산정·급여 및 규제와 관련된 법·규정 및 절차의 신속한 공개
- 가능한 한도에서, 상기 관련 도입 예정 조치를 사전에 공표하고, 이해관계자 및 타방 당사국에게 의견 제시를 위한 합리적 기회 제공
  - 의약품·의료기기의 가격산정·급여 및 규제와 관련하여 새로 도입하는 규정 및 그 목적을 관보에 게재
  - 상기 제안된 규정에 대하여 대부분의 경우 공표된 날로부터 6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 부여
    - ※ 우리나라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을 통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가격산정·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법규의 제·개정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상의 예고기간 부여
    - ※ 미국은 행정명령 12866을 통해 최소 60일의 입법예고기간 부여
  - 최종 규정 채택 시점에 의견제출 기간 동안 제시된 중요한 의견에 대한 처리 및 모든 실질적인 수정에 대해 설명
  - 가능한 범위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가격산정·급여 또는 규제 관련 사안에 대한 최종 규정의 공표일과 발효일간 합리적 시간 허용
- 중앙정부가 의약품·의료기기 또는 급여를 위한 적용증의 등재나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위한 급여액 설정을 위한 절차를 운영·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다음 사항 보장
  - 급여를 위한 의약품·의료기기 가격산정 또는 허가에 대한 모든 공식 요청을 합리적이고 정해진 시간 이내에 처리

- 의약품 · 의료기기 가격산정 및 급여에 관련된 모든 규정 · 기준 등을 합리적이고 지정된 시간 내에 신청자에게 공개
  - 의약품 · 의료기기 가격산정 및 급여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의견 제시 기회 부여
  - 의약품 · 의료기기 가격산정 및 급여에 대한 권고 · 결정의 근거에 대한 서면 정보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제공 (권고 · 결정에서 인용된 전문가 의견이나 학술 연구에 대한 인용 포함)
  - 권고 · 결정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발동될 수 있는 독립적인 검토 절차 마련
    - ※ 독립적 검토절차 관련 상기 조항(제5.3조제5항 마호)은 제5장 부속서한으로 보다 상세히 양해됨. (하기 독립적 검토 절차 부분 참조)
  - 혁신 및 복제의약품 회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급여 관련 모든 의사결정기구가 개방되도록 허용
  - 의약품 · 의료기기 가격산정 및 급여와 관련된 모든 위원회 구성원 명부의 공개
- ▣ 의약품 · 의료기기의 가격산정 · 급여 및 규제와 관련된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운영되도록 보장

### 독립적 검토 절차 (제5.3조제5항 마호 및 제5장 부속서한)

- ▣ 양 당사국은 중앙정부가 의약품 · 의료기기 또는 급여를 위한 적응증의 등재나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위한 급여액 설정을 위한 절차를 운영 ·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독립적인 검토 절차를 마련 (제5.3조제5항 마호)
- ▣ 제5.3조제5항 마호를 이행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다음을 보장

- 보건의료 당국의 권고·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과 급여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을 검토하는 기구(독립적 검토 기구)를 설치·유지
- 독립적 검토 기구는 의약품·의료기기의 등재 및 급여액 설정을 위한 절차를 운영·유지하는 보건 당국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
- 신청자에게 독립적 검토절차를 신청할 권리와 이를 위한 절차 통보
- 독립적 검토가 합리적이고 정해진 시간 내에 완료되도록 보장

▣ 독립적 검토 기구의 구성원 관련, 다음 사항 보장

-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
- 의약품·의료기기 또는 급여를 위한 적응증의 등재나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급여액 설정을 위한 절차를 유지·운영하는 보건 당국의 피고용원이나 구성원이 아닐 것
- 검토 결과에 금전적·직업적·개인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제외
- 일정 임기로 임명되며, 의약품·의료기기의 등재 및 급여액 설정을 위한 절차를 유지·운영하는 보건 당국으로부터 면직(해임)되지 않을 것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전파 (제5.4조)**

- ▣ 제약회사가 자사 공식 인터넷 사이트 및 이에 링크된 의학 학술지 사이트를 통하여 자사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단, 정보를 제공하는 제품은 당사국 영역에서 시판허가를 보유하여야 하고, 위험과 혜택을 균형되게 포함하여야 하며, 당사국이 그 제품에 대하여 시판허가를 부여한 적응증에 한정

### 윤리적 영업 관행 (제5.5조)

- 의약품 · 의료기기 제조자 또는 공급자가 보건의료 전문가 · 기관에 부적절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벌칙 및 절차 채택 · 유지
- ※ 의약품 제조회사 등이 보험의약품과 관련된 비윤리적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 등이 개선되도록 하는 등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투명성 제고

### 규제 협력 (제5.6조)

-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이 자국내 기관에 의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의 상호 인정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검토를 촉진
- 상기 요청은 의약품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및 복제의약품 시판허가 관련 상호 인정협정의 협상 요청 등을 포함
  -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 품질이 보증된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제조하기 위해 제조소의 구조설비, 전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기준
  - ※ GLP(Good Laboratory Practice) : 신약 개발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인력, 실험장비 및 방법 등 시험 전 과정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준
- 양 당사국은 동 요청 수락의 실현 가능성과 적절성에 대해 의약품 · 의료기기 위원회와 TBT위원회에 보고

##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 (제5.7조)

-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합의사항의 ① 이행 점검 및 지원, ② 관련 사항 논의 및 상호 이해 촉진 및 ③ 협력 노력을 위한 기회 모색을 위해 보건 및 통상 공무원이 공동의장이 되는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설치
- 규제협력(GMP 상호인정 등)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적 문제 협의를 위해 양국간 합의에 따라 위원회 산하에 작업반 설치 가능

## 정의 (제5.8조)

- 중앙정부 보건당국,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프로그램 등을 정의
- ※ 미국의 경우 주정부가 운영하는 메디케이드(극빈자 대상)에는 적용되지 않음.

# 6

##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원산지 챕터의 구조

- 완전생산기준, 직접운송원칙 등 FTA 특혜원산지 판정의 일반기준은 협정문에서, 개별 품목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은 부속서에 규정
- 부속서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은 약 5,000여개(HS 6단위 기준)에 이르는 개별 품목의 생산과정, 교역패턴, 글로벌 아웃소싱 환경을 고려한 원산지 기준 규정

### 특혜 원산지 결정 기준 [제6.1조 및 제6.22조]

- 완전 생산기준 (wholly obtained or produced) (제6.1조 가호 및 다호)
  - 전적으로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히 획득되거나 생산된 제품의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아래 물품에 대해서는 완전생산기준을 적용 (제6.22조)
    - 양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
    - 양국의 영역에서 나고 자란 동물
    - 양국의 영역에서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 양국의 영역에서 어로행위, 양식 등을 통하여 획득한 상품
- 양국의 영역에서 채취한 광물 및 천연 자원
-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양국의 영역 밖의 바다, 해저 및 해저토양에서 잡히거나 채취된 어류, 패류와 그 밖의 해양생물
- 우주공간에서 채취되어 양국의 영역에서 가공된 상품
- 양국의 영역에서 중고 제품으로부터 파생되고 양국의 영역에서 재제조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생제품(recovered goods)

□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 (제6.1조 나호)

- 품목별 특성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이 적용
  - 세번변경기준: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한 결과, 부속서 4-가 또는 부속서 6-가의 세번 변경을 거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부가가치기준: 생산 과정에서 부속서 4-가 또는 부속서 6-가의 역내가치 포함 비율 충족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완전공정기준 (produced entirely) (제6.1조 다호)

-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당사국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부가가치기준 및 세번변경기준 판정방법 (제62조, 제63조, 제66조)**

□ 역내 부가가치 계산방법 (제6.2조)

-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부가가치기준을 계산할 때 생산자인 기업이 공제법과 집적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단,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는 집적법/공제법과 순원가법을

기업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상세 후술)

■ 세번변경기준 관련 최소허용수준(de minimis) (제6.6조)

- 비원산지 재료(non-originating material)가 해당 품목의 세번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치가 제품의 조정가치의 10% 미만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미소기준은 원산지기준 판정의 효율성을 위해 대부분 FTA에 반영되어 있음.
- 단, 일부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미소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부속서 6-나에 규정

〈 미소기준 적용제외 품목 〉

HS 코드	품목
3류	어류
4류	낙농제품
7류	채소류
1006, 11류	쌀제품
0805, 2009.11~39	감귤류, 쥬스류
8류, 20류	복숭아·배, 살구류
15류	동식물성 유지
17류	설탕

■ 부가가치기준 및 세번변경기준의 “재료가치”(제6.3조)

- 수입 재료의 재료가치 : 재료의 조정가치

※ 조정가치 : “WTO 관세평가협정 및 주해”에 따라 결정된 가치로서, 제품가치에서 수출국으로부터 수입지까지 제품의 국제수송에 수반되는 운송, 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부과금 및 경비를 제외하도록 조정된 가치를 말함.

- 국내 구입 재료의 재료가치 : WTO 관세평가협정 및 주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상품에 대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 되는 가치
- 자가 생산된 재료의 재료가치 : 일반경비를 포함하여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과 통상적인 이윤을 포함한 가치

## 기타 원산지 판단 기준

### ▣ 누적기준 (제6.5조)

- (재료누적) 타 당사국의 원부자재가 당사국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상품에 결합이 일어난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 (공정누적)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해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생산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 ▣ 대체가능 재료 및 물품의 원산지 판정 특례 인정 (제6.7조)

- 석유·고철 등과 같이 대체가능한 재료 및 물품(fungible goods and materials)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때, 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 등과 같은 재고관리법에 따라 재료의 원산지 판정

– 일단 선택된 재고관리기법은 회계연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

※ 대체가능 상품 및 재료란 동 물품의 특성, 기능, 구조의 유사성 때문에 상업적으로 대체가 가능(fungible)한 물품으로, 역내산 재료와 역외산 재료의 물리적으로 구분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

※ 예시된 재고관리법의 개념

· 선입선출법(FIFO) : 먼저 입고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고,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나 가격을 기준으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 후입선출법(LIFO) : 나중에 입고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고, 나중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 다만, 원산지표시 등에 대해서는 대체가능재료 및 물품에 대해서도 각국이 국내법령에 따라 별도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주석 5)

### ▣ 세트 물품 (제6.9조)

- 세트를 구성하는 모든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세트의 조정가치의 15%이하인 경우에 세트 전체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참고: 세트 물품

- HS상 서로 다른 호에 해당되는 두 개 이상의 물품이 특정 목적을 위해 하나로 조합된 것
- "HS 해석의 일반해석규칙"의 규칙 3상의 세트에 해당되는 경우, 세트 내의 각 상품이 모두 원산지 상품인 경우에만 그 세트 전체가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됨. (제6.조제1항)
- (예) 전동식이발기(8510), 빗(9615), 가위(8213), 직물제타올(6302), 가죽제 케이스(4202)로 구성된 이발세트(8510)

### ▣ 간접재료 (제6.12조)

- 원칙적으로 간접재료는 원산지 결정시 고려하지 않도록 규정
- 다만, 부가가치기준에 따라 역내부가가치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간접재료를 고려하도록 함.

#### ※ 간접재료란?

연료, 설비 유지 부품 및 재료, 의류 · 안전장비 등 상품의 생산 ·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하지 아니하는 상품 등을 의미

■ **직접운송** (제6.13조)

- 직접운송원칙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제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규정
  - ① 단순 하역·선적, 제품의 보존, 운송에 필요한 작업 이외에, 당사국 영역 밖에서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치는 경우
  - ②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있지 않은 경우

**농산물 원산지 기준 (부속서 6-가)**

■ **신선 농산물은 완전생산기준에 근접한 원산지 기준 적용**

- 화훼, 채소, 과실, 곡물류는 당사국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농산물에 대해서 특혜관세 원산지 인정  
※ 캐나다, 멕시코 등 제3국에서 재배하거나 수확한 작물을 미국에 수입한 후 우리나라에 재수출하면 원산지 불인정
- 닭고기는 완전생산기준, 나머지 육류는 제3국산 생축을 수입해 도축한 경우도 원산지를 인정(도축국 기준)

■ **가공 농산물 중 민감한 품목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기로 함**

- 제3국에서 수입한 인삼을 가공한 제품은 원산지 불인정
- 제3국에서 수입한 과실, 견과류, 채소를 단순 가공하여 냉동하거나 염수 등에 저장·처리한 경우 원산지 불인정

## 자동차 원산지 기준 (제6.2조제3항)

- ▣ 자동차에 대해 기업이 공제법(Build-Down), 집적법(Build-Up), 순원가법(Net Cost)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 수준은 집적법 35%, 공제법 55%, 순원가법 35%를 규정

$$\text{※ 집적법} = \frac{\text{원산지 재료 가치}}{\text{조정가치}} * 100 \quad \text{공제법} = \frac{\text{조정가치} - \text{비원산지 재료 가치}}{\text{조정가치}} * 100$$

$$\text{순원가법} = \frac{\text{순원가} - \text{비원산지 재료 가치}}{\text{순원가}} * 100$$

순원가 : 총비용 - (마케팅 비용+로얄티+운송비용 등)

- ▣ 자동차 부품의 경우, 품목별원산지규정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 기준 적용

## 기타 공산품 원산지 기준 (부속서 6-가)

### ▣ 화학제품

- 양국의 입장을 공히 반영하여 미국의 주요공정기준과 우리의 세번변경기준을 모두 인정

※ 주요공정기준: 화학반응, 정제공정 등 협정이 정한 일정한 공정을 역내에서 거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 신발

- 역외산 갑피(uppers) 사용이 인정되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역내산 갑피 사용요건을 적용

▣ 기계, 전기·전자, 철강

- 원칙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되, 양국 산업상 민감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부가가치 기준(공제법 및 집적법) 적용
  - ※ 섬유 분야 원산지는 제4장 섬유 및 의류(p. 41) 참조  
섬유·의류 원산지 기준은 협정 부속서 4-가에 별도 규정

**특혜관세의 신청 [제6.15조 및 제6.16조]**

- ▣ 당사국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또는 동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인지에 의해 특혜관세 신청 가능
-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발급 가능하며, 일정한 양식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음.
  - ※ 한·미 FTA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수입자 인지(knowledge)에 의해서 특혜관세 신청을 가능토록 한 것이 특징
    - 다만, 수입자 인지에 의한 신청의 경우도, 특혜관세 정산 이전에 수입국 세관이 원산지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에 유의
- 원산지증명은 단일 선적 외에도, 증명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 동일 상품의 복수 선적에도 적용 가능(포괄증명)
- 미화 1,000불 이하의 상업용 또는 비상업용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류 제출 생략
  - ※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규정 19 CFR 10.1006(a)(2)는 원산지증명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한국산 물품 기준액을 미화 2,500불이하로 규정함으로써 협정상 기준보다 완화
-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4년간 유효함.

## 원산지 직접검증제도 (제6.18조)

- ▣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를 통해 원산지의 적정 여부를 확인
- 수출국 영역내 수출자 또는 생산자 시설에 대한 수입국 당국의 방문조사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한미 양국이 상호 합의토록 규정
- ▣ 검증 결과 원산지 적정 여부에 대한 부정적 예비판정시, 수입국은 수입자에게 추가정보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수입자에게 최종 결정 통보시, 사실관계와 그 법적 근거를 포함할 필요
- ▣ 원산지 증빙자료 미제출, 방문조사에 대한 거부 경우는 특혜관세 대우 배제 가능
- ▣ 검증 결과 허위 신고나 허위 증명 적발시, 수입국은 특혜관세 대우 배제 가능
- 수입국이 허위 신고·증명 결정시, 수입국은 당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협정상 의무를 준수한다고 결정할 때까지 그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의 이후의 동일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 대우 중지 가능

## 수출입 관련 의무 (제6.17조, 제6.19조, 제6.20조)

- ▣ 수출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증명 발급 일로부터 5년간, 수입자는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보관
- 증빙서류란 해당 수출품 및 동 상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구입원가 증빙서류, 생산증빙서류 등을 지칭

- ▣ 원산지상품 수입 당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수입자가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 신청이 가능하며, 일정 서류 구비시 납부 관세 환급 가능
- 상품이 수입 시점에 원산지 상품이었다는 신고 및 관련 증빙 자료 제시
- ▣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신이 발부한 원산지 증명서류의 오류사항을 수입자 등에 자발적으로 통보한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개성공단 관련 합의내용 (부속서 22-나)

※ 최종 조항챕터의 부속서로 규정

- ▣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
- 양국간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에서 일정 기준하에 역외가공지역(OPZ)을 지정할 수 있는 별도 부속서를 채택  
※ OPZ 지정기준(예시) : ① 한반도 비핵화 진전 ② 역외가공지역이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 ③ 역외가공지역내 일반적인 환경 기준, 노동 기준·관행, 임금 관행, 영업 및 경영 관행(단, 북한 지역의 일반적인 상황 및 관련 국제 규범을 참조)
-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수립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OPZ에서 추가될 수 있는 총투입가치의 최대한도 등을 결정하도록 규정
- 위원회의 결정은 당사국들에게 권고되고, 각 당사국은 OPZ에 대해 협정문 개정을 위한 입법적 승인을 구할 책임을

**참고: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개요**

- 구성 및 운영 :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 협정 발효후 1주년에 개최  
(매년 1회 개최 또는 양국 합의시 수시 개최 가능)
- 기능
  - 한반도 상황이 OPZ 설립 및 개발에 적절한지 검토
  - OPZ가 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들을 확인
  - OPZ 지정기준 수립
  - 동 지리적 구역들의 OPZ 지정기준 충족여부 판정
  - OPZ의 생산품이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 OPZ에서 추가될 수 있는 총 투입가치의 최대 한도를 설정

## 관세 행정 및 무역 원활화

### 통관절차의 간소화 [제7.2조]

- ▣ 효율적인 물품반출을 통한 양국간 무역원활화를 위해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채택도록 규정
- 간소화된 통관 절차란 가능한 한도에서 상품 도착 후 48시간 내 반출, 상품 도착 전 사전신고, 부두 직통관 및 최종 세액결정전 화물반출 승인 등을 의미

### 특송화물 통관절차 간소화 [제7.7조]

- ▣ 특송화물의 통관서류 최소화, 단일 적하목록 제출 허용 등 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원칙적으로 통관서류 제출후 4시간 이내에 국내반출 허용
- ※ 특송화물: DHL, Federal Express 등 특급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배달되는 상용서류, 샘플 등
- 원칙적으로 미불 200불 이하의 특송화물의 경우 관세 및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공식적 반입서류도 요구하지 않을 것을 규정

## 위험관리방식의 세관검사 [제7.4조]

- 각 당사국은 전자적이고 자동화된 위험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고위험 화물은 중점 검사하되, 저위험 화물은 반출을 간소화도록 규정

## 원산지 등 사전심사결정 [제7.10조]

-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요청시, 상품 수입 전에 세관당국을 통하여 다음에 대한 사전심사(advance ruling) 결정서 발급
  - ①품목분류, ②관세평가기준, ③관세환급 관련 사항, ④원산지 상품 여부, ⑤재반입상품 무관세 자격 여부, ⑥원산지 표시, ⑦쿼터 및 TRQ 적용 여부, ⑧기타 양국이 동의하는 사항
- 세관당국은 원칙적으로 사전심사 요청 접수로부터 90일 이내에 판정 결과를 발급하고, 사전심사결정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실 및 근거를 적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신속히 통보
  - 신청인은 사전심사결정에 대한 행정적 재심 청구 가능
  - 사전심사 결정이 허위의 정보에 의한 경우, 당국은 사전심사결정을 소급하여 변경하거나 철회 가능하며, 신청인이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민·형사적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 가능

## 과세자료 비밀유지 [제7.6조]

-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이 그 정보를 비밀로 지정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

- 법률집행 또는 사법절차상의 것을 제외하고는 제출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
- 수출입업체 또는 상대국이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 등 기업기밀서류는 비밀유지를 의무화

### 통관 협력 (제7.5조)

- 통관제도 개선, 관련 법 위반 단속 관련 정보교환, 세관기술지원, 공동훈련프로그램, 세관분석기법의 교환 등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양국 세관당국간 상호 협력 규정
- 양국 세관당국간 접촉창구(contact point)를 설치하여 신속·안전한 정보교환 및 원활한 협조를 도모
-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세 사안에 대한 소위원회(Subcommittee on customs matters)를 설치하여, 상품의 신속한 반출(제7.2조) 및 통관협력(제7.5조)에 관한 사항 협의 가능(제2.14조제4항)

### 재심 및 불복청구 (제7.8조)

- 수입자에게 관세결정에 대한 불복청구권을 보장하되, 이와 관련,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수입자를 거치지 않고, 수입국의 관계당국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보장
- ※ 원산지소명자료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제품원가 등 기업기밀을 포함하고 있어, 거래관계에 있는 수입자에게 제출하기 곤란하기 때문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SPS)

### WTO 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 재확인 (제8.2조)

- 양국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준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 SPS조치: 사람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위생 및 검역 조치(질병, 오염물질 관련 규제 등)

### SPS 위원회 설립 (제8.3조)

- 구성, 설치 및 회합
  - SPS 사안을 담당하는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
  - 협정 발효후 45일 이내에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서한 교환을 통해 위원회 설치
  -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최소 매년 1회 회합
- 목적
  - WTO SPS 협정의 이행 증진
  -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건강 보호

- SPS 사안 관련 협력·협의 증진
- 양 당사국간 무역 촉진

■ 임무

- 과학적 위험분석이 각 당사국의 관련 규제기관에 의하여 수행되고 평가됨을 인정
- SPS 관련 규제절차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SPS 조치의 개발 및 적용 관련 사안 협의
- WTO SPS 위원회 등 SPS 관련 국제 및 지역 포럼에서의 입장 및 의제 관련 협의
- SPS 관련 기술협력 활동 조정 증진
- WTO SPS 협정에 대한 특정 이행 문제 관련 양자적 이해 증진
- 동물건강, 식물건강과 육류, 가금육 및 가공계란 제품 연례 기술협의 등 양국간 SPS 관련 협의체에서의 진전사항 검토

**분쟁해결 (제8.4조)**

- 양측간 SPS 조치 관련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한미 FTA상의 분쟁해결절차의 적용대상에서 배제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TBT)

### 적용범위 [제9.2조]

- 양국간 상품 무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앙 정부기관(예외 가능)의 모든 표준·기술규정·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채택 및 적용
- 상기 적용 대상의 개정과 대상품목 범위의 추가 등도 적용 범위에 포함
- ① 정부기관이 자신의 생산 또는 소비 요구를 위하여 마련한 기술 규격 및 ② SPS 조치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적합성 평가기관 인정시 내국민대우 [제9.5조제3항]

- 각 당사국이 상대국 영역의 적합성 평가기관을 인정 또는 승인하거나 면허를 부여하거나 달리 인정(이하 "인정")하는 경우, 자국 영역의 적합성 평가기관과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
- 당사국이 자국 영역에서의 특정 기술규정이나 표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기관을 인정하면서 그 기술규정이나 표준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기관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그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시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하도록 함.

## 통신분야 MRA (제9.5조제5항)

- ▣ 통신분야의 상호인정협정인 APEC-TEL MRA 2단계 이행을 위해 가능한 조속히 조치를 취하기로 함.

- ※ APEC-TEL MRA

- 정보통신기기분야 적합성평가결과의 상호수용을 위하여 APEC 회원국간 체결한 상호인정협정
  - 시험성적서 상호수용 단계인 Phase I과 제품인증서 상호수용 단계인 Phase II로 구분되며, 한미 양국간에는 Phase I MRA가 이미 체결된 상태(‘05.5)

## 투명성 (제9.6조)

- ▣ 표준·기술규정·적합성 평가절차 관련 법령 등을 제·개정하는 경우 국내의 이해관계자(업계, 단체, 개인 등) 외에 상대국 이해관계자도 비차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용

- 상대국에 통보된 기술규정안 등에 대해 최소 60일의 서면의견 제출기간을 부여

- ※ 우리는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85호) 제정을 통해 기술규정 등에 대한 60일 입법예고 기간 부여

- 제·개정하고자 하는 기술규정안 및 최종본 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도록 보장

- ※ 미국 관련 웹사이트 : [www.federalregister.gov](http://www.federalregister.gov), [www.regulations.gov](http://www.regulations.gov) 등

- ▣ 지방정부의 기술규정 등도 상대국 통보대상으로 규정

- WTO TBT 협정상 지방정부 기술규정 등의 통보에 추가하여, 국제표준과 합치하는 기술규정도 상대국에 통보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위원회 (제9.8조)

### ■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TBT) 위원회의 주요 기능

-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TBT 사안을 신속히 처리
-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개선에 대한 협력 증진
- 상대국에 의해 지정된 분야에서 그 상대국영역의 기관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를 인정하도록 하는 요청에 대한 검토 원활화

### ■ TBT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임시 작업반을 설치하여 운영 가능

- 이러한 작업반에는 비정부기관의 전문가나 이해당사자 포함 가능

# 9-1

## 자동차

### 배기량 기준 조세 (제2.12조)

▣ 개별소비세(차량가격기준×세율 부과) : 적용 단계를 3단계에서 배기량 1,000cc 기준의 2단계로 개편

※ “특별소비세”에서 “개별소비세”로 명칭 변경(2008.1.1)

■ 발효전 : 800cc 이하 면제, 801~2,000cc 5%, 2,000cc 초과 10%

■ 발효후 : 1,000cc 이하 면제, 1,001~2,000cc 5%  
2,000cc 초과는 발효시 8% → 발효 3년후 5%로 인하

현행 (07.6.30 서명 당시)		협정 발효(2012.3.15) 이후				
경차 (800cc이하)	면제	경차 (800cc이하)	면제			
소·중형차 (801~2,000cc)	5%	소·중형차 (1,000~2,000cc)			5%	
대형차 (2,000cc초과)	10%	대형차 (2,000cc초과)	2012.3.15	2013.1.1	2014.1.1	2015.1.1

▣ 자동차세(cc 기준 부과) : 5단계를 3단계로 개편

	경차 (800cc이하)	소형차 (801~1,000cc)	소형차 (1,001~1,600cc)	중형차 (1,601~2,000cc)	대형차 (2,000cc초과)
현 행	80원	100원	140원	200원	220원
개 편	80원	140원	200원		

▼

▣ 차종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한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의 도입 또는 기존 조세의 수정을 하지 않기로 합의

▣ 대한민국 내의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매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 도시철도공채와 지역개발공채를 자동차 구매 즉시 매각하여 공채 액면 가액의 약 80%를 환매할 수 있음을 양측이 확인

※ 환매비율은 채권에 대한 현행 시장 이자율에 따라 변경

- 우리 정부는 환매 방식,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에게 알리도록 조치

**환경기준 [부속서한 '구체적 자동차 규제문제']**

▣ 우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상의 초저배출차량기준(K-ULEV) 적용에 관한 합의를 협정에 반영

※ K-ULEV : Korea-Ultra Low Emissions Vehicle

- 대한민국내 제작사별 자동차 판매량 및 총판매차량의 배출가스 (NMOG) 평균 배출량을 계산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규정집 (California LEV II Regulations, Cal. Code Regs. tit. 13, §1961) 및 그 적용 방법을 사용

- 4,500대 이하는 LEV 기준, 4,501대~1만대는 LEV/ULEV 기준, 1만대 초과는 ULEV 기준을 평균배출량 기준으로 적용
- ※ 평균 배출량 제도(FAS : Fleet Average System)
  - 제작사에게 다양한 배출허용기준(캘리포니아의 배출가스 기준인 LEV, ULEV, SULEV)을 허용하여 유연성을 부여하되, 제작사는 전체 자사 판매차량의 배출량 평균이 평균배출량 기준을 충족해야 함.
- 휘발유 동력 차량에 대해서만 초저배출차량기준(K-ULEV) 적용

### 안전기준 (부속서한 '구체적 자동차 규제문제' )

- 전년도에 한국에 25,000대 이하로 미국 원산지 차량을 판매한 제작사가 생산한 미국 원산지 자동차는, 그 제작사가 미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리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
- 단, 상용차(맞춤형이 아닌 4.5톤 이하의 픽업트럭 제외)는 위와 별도로 최대길이, 중량 등 협정문에 규정된 16개 안전기준을 만족시켜야 함.
- 다만, 우리 국민의 건강, 안전, 그리고 환경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 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가 가능
- 25,000대 초과의 경우에는 양국간 협의하여 결정
- 우리 자동차 안전기준의 자기인증 관련 규정 제정 또는 개정시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는 상기 규정 발표 후 최소 2년간 적용 유예

## 자동차 표준 작업반 (부속서 9-4)

- ▣ 자동차 작업반의 조정자 역할은 외교통상부와 미 무역대표부가 수행
  - 동 작업반은 미국의 교통부, 환경보호청, 우리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및 그 밖의 관련 규제 기관을 포함
  - 동 작업반은 양 당사국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다른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포함 가능
  - 매년 최소 1회 개최
    - 통상적으로 국제연합 유럽경제이사회의 자동차 규제 조화를 위한 세계총회(WP-29) 또는 양 당사국 모두가 참여하고 자동차 규제 문제를 다루는 그 밖의 양자 또는 다자간 포럼의 회의와 연계하여 개최
- ▣ 작업반의 기능
  - ① 관련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이행 및 집행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
  - ② 양 당사국과 이해당사자간의 협력 증대
  - ③ 자동차 규제 문제를 다루는 다자간 국제포럼에서 양 당사국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
  - ④ 자동차 규제와 관련, 우수규제관행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이행 및 집행을 점검
- ▣ 당사국은 개발중인 관련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와 관련 규제영향 분석과 같은 가용한 정보를 작업반에 제공

- 작업반은 당사국이 제공하는 정보를 평가하고,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에게 견해를 제공
- 당사국이 채택한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해 당사국이 사후이행검토를 수행하는 경우, 결과를 작업반에 제출

### 투명성 (추가협상 서한교환 제3절)

- 자동차에 관련 중요한 규정에 대해 주기적으로 사후이행검토를 실시
  - ※ 추가협상 서한교환 각주 6: “주기적이란 보통 조치가 채택된 다음 날부터 10년 이내에 최소 한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적절한 때를 말한다.”
- 표준·기술규정·적합성 평가절차의 효과성(명시된 목표의 달성 여부, 부담정도, 당사국의 여타 표준·기술규정·적합성 평가절차와의 양립가능성)에 대해 심사
  - ※ 미측은 Executive order 12866 (Regulatory Planning and Review)에 근거 동 의무를 이행
    - 중요한 현행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검토(Executive order 12866 제5조)
-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한·미FTA 발효 2년후 적용

### 표준 협력 (제9.7조)

- 양 당사국은 국제연합 유럽경제이사회의 자동차 규제 조화를 위한 세계총회(WP-29) 등에서 자동차의 환경 및 안전기준의 조화를 위하여 양자적으로 협력
- 자동차와 관련된 기술규정은 정당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것 이상

으로 무역 제한적일 수 없음.

※ 이러한 정당한 목적은 특히 국가안보상의 요건,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를 의미

## 자동차에 관한 대체적 분쟁 절차 (부속서 22-가)

- 협정내 자동차 관련 내용에 대한 분쟁해결 신청시 양국 모두 협정 내 일반 분쟁해결 절차보다 신속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 ① 공동위원회 회부전 양자간 협의 생략 ② 공동위원회 협의 60일→30일, ③ 패널 설치후 최초보고서 제출 180일→120일, ④ 최종보고서 제출 45일→21일
- 서면통보 전달 후 7일내 양국이 회합하여 패널후보자 명부에서 추첨으로 패널 구성
- 패널이 피소국의 특정조치에 대해, ① 피소국이 협정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관련 이익의 무효화·침해를 야기하였으며 ② 그러한 불합치 또는 무효화·침해가 자동차의 판매, 판매를 위한 제의, 구매, 운송, 유통 또는 사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최종 판정하는 경우,
  - 승용차(HS 제8703호의 원산지 상품)에 한정하여 그 상품에 대하여 당시 적용하고 있는 실행관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까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음.
  - 피소 당사국이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패널이 판정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의 인상된 관세는 신속하게 철회
- 협정 발효 후 10년간(2022.3.14까지) 자동차 신속 분쟁해결 부속서에 따라 설치된 패널이 당사국의 협정 위반 또는 이익의

무효화·침해가 있다고 판정하지 않을 경우, 동 부속서상 절차의 운영은 실효(失效)됨.

##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 [추가협상 서한교환 제4절]

- ▣ 양국은 자동차 품목(HS 8703 또는 8704 :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가능한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도입
- 한·EU FTA 일반 긴급수입제한조치에서 아래 6가지 요소 차용
  - ① 발동기간은 최대 4년, ② 발동 횟수 미제한, ③ 잠정조치 절차 요건 간소화, ④ 점진적 자유화의무 미규정, ⑤ 2년간 보복금지, ⑥ 관세철폐 종료후 10년간 적용가능

### 〈 한·미 FTA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 주요 요소 〉

구분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	한·미 FTA 일반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	자동차	전 품목
① 발동 기간	4년(2년+2년)	3년(2년+1년)
② 발동 횟수	제한 없음	1회 한정
③ 잠정조치	규정 없음	최소 20일 공고 및 최소 45일 조사
④ 점진적 자유화	규정 없음	조치 1년 이후 점진적 자유화
⑤ 보상	최초 2년간 보복 금지 긴급수입제한조치 종료시 보상의무 및 보복권리 소멸규정 삭제	당사국들은 보상에 대한 협의후 보복행사 가능
⑥ 존속 기간	관세 철폐기간 +10년	발효후 10년 (10년 이상 관세 철폐인 경우 해당 기간)

## 무역구제

###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조건 및 제한 [제101조 및 제102조]

- ▣ 한·미 FTA는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제도를 도입
- 발동 요건
  - ① 한·미 FTA로 인한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 ② 타방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 수입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급증이
  - ③ 동종 또는 직접 경쟁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그러한 우려를 야기하는 실질적인 원인일 경우
- 조치 내용
  - ① 관세 감축의 정지 또는
  - ② MFN 실행관세율까지 관세율 인상
    - 조치 발동 시점의 MFN 실행관세율과 협정 발효일 직전의 MFN 실행관세율 중 낮은 것을 넘지 않는 수준까지 관세율 인상
- 조치 기간
  - 원칙적으로 2년 이하,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총 3년 이하)

■ 제도존속 기간

- 협정 발효후 10년
- 관세철폐기간이 10년 이상인 품목은 관세철폐 기간까지

■ 기타 사항

- 동일한 상품에 대해 재발동 금지
- 예상 조치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점진적 자유화 실시

### 잠정조치 (제10.3조)

- ▣ 농산물 등 부패하기 쉬운 상품의 피해 등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조기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잠정조치”를 허용
- 잠정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판정 이전에 최소 20 일간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하고 조사개시로부터 45일 이후 조치를 발동하도록 규정
-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최대 200일까지 가능

### 보상 (제10.4조)

- ▣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후 30일 이내에 조치를 적용한 당사국은 상대국에게 보상 관련 협의 기회 제공
- 보상에 관한 합의 도출 실패시 조치 적용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해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는 양허적용 정지 가능

### 참고: 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 미측 이행 조치

- ITC의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절차(19 USC 2251–2252, 2254, 2436, 2451–2451a)에 대한 규칙(19 CFR Part 206)을 일부 수정 (2012.1.26)
  - ① NAFTA(1994) 이후 미국이 체결한 12개 FTA(한·미 FTA 포함)를 대상 FTA 리스트에 추가, ②대상품목에 한국 자동차 추가 등이 주요내용
- 추가적으로 미 무역대표부(USTR)는 2012.2.20자 서한을 통해 아래 사항을 확인
  -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개시시, USTR이 한국측에 통보
  -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 전, 한국측 요청시, USTR이 한국과 협의
  -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 후 보상 관련, 한국측 요청시, USTR이 한국과 협의
  - 현행 USITC의 권한하에서, 예비판정전 최소 20일의 증거/의견제시 기간을 부여

###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 면제 (제10.5조)

- ▣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WTO 차원에서의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시 상대국의 원산지 상품이 국내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그러한 우려를 야기하는 실질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 발동 대상에서 상대국을 면제
- ▣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협정에 따른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와 WTO 협정에 따른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을 금지

###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개시전 사전 통보 및 협의 의무 (제10.7조제3항)

-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 조사개시 이전에 상대국에 서면통보를 제공하고 관련 협의 기회를 부여
- WTO 협정에는 조사개시 이전에 상대국에 대한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미 FTA는 추가적으로 반덤핑 조사개시전 협의 절차를 의무화
  - ※ 상계관세의 경우 WTO 보조금협정 제13.1조에 조사개시 전 사전협의 의무 규정

###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과정에서 가격 또는 물량 약속 제도 활성화 (제10.7조4항)

-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 가격 약속 제안(상계관세의 경우 가격·물량 약속 제안 모두 포함)이 있을 경우 수입국의 조사 당국은 이를 적절히 고려하고, 충분한 협의 기회를 당사국 수출자에게 부여하도록 규정
  - ※ 가격 또는 물량에 대한 약속 : 수출자의 가격인상 또는 수출물량제한에 관한 약속 제의가 조사당국에 의해 수락될 경우, 관세부과 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할 수 있는 제도
    - 이 제도는 수출자에게 유리한 문제 해결 방식이며, 덤팡방지관세를 부과 받지 않고 조사를 중지할 수 있는 대안적 제도

#### 참고: 반덤핑/상계관세 관련 미측 이행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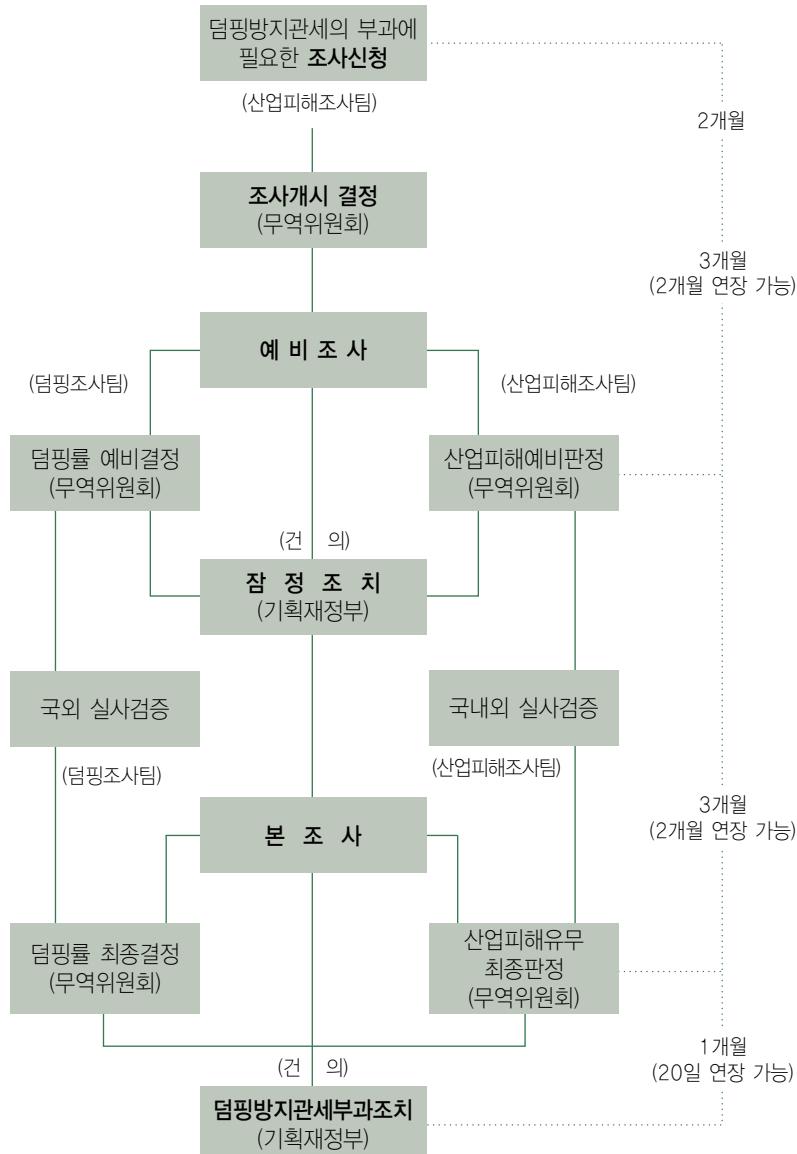
- 반덤핑 조사신청 접수 후 통보 규정
  - 19 USC 1673a(b)(3), 19 CFR 351 202(f) 및 19 CFR 351 208(f)
- 상계관세 조사개시 전 통보 규정과 가격 또는 물량 약속 제의 관련 절차 규정
  - 19 USC 1671a, 19 CFR 351 202(f), 19 CFR 203(i)(2) 및 19 CFR 351 208(f)

- 이와 별도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와 관련하여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실질적 의무를 명시한 상무부 수입청(Import Administration) 차관보 (Assistant Secretary) 명의의 내부 공문(Notice)을 회람하고, 동 공문을 상무부 홈페이지에 협정 발효 직후 게재를 약속
  - 2012.3.15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관련 공문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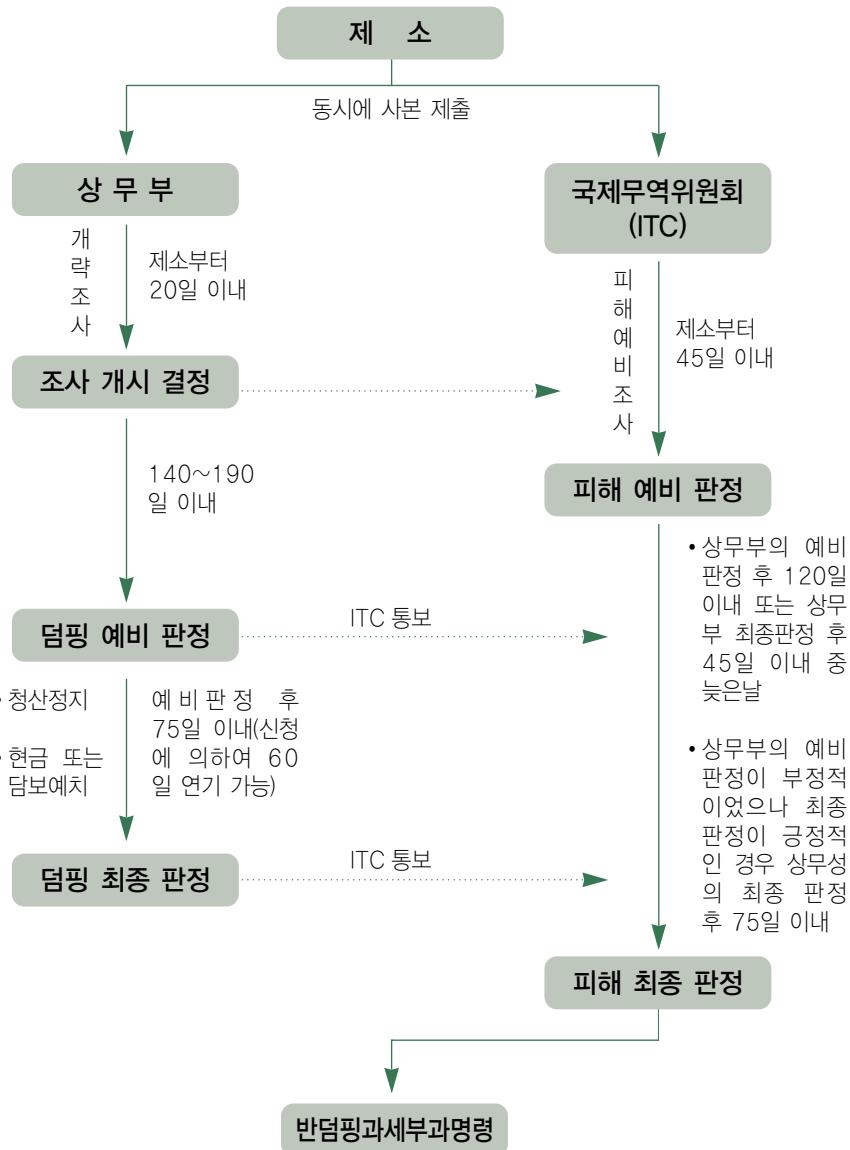
##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제10.8조)

- ▣ 양국은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 조치와 긴급수입제한조치 문제를 포함한 무역구제 사안을 다루기로 함.
- ▣ 무역구제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 ① 양국간 무역구제 법령 및 관행에 대한 이해 증진
  - ②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한 조사개시전 사전통지 및 협의 조항과 가격/물량 합의 조항의 이행 및 준수 여부를 감독
  - ③ 무역구제기관간 협력 증진
  - ④ 양국의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에 대한 정보 교환의 장을 제공
  - ⑤ 무역구제 관련 법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수립 및 감독
  - ⑥ 무역구제 관련 국제적 이슈(예: WTO 반덤핑 협상), 양국 조사 기관의 조사 관행(예: 이용가능한 사실, 실사 절차), 산업보조금 관행 등에 대하여 협의
- ※ 이용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 조사 기관이 피제소 수출기업에게 자료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답변 제출이 미진할 경우 조사기관이 이용 가능한 사실에 근거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관행
- ※ 실사 절차(verification procedure): 조사기관이 수출기업의 답변서를 접수한 이후, 답변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기업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조사 절차

## 참고 1 한국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절차



## 참고 2 미국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절차



## 투자

### 투자챕터 적용범위 (제11.1조)

- ▣ 본 챕터는 발효 이전에 발생한 행위 또는 사실이나, 발효 이전에 종료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소급효 배제).
- ▣ 중앙, 지역, 지방정부 및 그러한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비정부 기관에 적용

###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NT) (제11.3조)

- ▣ 외국투자자에 대해 동종 상황(like circumstances)하에서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할 의무를 말하며, 사실상(de facto)의 차별도 금지
- ▣ 연방제를 취하고 있는 미국은 FTA 체결에 있어 내국민대우로서 내주민대우(in-state treatment) 또는 타주민대우(out-of-state treatment)를 제공하고 있는데, 한·미 FTA에서는 내주민대우를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
 

※ 내주민대우는 특정주(A주)내에서 FTA 체결상대국 투자자에게 A주 주민과 동등한 대우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주민대우는 특정주(A주)내에서 FTA 체결상대국 투자자에게 A주 주민과 동등한 대우는 아니나, 다른주(B주)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내주민대우가 타주민대우보다 더 우월한 대우

- 미국은 대부분의 FTA(미·칠레, 미·싱가포르 FTA 등)에서는 내주민대우를 인정하나, 일부 협정(미·오만 FTA)에서는 타주민대우만 인정

###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 MFN) (제11.4조)

- 최혜국대우는 동종 상황(like circumstances)하에서 다른 협정에서 이 협정 보다 유리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이 협정의 당사국에게 자동적으로 그러한 추가적 혜택이 부여된다는 것을 의미
- 한·미 FTA에서 양국은 한·미 FTA 발효 이후 서명되는 협정에 대해 MFN 대우를 부여하기로 합의
- 단, 일부 분야는 미래에 체결하는 협정에 의한 MFN 대우도 제외
  - 우리측은 1) 항공, 2) 수산, 3) 해운, 4) 위성방송, 5) 철도, 6) 시청각 공동제작협정 등에 대한 MFN 대우를 배제
  - 미측은 1) 항공, 2) 수산, 3) 해운, 4) 위성방송에 대한 MFN 대우를 배제
    - ※ 상기와 같이 일부 분야에 대해 MFN 대우를 배제함과 동시에 이런 분야가 아닌 분야에서도 MFN 대우가 배제되는 특정 조치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유보에 명시

### 최소기준대우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제11.5조)

-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상 인정되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원칙과 국제관습법에 따라 요구되는 수준의 경찰보호를 의미

## 수용 및 보상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제11.6조)

- ▣ 정부는 1) 공공목적을 위해 2)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3)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4) 적법절차와 협정상 최소대우기준에 따라서 투자자의 재산을 수용 및 국유화할 수 있으나,
- 보상은 지체없이 지불하되, 수용 직전의 공정한 시장가격 (fair market value)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상할 것을 규정
- ▣ 또한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도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직접수용과 동등한 정도로(equivalent) 재산권을 침해하는 간접수용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을 제공할 것을 규정
- “간접수용”이란 직접수용처럼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권을 박탈, 국유화하는 것은 아니나, 특정 정부 조치로 인하여 투자자가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투자의 가치가 직접 수용과 동등한 정도로 박탈되는 경우를 의미
- 간접수용에 대한 보상은 한·EU FTA를 제외한 우리가 체결한 모든 FTA 및 대부분의 투자보장협정을 포함한 전세계 투자 협정에 일반적으로 포함
  - ※ 한·EU FTA의 경우, EU집행위원회가 투자 보호 사항에 대한 협상 권한이 없어 간접수용 등 투자 보호 장치가 포함되지 않았음(EU 국가와는 개별적인 양자 투자보장 협정 체결).

### 참고: 간접 수용 사례

- NAFTA 투자분쟁 사례 중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간접 수용으로 판정된 사례는 Metalclad 사건이 유일
- 동 사건에서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 지방에 소재한 쓰레기 매립장을 인수하고자 하는 미국 투자자에게 쓰레기 매립장 영업에 필요한

모든 인가가 발급될 것이라고 보장하였으나, 미국 투자자의 동 매립장 인수 및 처리시설 공사 후, 시정부가 허가 발급을 거부하고 주정부가 해당지역을 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할 수 없게 됨.

- 미국 투자는 여전히 동 쓰레기 매립장의 법적 소유권을 갖고 있으나 멕시코 정부의 조치로 동 매립장의 투자 가치가 전면적으로 박탈되었으며 멕시코 정부가 유효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아 중재판정부는 이를 간접 수용으로 판정

※ 간접수용의 판정 법리 및 예외적 상황 등에 대해서는 수용부속서에서 규정 (상세 내용은 아래 수용부속서 내용 참조)

### 송금(Transfer) 보장 [제11.7조]

- ▣ 출자금, 이윤, 자본이득, 배당, 이자, 로열티 등을 자유롭게, 그리고 지체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규정
-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 ①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② 유가증권·선물·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거래 및 취급, ③ 법 집행이나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때, ④ 형사범죄, ⑤ 사법 또는 행정절차에서의 명령이나 판결의 준수를 보장
- ▣ 송금보장 조항의 예외로서 외환위기 시 자본거래 통제 등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인정하고, 이를 송금부속서에 규정

### 이행요건(Performance Requirements, PR) 부과금지 [제11.8조]

- ▣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매각, 처분 등에 관하여 아래 특정 이행의무의 부과를 금지

- 일정 수준 또는 일정 비율의 상품 또는 서비스수출 및 국내 재료 사용 달성, 국내상품 사용, 수출과 수입간의 연계, 수출과 판매간의 연계, 기술이전, 특정지역으로의 독점공급 등 7가지
- 단, 일정 수준의 수출 의무와 기술이전 의무는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과 가능
- 그 외 일정 비율 내국인 고용, 장애인 의무고용, 연구개발 수행 등 다른 이행요건은 모두 부과 가능
- 또한 상기 금지된 이행요건도 ① 환경보호, 보건, 안전 등 공공 정책적 목적의 경우, 또는 ② 유보(부속서)에 기재한 경우 부과 가능

###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SMBD) 국적제한 금지 요건 (제11.9조)

- 외국투자기업의 고위경영진 임명에 국적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
- 외국투자기업의 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산하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에 대한 국적요건은 부과 가능
- 단, 그러한 요건이 외국인 투자자의 해당투자 기업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materially impair the ability) 해서는 안됨.

## 챕터상 예외

### ■ 투자와 환경(Investment and Environment) (제11.10조)

- 챕터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국은 투자활동이 환경에 대해 민감성을 고려하면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음을 규정

### ■ 혜택의 부인(Denial of Benefits) (제11.11조)

- ① 협정당사국과 정상적 경제관계(normal economic relations)를 유지하지 않고 있는 제3국인이 소유하는 타당사국 기업, 또는
- ② 제3국인이 소유하고 타당사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타당사국 기업(이른바 paper company)에게는 협정상 혜택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함을 규정

### ■ 비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s) (제11.12조)

- 특정조치에 대해서는 협정상 특정 의무에 대한 예외를 아래와 같이 규정

- ① 내국민대우(NT), ② 최혜국대우(MFN), ③ 이행요건(PR), ④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SMBD) 등에 대해 합치되지 않는 조치를 협정 부속서 유보목록(부속서 I)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협정의 의무가 면제됨.

※ 서비스 · 투자 분야 유보목록은 공통으로 작성, 서비스 chapter의 부속 서로 포함(투자분야 주요 유보내용은 서비스 챕터 설명자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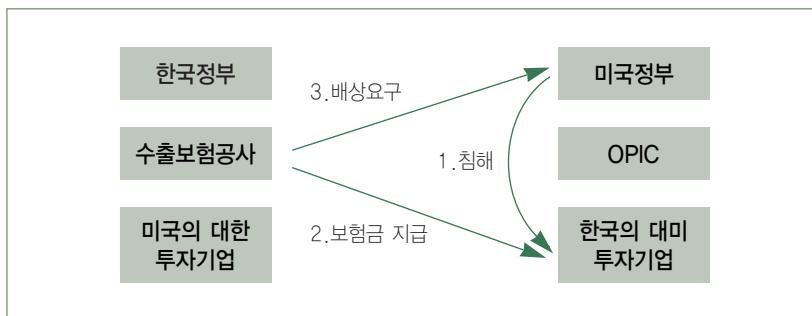
- 또한 정부조달과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에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관련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 ■ 대위변제(Subrogation) (제11.14조)

- 국가기관의 해외투자보험에 가입한 투자자가 상대국의 협정

위반 조치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 동 국가기관이 투자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상대국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

※ 국가기관: 한국은 수출보험공사(현, 한국무역보험공사), 미국은 해외투자 보험공사(OPIC)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ISD)

###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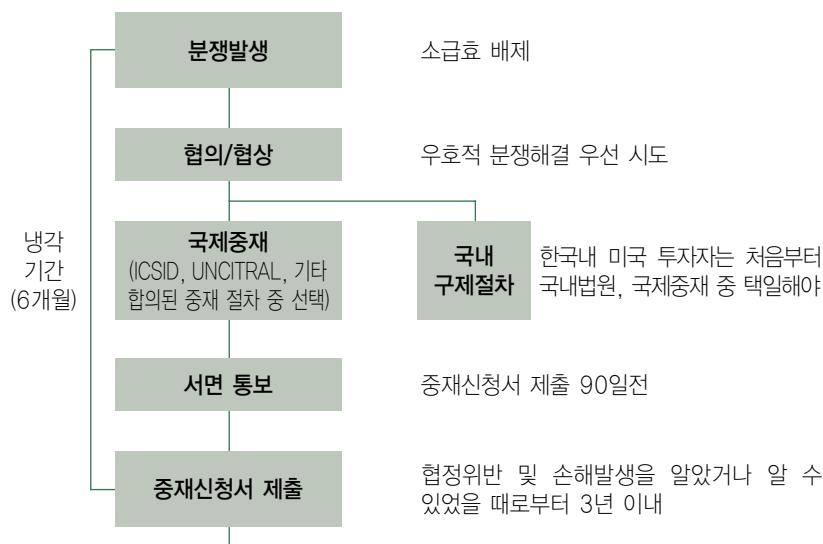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는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 제11장 Section A(투자)상의 의무,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배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국제중재는 3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Tribunal)에서 심리
  - 투자자와 정부가 각각 1인을 지명, 의장중재인을 선임하되, 중재 제기후 75일 이내에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ICSID 사무총장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지 않은 한 제3국 국적을 가진자를 의장중재인으로 선임
  - 중재절차는 하기 절차 중 하나를 원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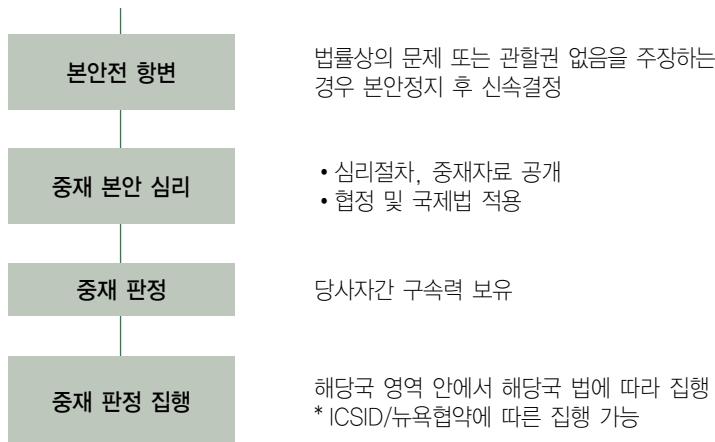
- ICSID(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World Bank 산하 기구로서 회원국에게 투자자-국가간 분쟁절차를 제공
-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국제무역법 제정을 위한 UN 산하 전문위원회로서 국제중재절차 및 규칙을 규정
- 기타 합의할 수 있는 중재절차: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상업회의소) 등 제3의 절차에 양자가 합의하는 경우

### ■ 국제중재판정의 효력

- 중재판정은 단심제로서 확정력을 가짐(binding and final).
- 중재판정은 금전적 손해와 적용가능한 이윤 및 재산권의 복구만으로 한정되며, 당사국의 해당 조치를 취소하도록 할 수 없음.
-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명령은 불가

### ■ [ISD 절차 개요]





##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적용 범위

- ISD 대상으로서 협정상 의무 위반 외에 투자계약 및 투자인가 위반 사항을 포함(제11.16조)
  - 투자계약은 중앙정부와의 계약에 한정(지방정부 및 국영기업체는 제외)
  - 투자인가 관련 '양측이 투자인가기관을 갖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각주를 추가(각주17)

## ▣ 제소의 주체

- ① 외국인투자자가 자신의 손실에 대하여 직접 중재 청구 또는
- ② 투자기업을 소유, 통제하는 외국인투자자가 기업을 대리하여 중재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제11.16조제1항)

- 중재의 병합 : 동일한 사안으로 다수 투자자가 각각 별개의 ISD를 청구한 경우, 정부는 그러한 중재사건들을 병합하도록 신청할 수 있어 정부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여러 중재판정에서

대응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제11.25조)

#### ■ 중재절차의 투명성

- 중재심리 및 제출 서류를 모두 일반에게 공개 (제11.21조)
  - 단 비밀정보는 관련 절차에 따라 보호되도록 규정
- 중재재판부는 분쟁 당사자와 협의후 시민단체 등 제3자 (amicus curiae) 의견제출 허용 가능 (제11.20조제5항)
- 또한 영어와 한국어를 심리, 중재제기, 결정, 판정 등 모든 중재절차에서 공식언어로 사용 (제11.20조제3항)

#### ■ 국제중재와 국내제소 절차와의 관계 (제11.18조)

- 투자자는 중재 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국 법원에서 절차를 개시·계속하지 않겠다는 서면포기서를 제출해야 함.
- 단, 미국인투자자는 협정상 의무 위반의 경우,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국법원 또는 국제중재절차 제소 중 하나를 선택한 후에는 다른 절차 제소 불가능(부속서 11-마)
- 한국인투자자는 미국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절차 개시 후에는 미국법원 제소가 불가능하나, 미국법원 제소 후에는 동 미국 국내법원 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국제중재절차 개시 가능

#### ■ 준거법 (제11.22조)

- 협정상 의무위반 사안에 관한 국제중재절차 : 본 FTA 협정과 적용가능한 국제법규칙
-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 위반사안에 관한 국제중재절차 : 해당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에 규정된 법, 또는 분쟁당사자간 합의된 법

- 이러한 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합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내법과 적용가능한 국제법 규칙

## 정의 (제11.28조)

### ▣ 투자

-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며, 자본 또는 기타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위험의 감수와 같은 투자의 성격을 가진 아래 자산을 의미

① 기업

② 주식, 증권, 기타 지분참여 형태

③ 채권, 회사채, 또는 기타 채무증서, 대부

④ 선물, 옵션, 그리고 기타 파생금융상품

⑤ 완성품인도, 건설, 경영, 생산, 양허, 수익배분 및 이와 유사한 계약

⑥ 지적재산권

⑦ 면허, 인가, 허가 및 국내법에 따라 부여된 유사한 권리

⑧ 기타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 동산 또는 부동산, 그리고 리스, 저당권, 유치권, 질권 등 관련 재산권

※ 시장점유율, 시장접근, 기대이익, 이윤창출 기회는 그 자체로서 투자가 아님을 명시하는 각주 추가(각주13)

- 본 협정의 목적상 투자성격을 가지는 대부분이 아니라면, 순수하게 상업적 판매로 발생한 대금청구권은 투자가 아님을 규정

## ■ 투자자

- 일방의 국가, 공기업, 국민 또는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영토 내에서 투자하고자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이미 투자한 경우를 의미
  - 이중국적자인 자연인은 지배적이고 유효한 국적국의 국민으로만 간주

## ■ 투자계약

- 중앙정부와 투자자간 서면계약으로서 투자자가 그 계약에 의존하여 투자설립 또는 인수를 한 경우를 말하며, ① 천연 자원의 채굴, 판매 ② 전력, 수도, 통신 등의 공공서비스 공급, ③ 교량, 댐 등 인프라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

## ■ 투자인가

- 외국인투자당국이 투자자에게 부여한 인가권을 의미하나, 한·미 양국 정부는 양국에 이러한 인가제도가 없음을 확인하는 각주 추가(각주17)

## 부속서

### ■ 수용부속서 (부속서11-나)

- 직접수용 및 간접수용의 정의와 간접수용의 판단법리를 규정
  - ※ NAFTA 체결 후, 간접수용 조항을 원용한 사건이 다수 제소됨에 따라 미국은 2004년에 BIT 모델문안에서 '간접수용'의 범위와 판단법리를 명확히 하고 공공복지 목적의 조치는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용부속서'를 채택한 아래 모든 FTA 및 투자협정에 이를 포함시켜 왔음.

## 참고: 미국 수용부속서 주요 내용

- 간접수용의 정의를 소유권 이전이나 명백한 재산권 몰수가 없더라도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국가조치라고 규정
  - 간접수용 해당 여부의 판단은 ① 정부행위의 경제적 영향, ② 정부 행위가 명백하고 합리적인 투자자 기대이익을 침해하는 정도, ③ 정부행위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결정
  - 보건·안전·환경 등 공공복지 목적의 비차별적 조치는 “드문 상황이 아닌 한(except in rare circumstances)”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시
- 한·미 FTA 투자협정은 간접수용의 인정범위가 더욱 제한될 수 있도록, 동 수용부속서상 간접수용 판단법리를 추가적으로 명확히 하고 정당한 공공복지정책 목적의 예시에 부동산 가격안정화정책을 포함.

## ※ 한·미 FTA 수용부속서 주요 내용

-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 공공복리 목적의 조치의 예로 ‘부동산가격안정화정책’을 추가
- 공공복리목적의 조치도 간접수용이 될 수 있는 “드문 상황”을 더욱 제한하여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조치가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 일 것을 예시로 추가
- 간접수용 판단법리에 우리 대법원의 수용 법리상의 원칙인 “특별희생” 법리를 추가하여 “정부조치로 인하여 특정 투자자에게 공익을 위해 수인해야 할 범위를 초과하는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였을 것”을 ‘정부조치의 성격’을 심리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로 규정

## 참고: 부동산가격안정화정책 외의 다른 부동산정책에 대한 간접수용 적용 가능성

-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 정책들은 그 목적상 모두 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에 해당

- ※ 우리 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
  - 공급확대목적정책: 신도시계획, 공공택지지정, 분양가상한제, 원가 공개, 광역재정비사업 등
  - 투기억제정책: 재개발/재건축관련(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소형주택 의무건설, 임대주택의무건설 등), 토지거래허가, 주택거래신고, 투기과열지구지정, 종부세합리화, 양도세강화,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등
  - 금융정책: 주택담보대출, Loan to Value, Debt to Income 등
- 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 이외의 “용도 제한이나 지구 지정” 등도 정당한 복지목적을 위한 비차별적 규제정책이기 때문에 간접수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없음.
- ※ 그린벨트지정, 학교지역 내 유통업소허가 금지(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의 용도 제한이나 지구지정 조치는 부동산 정책이라기보다 시민 건강을 위한 녹지 보존 목적의 보건환경정책 또는 교육환경조성 목적의 정책

#### ■ 조세 부속서 (부속서11-마)

- 세금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음
  - 특히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정책과 원칙에 부합된 조세조치와 비차별적 조세조치는 원칙적으로 수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

#### ■ 송금부속서(단기세이프가드) (부속서11-사)

- 한·미 FTA에서는 국제수지악화 및 외환 위기 등의 심각한 대내외 여건 변화가 있을 시, 우리 정부가 외국환거래를 통제하는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예: 자본거래허가제)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부속서에 규정
  - 동 단기 세이프가드는 협정상 의무에 배치되지 않음.
  - ※ 상세 내용은 금융서비스 분야 내용 참조

## ▣ 계약상 권리 부속서한

- 미국 모델 투자협정(BIT) 문안상 수용부속서는 재산권(property right)과 함께 재산이익(property interest)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는 국내법상 재산이익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동 용어를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영하여 양측은 동 재산이익을 삭제하는 대신, 계약상 권리가 보호된다는 부속서한 작성에 합의
- 동 계약상 권리는 한·미 FTA에 의하여 보호되는 투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며, 국내적으로도 이미 보호되고 있는 재산권에 해당
  - 한·미 FTA 투자의 정의에 투자로 인정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를 이미 포함
    - ※ turnkey(완성품인도), construction(건설), management(경영), production(생산), concession(양허), revenue-sharing(수익배분), and other similar contracts(그 밖의 유사한 계약)
  - 우리 현법재판소는 사법상 채권(right to claim)이 재산권으로 보호된다고 판시하여 우리 국내법상으로도 계약상 권리는 동 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 국경간 서비스 무역

### 협정문의 적용범위 (제12.1조)

- 사행성 게임을 포함한 도박서비스, 금융서비스, 항공운송서비스, 정부조달·정부보조금·정부제공서비스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분야에 적용

※ 도박서비스 관련 예외는 부속서한에 명시

※ 금융서비스 및 정부조달은 별도 chapter에서 논의

### 일반적 의무

- 내국민대우(NT : National Treatment)(제12.2조)

-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

- 최혜국대우(MFN :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제12.3조)

- 동종의 상황에서 제3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

- 시장접근(Market Access, MA) 제한 조치 도입 금지(제12.4조)

- ① 서비스 공급자의 수 제한, ②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제한, ③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 총 산출량의 제한, ④ 고용인의 총 수 제한, ⑤ 사업자의 법적 형태(법인, 합작투자 등)를 제한하는 규제 도입 금지

#### ▣ 현지주재(Local Presence, LP) 의무 부과 금지(제12.5조)

-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국내 사무실 구비 혹은 거주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
  - ☞ 상기 일반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상기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유지 또는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유보목록에 명시
  - ※ 한·미 FTA의 서비스분야는 현재유보(Annex I) 또는 미래유보(Annex II)에 기재되지 않은 분야는 상기 4대 의무가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됨(Negative 방식).

#### 참고: 유보의 종류

- ① 현재유보(Annex I) :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 조치를 나열한 목록으로,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이 적용됨.
  - \*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ratchet mechanism) : 현행 규제를 보다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는 있으나, 일단 자유화된 내용을 뒤로 후퇴하는 방향으로는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  
(예) 외국인투자 현행 제한이 30%일 경우, 그 이하인 20%로 하향 조정하거나, 30%를 40%로 상향조정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40%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② 미래유보(Annex II) :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현존 비합치 조치 또는 전혀 새로운 제한 조치가 채택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한 목록
  - ☞ 그러나, 상기 4대 의무와 무관한 비차별적인 규제(예 : 면허·허가·인가 요건 등)는 「국내규제」조항에 의거, 국내정책결정에 따라 자유로이 유지·신설·개정할 수 있음

## 국내규제 [제12.7조]

- ▣ 서비스공급과 관련 적법한 신청에 대해, 권한있는 당국은 신청인에게 합리적 기간내에 신청과 관련된 결정을 통보할 의무  
(부속서Ⅱ 유보사항은 제외)
- ▣ 자격 요건 및 절차, 기술 표준, 면허 요건 등을 신설하거나 개정할 때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근거하여 제정할 의무

## 투명성 [제12.8조]

- ▣ 서비스 관계 법규의 입법·개정 추진시 합리적인 사전예고 기간을 제공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매커니즘을 설립·유지할 의무

## 자격상호인정 [제12.9조]

- ▣ 특정 국가 또는 비당사국에서 습득한 교육이나 경험, 자격·면허를 인정할 수 있으며, 당사국에게는 이와 같은 상호인정을 위한 기회를 부여할 의무와 자격 상호인정 현황에 대한 정보 교환의 의무를 규정

## 지불 및 송금의 자유 [제12.10조]

- ▣ 국경간 서비스공급에 관한 모든 송금과 지불이 국내외로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허용

※ 송금이나 지불을 금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사유 :

- ①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② 유가증권·선물·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거래 및 취급, ③ 법 집행이나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정보의 기록 또는 보고, ④ 형사범죄, ⑤ 사법 또는 행정절차에서의 명령이나 판결의 준수를 보장

### 혜택의 부인 (Denial of Benefits) (제12.11조)

- ① 협정당사국과 정상적 경제관계(normal economic relations)를 유지하지 않고 있는 제3국인이 소유하는 타당사국 기업, 또는 ② 제3국인이 소유하고 타당사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타당사국 기업(이른바 paper company)에게는 협정상 혜택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함을 규정

### 전문직 서비스 진출 확대를 위한 체계 구축 (부속서12-가)

- 인정(Recognition) 조항 관련 부속 문서(부속서 12-가)를 통해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Professional Services Working Group)”을 구성, 양국이 상호 합의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논의를 추진 하기로 합의
  - 동 작업반은 협정 발효후 2년 이내에 MRA 논의 추진현황을 한·미 FTA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에 보고할 의무
  - 우선 엔지니어링, 건축, 수의(獸醫) 등 3개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협정 발효 1년 이내에 논의를 개시하기로 함
  - 양측 합의시 협의분야 추가 가능

### 유보목록의 작성 범위 (지방정부 조치 문제)

- 미국의 주정부 비합치 조치는 현재유보로 기재되어 자유화 후퇴 방지 메커니즘(Ratchet Mechanism)이 적용됨.

※ 다만, 미국 측의 기술적 어려움을 고려, 모든 주정부 비합치 조치를 나열하는 대신 예시적 목록만 첨부

■ 국내 서비스공급자 또는 투자자의 미국 진출시 특정 주정부의 비합치 조치가 장애요소로 작용할 경우 동 조치의 운영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추가적인 단계의 적절성 판단 등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 채널을 별도 부속서로 규정(부속서 12-다)

※ 동 협의채널은 서비스 분야뿐만 아니라 비서비스 분야(광업·제조업·농수산업)주정부 비합치 조치에도 적용

■ 한편, 우리의 광역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지자체 및 미국의 기초지자체(county 수준)의 현존 비합치 조치에 대해서는 4대 일반적 의무(NT, MFN, MA, LP)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 조치를 상호 허용(제12.6조 비합치 조치)

### 특송서비스[Express Delivery Service] (부속서 12-나, 부속서한)

■ 현행 시장 개방 수준 유지, 우정당국의 독점 지위 남용 금지, 교차지원금지 노력 등 규정

■ 우편당국의 배타적 권리(서신독점, 망접근 제한 등)를 보장하되, 국제특급배달의 경우 민간업체가 취급할 수 있는 범위를 무역관련 서류 등에만 한정하고 있는 것을 국제서류(international document)까지 확대

※ 교차지원 : 독점 우편서비스로부터 도출된 수익을 특급배달서비스에 이익을 부여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것을 의미

■ 이와는 별도로 서신의 정의를 중량, 가격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독점범위를 완화해가고, 우편서비스 규제체계 독립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함.

## 유보목록 개요 (부속서 I, II)

- 서비스 교역확대를 위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적 서비스 등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단계적 개방 추진

※ 우리측 유보 개수 : 총 91개 (현재유보 47개, 미래유보 44개)

※ 미측 유보 개수 : 총 18개 (현재유보 12개, 미래유보 6개)

## 투자 관련 주요 유보

### ■ 공공질서 확보를 위한 외국인 투자 규제 가능

- 공공질서(public order)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NT) 및 이행요건(Performance Requirement, PR) 의무에 반하는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보를 기재하여 이에 대한 규제 권한을 확보

### ■ 정부권한 행사 서비스에 필요한 외국인 투자 제한

- 정부권한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외국인 투자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미래 유보를 기재

※ 정부권한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 : 법집행, 교정서비스 등 정부가 비경쟁적, 비상업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

- 단, 우리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인 투자자 및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동 유보 적용 제외

## 서비스 관련 주요 유보

### ■ 국내 전문직서비스(법무·회계·세무) 단계적 개방

- 미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일부 국제공법 및 미국 법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 회계사 · 세무 사의 경우도 유사하게 개방 (국내법에 대한 자문은 국내 자격증 취득 필요)
  - 법무 서비스는 3단계, 회계 · 세무 서비스는 2단계로 단계적 개방 추진

### 참고: 전문직 서비스 단계적 개방 주요 내용

#### 〈 법률 〉

- 1단계(발효시) : 미국법 및 일부 국제공법 자문 허용, 미국로펌의 사무소 개설 허용 ('09. 9. 26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을 통해 1단계 개방 제도화)
- 2단계(발효후 2년내): 국내 로펌과의 사안별 업무제휴 허용 ('11. 4. 30.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을 통해 2단계 개방 제도화)
- 3단계(발효후 5년내): 국내로펌과 합작사업체 설립 및 동 사업체의 국내변호사 고용 허용

#### 〈 회계 〉

- 1단계(발효시) : 미국법 및 국제 회계법 및 기준에 대한 회계컨설팅 서비스 공급 허용, 미국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국내 사무소 개설 허용
- 2단계(발효후 5년내):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미국 회계사의 출자 허용

#### 〈 세무 〉

- 1단계(발효시) : 미국 또는 국제 세제(세법)에 대한 자문 허용, 미국의 세무사 및 세무법인의 국내 사무소 개설 허용
- 2단계(발효후 5년내): 국내 세무법인에 대한 미국 세무사의 출자 허용

## ▣ 국내 방송서비스의 부분 개방

- 지상파, 위성방송, 케이블사업자(System Operator, SO)의  
인·허가제도·외국인투자 지분 한도·방송쿼터 등에 대해  
현행 규제수준 유지(현재유보)
- 다만, 방송채널사용사업(Program Provider: PP)을 중심으로  
일부 자유화 약속

### 참고: 방송서비스 개방 주요 내용

#### 〈 외국인 투자지분 〉

- PP에 대한 직접투자 한도는 현행 49% 유지
- 국내법인 설립을 통한 PP 투자는 현행 50%를 100%까지 허용  
(발효후 3년내)
  - 단, 보도·종합편성·홈쇼핑 분야는 제외

#### 〈 방송쿼터 〉

- PP 등에 적용되는 국산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방송쿼터”) 완화
  - 애니메이션 부문 : (현행) 35% → (발효시) 30%
  - 영화 부문 : (현행) 25% → (발효시) 20%
- ※ 지상파 방송에 적용되는 방송쿼터는 현행 유지
- 1개국 쿼터 : (현행) 60% → (발효시) 80%
  - ※ 1개국 쿼터 : 특정 국가의 프로그램이 전체 외국산 프로그램 방영 비율의 특정 비율(현재 60%)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
  - ※ 1개국 쿼터 완화는 지상파, 위성방송, 케이블(SO)에도 적용됨

- 아래의 방송 서비스 관련 사항은 미래 유보함.
  - ① 미디어간 교차소유 제한, ② 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최소 비율 설정, ③ 이사회 구성원들의 국적 또는 거주 제한, ④ 국내신규제작 애니메이션 방송 비율 설정, ⑤ 외주제작 콘텐츠 퀴터 부과, ⑥ 국내물에 대한 제작비 요건, ⑦ 주시청시간대(prime time) 퀴터 부과, ⑧ VOD 서비스 공급자의 국내 콘텐츠 보유 비율 설정, ⑨ 특정 분야 외국방송 재송신 서비스 제한·금지 조치

## ▣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지분제한 완화

-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은 현행 49% 유지
  - 국내에 설립한 법인을 통한 간접투자는 100%까지 허용(협정발효 후 2년내)
    - ※ 단, 국내 핵심기간망을 보유한 KT와 SKT는 제외
  - 공익성 심사(public interest test)를 통해 국가 안전보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만 간접투자를 허용

## ▣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및 디지털 콘텐츠

- 현재 규제 체계에 대해 논의중인 통신·방송 융합 관련 가입자 기반 비디오 서비스(subscription-based video services) (예: IPTV)에 대해서는 미래유보
  - ※ 당해 공급자가 소유 또는 통제(임차 포함)하는 전용 전송 용량을 통하여 최종 이용자에게 공급되는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를 말하며,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텔레비전(IPTV)과 양방향 방송을 포함
  - 다만, 추후 이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수준은 현행 기간통신 또는 케이블 방송사업자에 적용되는 수준을 보장하고, 콘텐츠 규제수준도 현행 케이블 방송사업자에 적용되는 방송쿼터 수준을 보장
- 디지털 시청각 서비스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가 개입하여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미래유보)

## 참고: 디지털시청각 서비스

- 인터넷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전송타입에 상관없이 스트리밍 오디오 콘텐츠, 영화 및 기타 비디오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
  - 단, 이 협정 발효일 현재 방송법에 정의된 방송 서비스나 「부속서Ⅱ」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방송 및 통신 서비스」 유보에서 정의된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는 해당 범위에서 제외

## ▣ 문화유산 및 문화재 보존·복구 관련 서비스

- 문화유산 및 문화재의 발굴·평가·매매 등 문화유산 및 문화재의 보존·복원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포괄 유보함(미래유보)

## ▣ 정기간행물의 출판·유통 서비스

- 여론 형성 기능이 있는 신문에 대해서는 포괄 유보함(미래유보)
- 신문을 제외한 여타 정기간행물의 경우 ① 외국정부 및 외국인, ②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기업, ③ 외국인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은 발행할 수 없으며, 미국 본사에서 편집된 원어로 된 정기간행물에 한하여 국내의 지사·지국이 이를 인쇄·배포할 수 있음

## ▣ 교육·의료 및 사회서비스, 공공서비스 포괄 유보

- 공교육(유·초·중·고 교육)·의료 및 사회서비스, 수도·전기·가스·생활환경 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모든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미래유보)
  - 다만, 고등교육(대학교) 및 성인교육 분야의 경우, 현행 관련법령의 수준에서 개방하고, 원격교육의 경우 비학위 성인교육에 한하여 가능함을 확인

- 의료분야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관련 특별법에 규정된 의료기관 설치 등 사항은 포괄유보에서 제외
- 전기·가스에 대한 외국인지분제한 및 산업환경서비스에 대해서도 현행규제수준 유지(현재유보)

### ■ 육상운송 (여객·화물운송)

- 육상 여객운송(시내·시외 노선버스 및 택시) 및 화물운송에 대해서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미래유보)
  - 여객운송의 경우, 이미 국내법령상 대외 개방된 통근·통학버스, 공항버스, 전세 버스, 궤도·삭도(모노레일, 케이블카) 서비스에 대해서는 현재유보로 기재하여 추후 외국인의 사업진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함.

### ■ 부동산 서비스

- 이미 대외 개방되어 있는 부동산 중개·감정평가 분야는 현행 개방 수준을 유지하고, 개발·공급·관리·판매·임대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조치도 채택, 유지할 권리 유보
  - ※ 부동산 중개·감정평가 등 “전문직 분야의 개방”이란, 외국인들도 국내의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국내 자격증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님.

### ■ 해운서비스·어업 시장 개방문제

- 해운의 경우, 미국은 국제해운시장 분야를, 우리 나라는 국제여객운송, 연안해운을 미래유보함.
  - ※ 선박수리업을 포함한 해운 관련 부수 서비스(항만내 선박하역·터미널 운영 등)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시장접근을 허용
- 우리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어업행위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

- 양국은 「수산위원회」를 설치하여 ① EEZ내에서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각 당사국의 정책, ② 관심 사안에 관한 과학적 연구에 대한 협력, ③ 세계 수산 문제에 관한 상호 관심 사항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합의 (부속서22-다)

### 참고 한·미 FTA상 한국의 서비스 유보목록 개요

〈Annex I (현재유보) : 47개〉

번호	구분	유보 분야	대상 의무	내 용
1	S	건설 서비스	LP	사무소 구비 요건 명시
2	S	건설기계 서비스	LP	사무소 구비 요건 명시
3	S	자동차 정비·수리·판매·폐기·검사 및 자동차등록 번호판교부	MA LP	1)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 사업자 수 제한 명시
4	S	담배·주류 도소매	MA LP	1) 사무소 구비 요건 명시 2) 사업자 수 제한 명시
5	I	농축산물	NT	1) 쌀 및 보리 재배·투자 금지 2) 육우 사육에 대한 투자제한 명시(50%)
6	S	안경사	MA LP	1) 유자격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 2) 1개 업소 설치 요건
7	S	도소매 유통	MA LP	1)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 한약재 수급조절 권한 명시
8	S	의약품 소매(약국)	MA LP	1) 유자격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 2) 1개 업소 설치 요건
9	S	철도운송	MA	사업자 수 제한 요건 명시
10	S	도로 여객 운송 (택시·노선 버스 제외)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11	S	해운 서비스 (국제화물운송, 도선업, 선박투자회사)	NT MA LP	1) 도선업의 적용증인 NT 제한 명시 2) 사무실 구비요건 명시 3) 설립형태 제한 명시(상법상 주식회사로 한정)
12	I	항공운송	NT SMBD	1) 외국인 투자 제한 명시(49%) 2) 이사회의 국적제한 명시

※ S:서비스, I:투자, NT:내국민대우, MFN:최혜국대우, PR:이행요건, SMBD: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MA:시장접근, LP:현지주재

번호	구분	유보 분야	대상 의무	내 용
13	S,I	항공운송(특수항공)	NT SMBD LP	1) 외국인 투자 제한 명시(49%) 2) 이사회의 국적제한 명시 3) 사무실 구비요건 명시
14	S	도로운송 서비스 (주차장, 견인 등)	MA LP	1) 사무실 구비요건 명시 2) 사업자 수 제한 명시
15	S	쿠리어 서비스	MA LP	1) 사무실 구비요건 명시 2) 사업자 수 제한 명시
16	S,I	통신 서비스	NT MA LP	1)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투자 제한 명시 2) KT에 대한 투자 제한 명시 3) 국경간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한 명시 4)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17	S	부동산(중개-감평)	LP	사무실 구비요건 명시
18	S	의료기기 소매· 리스·임대·정비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19	S	자동차 임대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0	S,I	해양조사 및 지도제작	NT	국적에 따른 차별적 절차 요건 명시
21	S	법률서비스	MA LP	1) 사업자 자격, 사업 형태 및 사업자 수 제한 명시 2) 사무실 구비요건 명시
22	S	노무사 서비스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3	S	변리사 서비스	MA LP	1)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 사업 형태 및 사업자 수 제한 명시
24	S	회계·감사 서비스	MA LP	1)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 사업 형태 및 사업자 수 제한 명시
25	S	세무사 서비스	MA LP	1)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 사업 형태 및 사업자 수 제한 명시
26	S	통관 서비스	MA LP	1)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 사업 형태 및 사업자 수 제한 명시
27	S	산업보건·안전 서비스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8	S	엔지니어링 서비스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9	S,I	옥외광고물·전광판	PR SMBD LP	1) 사무실 구비 요건 2) 회사 임원 및 프로그램 편성자의 국적 요건 3) 프로그램의 30%를 (국산) 공공 광고 편성 의무

※ S:서비스, I:투자, NT:내국민대우, MFN:최혜국대우, PR:이행요건,  
SMBD: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MA:시장접근, LP:현지주재

번호	구분	유보 분야	대상 의무	내 용
30	S,I	인력 배치·선원 배치 서비스	NT MA LP	1) 사업자 수 제한 명시 2)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3) 한국해양수산원에 의한 선원 교육 독점 규정
31	S	경비 서비스	MA LP	1)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 사업 형태 제한 명시
32	S	간행물 유통	NT	1) 국내 배포 목적의 외국간행물 수입 추천제 명시 2) 필요시 사후 심의 대상이 됨을 명시
33	S	항공기 정비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34	S,I	고등교육	NT MA SMBD	1) 이사회 국적 제한 명시 2) 사업 형태 제한 명시 * 반드시 비영리재단 형태로 사업 영위
35	S,I	성인교육	NT MA	1) 외국인이 영위 가능한 학원의 형태 및 종류 명시 (성인 대상, 학위 수여 금지) 2) 외국인 강사는 반드시 대졸 이상이어야 함
36	S	직업 훈련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37	S	수의 및 수산질병관리사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38	S	환경 서비스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39	S	공연 서비스	NT	외국인 또는 외국인 초청 공연에 대한 사전 추천제 명시
40	S,I	뉴스통신 서비스	NT SMBD MA LP	1) 외국통신사는 국내통신사를 경유 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명시 2) 뉴스통신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25%) 3) 기사 취재 목적의 지사 및 자국 설립만 허용 4) 뉴스통신사 대표자·편집인, 연합 뉴스사·뉴스통신총회의 임원에 적용되는 국적제한 명시
41	I	생물학적 제재 제조	PR	적십자사가 원료물질의 독점공급자임을 명시
42	S,I	정기간행물(신문 제외)	NT SMBD MA LP	1) 정기간행물의 발행인·편집인에 적용 되는 국적 요건 (한국인만 가능) 2) 정기간행물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50%) 3) 미국 본사에서 편집된 원어로 된 정기간행물에 한하여 국내의 지사·지국이 인쇄·배포 가능

\* S:서비스, I:투자, NT:내국민대우, MFN:최혜국대우, PR:이행요건, SMBD: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MA:시장접근, LP:현지주재

번호	구분	유보 분야	대상 의무	내 용
43	S,I	농축산물 유통	NT MA	1) 육류 도매업에 대한 투자 제한 명시(50%) 2) “기축시장”은 농협 등에서만 개설할 수 있음 3) “공용도매시장”은 지자체에서 개설함을 명시 4) 서비스 chapter의 NT, MA 관련 규정은 WTO TRQ 이행을 위한 국내 제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시
44	S,I	방송 서비스	NT PR SMBD MA LP	1) 방송 세부사업별 외국인투자 제한 명시 2) 국산 영화·애니메이션 쿼터 명시 3)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국적요건 명시 4) PP의 간접 투자 제한 완화 약속 명시 5) 1개국 쿼터 관련 제한 완화 약속 명시
45	I	에너지(전력)	NT	1) 한전에 대한 투자 제한 명시(40%) 2) 국내 총발전 설비용량 중 외국인은 30%까지만 소유할 수 있음을 명시 3) 전력의 송·배전에 적용되는 외국인 투자 제한 명시(50%)
46	I	에너지(가스)	NT	가스공사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명시(30%)
47	S,I	스크린 쿼터	PR MA	각 상영관에서 연간 73일 이상

\* S:서비스, I:투자, NT:내국민대우, MFN:최혜국대우, PR:이행요건, SMBD: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MA:시장접근, LP:현지주재

### 〈 Annex II (미래유보) : 44개 〉

번호	구분	유보 분야	대상 의무	내 용
1	I	외국인 투자	NT PR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규제 도입 권한 유보
2	I, S,I	공기업 민영화 및 공공서비스의 민간 이양	NT PR SMBD LP	포괄적 유보 * 다만,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NT 보장
3	I	외국인 투자	NT	포괄적 유보
4	S,I	총포·도검 및 화약류	NT PR SMBD LP	포괄적 유보
5	S,I	취약집단 (장애인, 소수 민족 출신 등 사회적 약자)	NT MFN PR SMBD LP	포괄적 유보
6	S,I	국가소유의 국가전자 /정보시스템	NT LP PR SMBD	포괄적 유보 (* 다만, 금융 분야는 적용 제외)

\* S:서비스, I:투자, NT:내국민대우, MFN:최혜국대우, PR:이행요건, SMBD: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MA:시장접근, LP:현지주재

번호	구분	유보 분야	대상 의무	내 용
7	S,I	사회 서비스	NT MFN LP PR SMBD	포괄적 유보
8	S	MA 포괄유보	MA	UR GATS 양허표를 기초로, 금번 KORUS FTA협상을 통해 신규 양허한 분야를 제외 하고는 MA의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유보
9	S,I	MFN 포괄 유보	MFN	1) KORUS발효 전 협정은 MFN 적용 제외 2) KORUS발효 후 협정에 MFN을 부여 * 단, 항공·해운·수산 분야는 MFN 제공 대상에서 제외
10	S,I	방송 서비스	MFN	위성방송 서비스 관련, MFN 포괄 유보
11	S,I	방송 서비스	MFN	철도운송 서비스 관련, MFN 포괄 유보
12	S,I	환경 서비스 (음용수, 생활폐수, 자연보호 등)	NT PR LP	포괄적 유보 * 단, 법령상 일부 인정되는 私人간 계약은 인정
13	S,I	원자력 에너지	NT PR SMBD LP	포괄적 유보
14	S,I	에너지 (전력)	NT PR SMBD LP	포괄적 유보 * 단, 부속서 1에 규정된 한전에 대한 투자 제한 등은 제외
15	S,I	에너지 (가스)	NT PR SMBD LP	포괄적 유보 * 단, 부속서 1에 규정된 가스공사에 대한 투자 제한 등은 제외
16	S,I	농축산물(인삼, 쌀, 흉삼)	NT PR LP	중개, 도매, 소매 포괄 유보
17	S,I	육상 여객운송(택시 및 정기 여객운송)	NT MFN PR SMBD LP	포괄 유보
18	S,I	육상 화물운송 (쿠리어 제외)	MFN PR SMBD LP	포괄 유보
19	S,I	내륙주운 및 우주운송	NT MFN PR SMBD LP	포괄 유보
20	S,I	쌀의 저장 및 보관	NT	포괄 유보
21	S,I	우정사업 (비독점 영역)	NT	우정사업본부가 누리는 혜택 (공익 활용, 차량 대수 임의증가 권한) 유보

\* S:서비스, I:투자, NT:내국민대우, MFN:최혜국대우, PR:이행요건, SMBD: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MA:시장접근, LP:현지주재

번호	구분	유보 분야	대상 의무	내 용
22	S,I	방송서비스	NT PR SMBD MA LP	<p>다음 사항에 대해 포괄 유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매체간 교차 소유</li> <li>2) 외국인의 제 조항의 강화 권한(PP는 제외)</li> <li>3) 이사의 국적 제한</li> <li>4) 만화총량제</li> <li>5) 외주제작 쿼터 등 다양한 새로운 쿼터 제도의 도입을 위한 권한</li> <li>6) 방송법에 의한 주문형 비디오 (VOD) 서비스 제공 사업에게 국산 프로그램의 의무 편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li> <li>7) 외국방송 재송신에 관한 사항 *재송신 제도를 폐지코자 할 경우 기존의 PP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 주진 필요</li> </ol>
23	S,I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NT PR SMBD MA LP	<p>포괄 유보</p> <p>* 방송으로 분류되건 통신으로 분류 되건, 해당 분야에 적용중인 외국인 투자 제한 수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명시</p>
24	S,I	방송 및 시청각 서비스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MFN PR	포괄 유보
25	S,I	방송 및 시청각 서비스 (국산 영상을 인정 기준)	NT PR	포괄 유보
26	S,I	부동산 서비스 (중개-김평 제외 부동산)	NT PR LP	포괄 유보
27	S,I	지급 불능 및 구조조정 (법정 관리) 서비스	NT SMBD LP	포괄 유보
28	S,I	디지털 오디오· 비디오 서비스	NT MFN PR LP	<p>포괄 유보</p> <p>* 국산 디지털 오디오·비디오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현격히 떨어질 경우, 한국 소비자들이 그러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거부되지 않도록 조치 가능하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오디오·비디오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 도입 가능</p>

\* S:서비스, I:투자, NT:내국민대우, MFN:최혜국대우, PR:이행요건, SMBD: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MA:시장접근, LP:현지주재

번호	구분	유보 분야	대상 의무	내 용
29	S,I	지적재산권 및 관련 지도제작	NT	포괄 유보
30	S,I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등급판정	NT LP	포괄 유보
31	S,I	농업·수렵·임업·어업 부수 서비스	NT PR SMBD LP	포괄 유보 * 인공수정, 유전적 개량, 벼 및 보리의 도정, 미곡 종합 처리장 관련 활동 등
32	I	어업	NT	포괄 유보
33	S,I	신문 발행 및 배포	NT SMBD LP	포괄 유보
34	S,I	교육 서비스 (유아, 초·중등, 고등, 기타)	NT MFN PR SMBD LP	포괄 유보
35	S,I	보건의료 서비스	NT MFN PR SMBD LP	포괄 유보 * 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관련 특별법에 규정된 의료 기관 설치 등의 사항은 예외
36	S,I	영화의 전통(promotion),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	NT MFN PR LP	포괄 유보
37	S,I	문화재 보호	NT PR SMBD LP	포괄 유보
38	I	농어촌 관광	NT	포괄 유보
39	S,I	법률-외국법 자문사	NT SMBD LP	단계별 개방 계획 명시
40	S,I	회계-외국 공인회계사	NT SMBD LP	단계별 개방 계획 명시
41	S,I	세무-외국 세무사	NT SMBD LP	단계별 개방 계획 명시
42	S	전략률자	NT LP	포괄 유보
43	I	정부권한 행사 서비스	NT PR SMBD	포괄 유보
44	S,I	해운-cabotage, 해상 여객 운송	NT MFN PR SMBD LP	포괄 유보

※ S:서비스, I:투자, NT:내국민대우, MFN:최혜국대우, PR:이행요건, SMBD: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MA:시장접근, LP:현지주재

## 금융서비스

### 제13장(금융서비스)의 구조

- ▣ 한·미 FTA상의 금융 분야는 제13장 본문, 제13장 부속서(총 4개) 및 부속서Ⅲ(금융서비스 유보)에 의해 규율
  - 부속서 13-가 : 국경간 무역
  - 부속서 13-나 : 구체적 약속
  - 부속서 13-다 : 금융서비스위원회
  - 부속서 13-라 : 일반인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의 보험 공급

### 제13장 적용범위 (제13.1조)

- ▣ 제13장 적용 대상 금융서비스의 요건(제13.1조제1항)
  - ① 상대국의 금융기관
  - ② 자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상대국 투자자 및 그 투자
  - ③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한 당사국의 조치
- ▣ 제13장 적용 배제 사항(제13.1조제3항)

- 공적퇴직연금제도(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및 법정사회보장제도(예: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
- 중앙은행(예: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통화관련 국가기관(예: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 및 국가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되는 금융기관(예: 수출입은행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서비스
  - ※ 다만, 제13장이 적용 배제되는 경우에도 해당 금융서비스가 상업적 금융기관(보험회사, 은행, 증권회사 등) 등과 경쟁하여 공급하도록 허용된 경우에는 제13장이 적용됨(제13.1조제3항).

- ▣ 또한, 제11장(투자) 및 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이 제13장에 통합되는 한도에서, 제13장 적용범위에 대하여 제11장·제12장상의 일부 의무도 적용
  - 제11장상 의무 중에서는 수용 및 보상, 송금, 투자와 환경, 혜택의 부인, 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의무가 적용되며,
    - ※ 그 중 수용 및 보상·송금·혜택의 부인·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청구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될 수 있음.
  - 제12장상 의무 중에서는 혜택의 부인(제12.11조)과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이 제13.5조에 따른 의무의 대상이 되는 한도에서 지불 및 송금(제12.10조) 의무가 적용

〈 제13장에 통합되어 적용되는 11장·12장상 의무 〉

	11장상 의무	12장상 의무
ISD 대상이 되는 의무	<input type="radio"/> 수용 및 보상 (제11.6조) <input type="radio"/> 송금 (제11.7조) <input type="radio"/> 혜택의 부인 (제11.11조) <input type="radio"/> 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제11.13조)	<input type="radio"/> 없음
ISD 대상이 되지 않는 의무	<input type="radio"/> 투자와 환경 (제11.10조)	<input type="radio"/> 혜택의 부인 (제12.11조) <input type="radio"/> 지불 및 송금 (제12.10조)* <small>* 단, 국경간 금융서비스무역이 제13.5조에 따른 의무 대상이 되는 한도에서만</small>

## 일반적 의무

### ■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NT, 제13.2조)

- 금융기관, 그에 대한 투자,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기관, 그에 대한 투자, 금융서비스 공급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

### ■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 제13.3조)

-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 금융기관, 그에 대한 투자,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금융기관, 그에 대한 투자,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

### ■ 시장접근(Market Access, MA, 제13.4조) 제한 조치 도입 금지

-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투자자에 대하여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기초하여,

ⓐ 다음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조치 금지

- ① 금융기관의 수,
- ② 금융서비스 거래 · 자산의 총액,
- ③ 금융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총 산출량,
- ④ 자연인의 총 수

ⓑ 금융기관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

### ■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Senior Management and Board of Directors, SMBD, 제13.8조)

- ① 고위경영자 또는 그 밖의 핵심 직원의 국적 제한,
- ② 이사회 총원의 절반 이상에 대한 국적·자국 거주 요건의 부과 금지

###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의 허용범위 (제13.5조 및 부속서 13-가)

- ▣ 양국은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의 허용범위를 (1) 국제거래에 관련된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와 (2) 금융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 부수서비스\*\*에 한정하여 개방하기로 합의
  - \* 예) 해상 보험, 상업적 항공 보험, 화물운송 보험 등
  - \*\* 예) 투자자문, 기업구조조정자문, 보험계리, 손해사정 등
- 한·미 FTA에서는 부속서 13-가에 명시된 분야를 제외한 여타 금융 서비스는 국경간 무역 허용 대상에서 제외

#### « 양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개방범위 »

분야		우리나라	미국
보험	(1) 해상·항공·우주보험	○	○
	(2) 수출입적하보험	○	○
	(3) 재보험 및 재재보험	○	○
	(4) 보험 중개·대리	(1)~(3) 관련 보험에 한정	전면 개방
	(5) 보험부수서비스*	○	○
은행 기타 금융	(1) 금융정보 제공	○	○
	(2) 금융정보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	발효시점으로부터 2년 후 개방	즉시 개방
	(3) 은행 기타 금융 부수서비스**	신용평가, 신용조회·조사 서비스 제외	전면 개방

\* 보험자문서비스, 보험계리서비스, 위험평가서비스, 손해사정서비스 등

\*\*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자문, 기업구조조정·전략수립 자문 등

## 신금융서비스 [제13.6조 및 제13장 서한 '신금융서비스']

### ▣ 허용 요건

- 신금융서비스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타방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공급 가능(제13장 서한 신금융서비스)
    - ※ 신금융서비스란 상대국에서는 허용·거래되고 있으나, 아직 자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금융서비스나 금융상품을 의미
- ① 당사국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기관이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을 것
  - ② 추가적 입법행위 없이 신금융서비스가 당사국 국내법상 허용될 것
  - ③ 해당 상대국의 금융기관이 당사국에 상업적으로 주재할 것

### ▣ 적용 배제 사항

-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 또는 당사국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공급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을 모든 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적용 배제

### ▣ 당사국의 권한

- 당사국은 신금융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및 법적 형태 결정 가능
- 신금융서비스의 공급에 대해 건별 인가제도 운용 가능
- 당사국은 신금융서비스에 대하여 건전성 규제 적용 가능

## 금융건전성 제도의 도입 (제13.10조 제1~4항)

- ▣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을 포함한 건전성 목적 조치를 도입 할 당사국의 권한을 확인(제13.10조제1항).
  -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 금융기관 등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 금융제도의 완전성·안전성 보장을 위한 제도
- ▣ 건전성 조치 외에도, 비차별적인 통화·신용·환율 정책, 비차별적 금융 관련 송금 제한 조치, 금융 사기 및 범법 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이 제13장의 예외가 됨을 확인(제13.10조 제2,3,4항)

## 자율규제기구 (제13.12조)

- ▣ 상대국 금융기관이 당사국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관련 협회(자율규제기구)에 가입하거나 심사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당사국의 관련 협회는 자국 또는 제3국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국 금융기관을 불리하게 취급해서는 안 됨.

## 포트폴리오 운용서비스의 역외제공 (부속서 13-나 제1절 제4항)

- ▣ 포트폴리오 운용의 해외위탁 문제는 당사국의 투자펀드 자산을 해외에 있는 자산운용사가 운용할 수 있게 위탁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것임.
  - 우리나라 현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화표시자산의 해외 운용위탁만 허용

- 원화표시자산 해외 운용위탁은 발효일 후 2년내에 재협의하기로 함.

※ 국내에서 설립된 펀드로서 원화로 표시된 자산(국내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원화자산 포트폴리오라고 하고, 외화로 표시된 자산(미국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외화자산 포트폴리오라 함.

## 금융정보의 해외이전 및 소비자 보호

- 금융정보 처리의 해외 위탁을 발효 2년 후부터 허용하도록 규정함 (부속서 13-가 제6항나호, 부속서 13-나 제2절).
- 한편, 금융정보의 해외이전을 허용한다고 하여 금융정보의 생성·저장을 위한 IT설비, 금융 전산망 등 본질적 요소들의 해외이전까지도 허용하는 것은 아님.
- 또, 아래와 같은 일정 조건 하에서 유예기간(한·미 FTA 발효 후 2년 이내)을 두고 개방(제13장 서한 정보의 이전).
  - ① 소비자 민감 정보 보호
  - ② 위탁받은 민감 정보의 재판매를 포함한 재사용 금지
  - ③ 해당 위탁 금융기관의 기록에 접근할 우리 금융 당국의 권한 확보
  - ④ 기술설비 위치 요건 등

## “후선업무(back-office) 기능의 위임”허용 [부속서 13-나 제3절]

- 후선업무 기능이란, 금융기관 본연의 업무인 대출·예금·보증 등의 업무를 제외하고 인력채용·인사·회계 등의 업무를 의미하며, 아래와 같은 업무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 ① 확인서 및 내역서 작성을 포함한 매매 및 거래처리 기능

- ② 데이터처리, 프로그래밍 및 시스템 개발과 같은 기술 관련 기능
  - ③ 조달, 출장 지원, 우편 서비스, 물리적 보안, 사무실 공간 관리 및 비서 서비스를 포함한 행정 서비스
  - ④ 훈련 및 교육을 포함한 인력관리 업무
  - ⑤ 은행정산업무, 예산수립, 보수, 세금, 회계조정, 그리고 고객 및 자기계정을 포함한 회계 기능, 그리고
  - ⑥ 자문 및 소송 전략의 제공을 포함한 법무 기능
- 양국은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자국 지점 또는 현지법인의 일부 후선업무 기능을 본점에 통합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합의

### 행정지도의 투명성 제고 방법 (부속서13-나 제4절)

-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행정지도는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규정  
※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에 의한 행정지도도 가능
- 구두 행정지도가 있은 후 이해관계자가 이를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국가는 이에 응해야 함.
- 또한, 사후적으로 행정지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시를 허용하여야 함.

###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제고 (부속서 13-나 제6절)

- 한·미 FTA에서 양국은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가 제공하는 보험 판매와 관련된 지급능력 사안 등에 대해,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한다는데 합의  
※ 한·미 FTA상 합의내용과는 별개로, 농협 보험 부문의 경우 2012년

3월부터 여타 보험회사와 동일하게 보험업법 적용 및 금융위 감독을 받음.

### 양국 금융감독기관 사이의 협력관계 구축 (부속서13-나 제7절)

- ▣ 양국은 금융감독기관 사이의 MOU 체결 등을 통해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

※ 참고로, 2010년 6월에 우리 금융위원회와 미국 금융당국(FRB, OCC, FDIC, OTS)간 MOU를 체결하였음.

### 금융정부조달시장의 예외적 개방 (제13.1조제4항, 부속서 13-나 제8절)

※ 금융정부조달이란 정부의 금융서비스 수요를 의미하는 바, 그 예로는 ① 국민연기금의 운용 ② 국고계좌 개설 등이 있음.

- ▣ 양국은 금융정부조달의 경우 아래 3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

- 국채 관련 금융서비스(발행, 매수, 분배 등)
  - 국고계좌 개설 관련 금융서비스
  - 미국의 경우 연방퇴직저축투자위원회가 보유하는 연방정부 직원 자산, 우리의 경우 한국투자공사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서비스
- ※ 상기 3개 분야는 현행 법령하에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하여 비차별적인 참여를 이미 허용하고 있음.

### 우체국보험 건전성 강화 (제13장 서한 '일반인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의 보험 공급')

- ▣ 양국은 우체국보험이 정부에서 시행 중인 사업이라는 특수성을

### 인정하면서 아래 사항에 합의

-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우체국 보험의 특수성에 따른 세금면제, 정부의 지급보장 등은 현행 제도 유지(제1항)
- 금융위원회의 우체국보험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제2, 3, 8항)
  - 금융위는 ①우체국보험 관련 위원회 위원의 절반을 추천하고, ②우정사업본부가 제출한 결산서류·기초서류 등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해 의견·권고를 제시
  - 우정사업본부는 금융위에 자료를 제출하고 금융위가 제시한 의견에 따라 조치
  - 한·미 FTA 발효 2년간 유예기간 설정
- 우정사업본부가 보험서비스 관련 상품의 특정적 광고를 할 경우, 민간 보험회사와 동일한 요건 적용(제4, 8항)
  - 한·미 FTA 발효 2년간 유예기간 설정
- 우체국보험에서 취급하지 않는 변액보험, 퇴직연금보험, 손해보험 등 새로운 상품영역 진입은 제한(제5항)하되, 현재 우체국보험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개선은 허용
- 우체국보험 가입한도액을 증액하고자 할 경우 물가상승분 반영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하며, 사전에 금융위와 협의 필요

### 국책금융기관의 취급

제13장 서한 '일정 정부 기관', 부속서Ⅲ 대한민국 유보목록 12번째 유보]

- 국책금융기관을 협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시키거나 그에 대한 현재의 특별 대우를 유보목록에 기재

※ 대상기관(총13개) :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KR&C(前 정리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前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 한국주택금융공사

- 상기기관중 한·미 FTA 적용이 배제되는 국책금융기관(총 8개)
  -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KR&C(前 정리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前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 ※ 예를 들어 수출입은행의 경우 ① 수출입금융채권의 독점적 발행 권한(수출입은행법 제20조제1항), ② 수출입금융채권에 대한 정부 보증(동법 동조제2항), ③ 손실금에 대한 정부 보전(동법 제37조) 등의 혜택을 계속 받게 됨.
- 상기기관중 한·미 FTA는 적용되나 내국민대우에 대해 유보하여 특별대우를 부여할 수 있는 국책금융기관(총 5개)
  -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 한국주택금융공사

### 단기 세이프가드 (부속서 11-사)

- ▣ 우리 “외국환거래법” 제6조와 ‘단기 세이프가드’ 도입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다음의 조건들에 대해 합의

- ① 발동기간이 1년 이내일 것
  - ※ 단, 필요시 미측과 협의 거쳐 연장 가능
- ② 몰수적이지(confiscatory) 않을 것
- ③ 이중 또는 다중 환율 금지
- ④ 외환규제로 해외로 나가지 못하고 국내에 묶인 자산의 운용에 대한 제약 금지
- ⑤ 불필요한 경제적 손해를 피해야 하며, 경제여건 개선시 점진적 해제

⑥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의무

⑦ 신속하게 공표

- 외국인직접투자와 연계된 지급·송급에는 단기 세이프가드 미적용

※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이프가드는 우리 외국환거래법에서도 불허

- 경상거래의 경우, IMF상 절차를 따르고 미국과 사전 협의하여 단기 세이프가드 발동이 가능하도록 규정

## 금융서비스 관련 주요 유보

※ 금융서비스 관련 유보내용은 현행 관련 법령내용 수준으로 반영

### ■ WTO 유보 내용 확인

- 양국은 우리나라가 WTO에서 유보한 내용은 한·미 FTA상 허용되는 건전성제도 등에 해당하여 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함(부록III-가).

### ■ 방카슈랑스 판매방법의 제한 유보

- 은행의 방카슈랑스 영업 관련, 영업직원의 수, 동일 보험회사 상품의 판매비율 제한 등을 유보함(부속서III 대한민국 유보목록 제1절 1번째 유보).

### ■ 국내 은행 지분소유 제한

- 국제적으로 신용력있는 은행만 10% 이상의 국내 은행 지분 취득이 가능하도록 유보함(부속서III 대한민국 유보목록 제1절 3번째 유보).

▣ 한국거래소 · 증권예탁원을 상장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 지분 제한

- 미래에 우리나라 한국거래소 또는 증권예탁원을 상장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지분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유보함(부속서 III 대한민국 유보목록 제2절 3번째 유보).

**참고 한 · 미 FTA상 한국의 금융서비스 유보목록 개요**

〈 Annex III (금융서비스 유보) : 18개 〉

번호	성격	유보 분야	대상 의무	내 용
1	현재	보험	MA	1) 상업은행, 상호저축은행, 증권회사의 2인 이하의 직원만이 같은 시간, 장소에서 보험을 판매할 수 있음. 2) 보험판매 창구 수 등 보험상품의 판매방식을 제한하고, 단일 보험업자에 의한 보험상품의 은행판매 비율에 대해 제한
2	현재	보험	CBT	“강제적인” 보험 서비스를 구매할 법적 의무 종족 여부를 결정할 때 외국에서 공급받은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음. * 해당 보험이 국내에서 구매될 수 없을 경우, 해외 보험도 고려 가능
3	현재	은행 · 기타	NT	1) 외국금융기관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인 경우에만 한국의 상업은행 · 은행지주회사 지분 10% 초과 보유 가능 2) – 금융위는 소유권 승인여부에 대한 추가적 승인 기준 적용 – 자연인은 지분 10% 초과 보유 불가 – 주요사업이 금융서비스가 아닌 비금융기관은 지분 4% 초과 보유 불가. 단, 의결권 행사 능력 포기시 10%까지 가능
4	현재	은행 · 기타	NT	외국은행의 지점 설치에 대한 개별 인가 요구조건 명시 * 단, 자회사인 은행의 지점은 인가 불요
5	현재	은행 · 기타	MA	한국증권선물거래소만이 한국에서 증권 · 선물시장 운용 가능

※ NT:내국민대우, MFN:최혜국대우, MA:시장접근, CBT:국경간 무역, SMBD: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번호	성격	유보 분야	대상 의무	내 용
6	현재	은행 · 기타	MA	증권예탁결제원만이 한국에서 발행된 상장 · 비상장 증권의 예탁자 또는 증권회사 계정 간 증권 이전 매개체로서 기능 가능
7	현재	은행 · 기타	MA	한국증권선물거래소 · 증권예탁결제원만이 증권 · 파생상품에 대하여 청산 · 결제 업무 수행 가능
8	현재	은행 · 기타	CBT	한국 거주자 · 금융기관 · 외국기관지점은 한국에서 인가를 취득한 선물회사를 통해서만 역외 선물, 옵션, 특정 선도계약 체결 가능
9	현재	은행 · 기타	NT	1) 외국은행 · 증권회사 지점의 영업기금 유지 의무 2) 외국 지점은 그 본점과 별도의 법적 실체로 간주
10	현재	은행 · 기타	MA	외국금융기관 지점은 다음 업무 수행 불가 1)신용협동조합 2)상호저축은행 3)여신전문금융회사 4)종합금융회사 5)외화 및 원화자금중개회사 6)신용정보회사 7)일반펀드사무관리회사 8)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9)채권평가회사
11	현재	은행 · 기타	MA	국내에서 일정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금융 기관은 자회사로만 설립 가능
12	현재	은행 · 기타	NT	정부지원기관(산은, 기은, 주택금융공사, 농협, 수협)에 대해 채권보증, 손실 보전, 조세 면제 등 특별대우 부여 가능
13	현재	은행 · 기타	SMBD	주택금융공사, 농협, 수협의 최고 및 차상급 경영책임자 및 이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한국 국민이어야 함.
14	현재	은행 · 기타	NT	주택청약저축계정과 같은 주택계정 보유 금융기관 수 제한 가능
15	현재	은행 · 기타	MA	원화 현물환거래의 은행간 중개업은 기존 두 개의 중개업자로 제한
16	미래	보험	CBT	“강제적인” 제3자 보험서비스 구매 의무 충족 여부 결정시 외국에서 공급된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을 권리 유보 * 해당 보험이 국내에서 구매될 수 없을 경우, 해외 보험도 고려 가능
17	미래	은행 · 기타	NT	정부 소유 · 지배 기관을 민영화 할 경우, 계속적 보증 및 한시적 추가 보증을 채택할 포괄적 권리 유보
18	미래	은행 · 기타	NT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권을 제한할 권리 유보

\* NT:내국민대우, MFN:최혜국대우, MA:시장접근, CBT:국경간 무역, SMBD: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 통 신

### 통신서비스협정문의 적용범위 (제14.1조)

- 통신 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되며, 아래 사항을 포함
- 공중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조치, 공중통신 서비스 공급자의 의무에 관한 조치, 공중통신망 또는 서비스에 관한 그 밖의 조치 및 부가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조치 (방송 또는 케이블 배분 등에는 일반적으로 적용안됨)

###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제14.2조)

- 상대국 사업자가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에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 공공서비스의 책임성 확보 또는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integrity)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국 사업자의 접근 및 이용에 대해 일정한 조건 부여 가능
  - ※ 통신망 및 서비스와의 상호접속(interconnection)을 위한 구체적 기술 요건, 통신서비스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를 위한 요건 및 단말기 등 장비의 공중통신망 부착과 관련된 기술요건 등을 예시적으로 규정

## 공중통신사업자의 일반 의무 (제14.3조)

- ▣ 공중통신사업자가 상대국의 사업자에게 상호접속, 번호이동, 동등다이얼(dialing parity)을 비차별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 부과
- 단, 동등다이얼에 대해서는 미측 무선분야 및 우리측 국제전화 서비스 분야를 각각 적용 배제
  - ※ 상호접속(interconnection) : 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간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통신망을 연결하는 것
  - ※ 동등다이얼: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사업자와 접속시 추가 코드나 번호 등을 입력하지 않도록 동일한 자리수의 식별번호 부여 (예)국제전화 3자리 (001, 002 등)
  - ※ 번호이동(number portability) :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가입회사를 변경 해도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현재 시내전화와 이동전화에 대해 시행 중)

## 지배적 공중통신사업자의 의무 (제14.4~14.11조)

- ▣ 통신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배적 사업자에게 일정한 의무 사항을 부과
  - ※ 지배적 사업자 : 필수설비에 대한 통제력 또는 시장 지위 등을 이용하여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신서비스 공급자
- 구체적으로 협정문상 보장하고 있는 지배적 사업자 관련 주요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대우) 상대국의 공중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신·자회사·계열회사 등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 (경쟁보장장치) 교차보조 행위 등 반경쟁적인 관행에 관여하거나 지속하는 것을 금지

- ※ 교차보조(cross-subsidization) :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독점력을 통해 획득한 초과이윤을 경쟁적인 다른 통신시장에 종사하는 자회사·계열사 등에 보조하는 행위
- (재판매) 재판매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 부과 금지
  - ※ 재판매(resale) : 다른 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 설비 또는 통신서비스를 도매로 구입하여 일반이용자에게 소매로 제공하는 것
- (망 요소 세분화) 공중통신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망 요소에 대한 접근을 세분화에 기초하여,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제의하도록 지배적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통신규제 기관에 부여
- (상호접속) 상대국 공중통신서비스 공급자의 설비 및 장비를 위한 상호접속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건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비차별적으로 제공
  - ※ 지배적 사업자와 상호접속을 위해서는 표준상호접속협정 또는 발효 중인 상호접속협정의 조건을 선택하여 새롭게 상호접속협상을 할 수 있도록 기회 보장
- (전용회선 서비스)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과 요율로 전용회선 서비스 제공
  - ※ 전용회선(leased circuits) : 공중통신사업자와의 임차 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두지점간 또는 다지점간을 직통으로 연결하여 독점 사용하는 전기통신회선
- (설비 병설) 상호접속 또는 세분화된 망 요소에 대한 접근에 필요한 장비의 물리적 설비 병설을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제공
- (전주·관로·도관 및 선로설치권에 대한 접근) 상대국의 사업자에게 전주·관로·도관의 이용 등을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 및 요율로 제공

- ※ 전주(Poles) : 전신, 전화, 전등 등의 전선을 지지하는 기둥
- ※ 관로(ducts) 및 도관(conduits) : 지하에 매설한 전화용 케이블을 한데 모아서 수용하는 강관 및 지하터널

### 부가서비스의 공급조건 [제14.13조]

#### ▣ 부가서비스 공급자에게 다음 의무 부과 금지

- 대중에 대한 일반적 공급, 서비스 요율의 비용상 정당화, 서비스 요율표 제출, 자사 망의 특정 고객과 연결, 공중통신 망 이외의 다른 망에 연결하기 위해 통신규제기관의 특정 표준 또는 기술 규정 준수
- 단, 반경쟁적 부가서비스 공급자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또는 달리 경쟁을 촉진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서는 상기 조치 가능

### 보편적 서비스 [제14.15조]

#### ▣ 자국의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중립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자국이 정의한 종류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것 보다 더 부담을 주지 않도록 보장

###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제14.17조]

- ▣ 주파수·번호·선로설치권 등 희소 통신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 방식으로 운영
-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을 공개
  - ※ 미국 주파수 분배는 연방통신위원회 웹사이트 (<http://reboot.fcc.gov/reform/systems/spectrum-dashboard>)에서 확인 가능

- 공중통신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전파 및 주파수 관리 조치를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리 보유
-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전파사용과 통신서비스 공급자간 경쟁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비정부 통신서비스용 전파를 분배하고 할당하도록 노력

### 통신 분쟁의 해결 [제14.19조]

- 당사국의 조치에 대해 통신 규제 기관 등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보장
- 지배적 사업자에게 상호접속을 요청한 상대국 공중 통신 사업자의 상호접속의 조건·요율 관련 통신 규제 기관의 심사 청구 가능
- 통신 규제 기관의 결정에 의해 법익을 침해당한 기업의 통신 규제 기관의 재검토 요청 가능
- 통신 규제 기관의 결정에 의해 법익을 침해당한 기업이 사법당국에 대한 재심 요청 가능

#### 참고: 미측 관련 국내법 규정

- 수수료 미지급에 따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인허가 취소 조치에 대해 당사자가 FCC에 이유 제시 가능 (47 USC 159(c) )
- 미국 통신법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FCC 또는 연방법원에 이의 신청 가능(47 USC 206~208)
- 상호접속 관련 협상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을 조정해줄 것을 협상당사자가 주(州)위원회에 요청 가능 (47 USC 252)
- FCC의 조치에 대한 재검토 요청, 법원의 재심 요구 등 가능(47 USC 401~408)

## 기술 및 표준과 관련된 조치 (기술선택의 자율성) [제14.21조]

-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기술 표준정책 추진 권한을 인정
- 무선분야의 공공정책목적은 주파수의 효과적·효율적 이용, 국제표준에 근거한 글로벌로밍 보장, 범집행,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보호 등으로 명시
- 다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관련 사업자들에게 다양한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절차적 투명성 및 공정성을 보장

## 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 일반적으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거래(협정문상 전자상거래 정의 규정 없음.)

###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 (제15.3조제1항)

-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의 수입 · 수출에 대하여 관세 · 수수료 · 기타 부과금을 면제하는 관행을 유지

※ 전자적으로 전송(온라인 거래)되는 디지털제품은 실질적으로 관세 부과가 불가능하며, 국제적으로 무관세 관행이 유지되고 있고 우리도 무관세 적용  
- 1998년 WTO각료회의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WTO 각료선언”을 채택하여 온라인 거래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후 이러한 결정의 효력을 연장해 오고 있음.

#### 참고: 디지털 제품

- 전달매체에 고정되는지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되고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 으로 생산된 컴퓨터 프로그램 · 문자열 · 동영상 · 이미지 · 녹음물 및 그 밖의 제품(협정 제15.9조)
  - 우리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디지털콘텐츠’ 또는 대외무역법상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정의와 유사

- 전달매체(예: CD 등)에 담아 오프라인으로 전달되는 디지털제품 중 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도 무관세 적용

###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및 적용 예외 (제15.3조제2항~제5항)

- (내국민대우) 창작·제작·발행·저장·전송·계약·발주 또는 상업적 조건으로 최초로 이용가능하게 된 것이 상대국 영역이거나 상대국 국민에 의해서라는 것을 근거로한 차별 또는 자국의 디지털제품을 달리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불리한 대우 금지
- (최혜국대우) 상대국 영역에서 또는 상대국 국민에 의해 창작·제작·발행·계약·발주되거나 상업적 조건으로 최초로 이용 가능하게 된 디지털제품에 대해 비당사국 영역 또는 비당사국민의 동종 디지털제품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 금지
- 협정 제11장(투자), 제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 제13장(금융서비스)에 따라 채택·유지된 조치에는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적용 배제

###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제15.4조)

- 전자거래 당사자는 자율적으로 전자인증수단 선택 가능
- 다만, 전자금융거래, 전자처방전과 같은 고도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의 거래에 대해서는 자국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전자인증수단 요구 가능

## 경쟁 관련 사안

### 경쟁법 집행 (제16.1조)

- ▣ 경쟁분야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양국의 경쟁법 집행 관련 절차 및 협력에 대한 내용을 규정
- 경쟁법 집행시 외국인에 대해서도 내국민대우 부여
- 행정 심리 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및 증거제출권, 상대방 증거에 대한 반론권, 증인 등에 대한 교차신문권 보장 및 행정 심리에 대한 절차 규칙을 공표
- 경쟁법 위반에 대한 제재 또는 구제에 대한 재심 기회 부여
- 경쟁 당국간 상호지원 · 통보 · 협의 및 정보교환 등을 통해 협력

### 동의의결제 (제16.1조 제5항)

- ▣ 경쟁분야에서 경쟁법 집행당국이 경쟁법 집행 조치 대상자와 상호 합의하여 행정적 또는 민사적 집행 조치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동 당국에 권한을 부여(동 합의는 사법적 승인 대상이 될 수 있음)

## 지정 독점(제16.2조) 및 공기업(제16.3조)

### ▣ 지정 독점의 의무

- ① 지정독점이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 관련 정부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경우 협정상의 의무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행동
  - ②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나 판매에 있어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행동(단, 아래 ③ 및 ④의 의무에 합치하는 한도에서 독점과 관련된 지정 조건(terms of designation)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
  - ③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나 판매에 있어 적용대상투자, 상대국의 상품, 상대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비차별적 대우 제공
  - ④ 비독점 시장에서 적용대상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관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데 자신의 독점적 지위 이용 금지
- ※ 지정독점(designated monopoly) : 당사국 영역의 관련 시장에서 정부에 의해 상품·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자 또는 구매자로 지정된 기관 (자연독점은 해당되지 않음.)

### ▣ 공기업의 의무

- ① 공기업에 위임된 정부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협정상의 의무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행동
  - ②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시 적용대상투자에 대하여 비차별적 대우 부여
- ※ 공기업(state enterprise) :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소유지분 (ownership interest)을 통하여 통제하는 기관

### ▣ 협정 발효 이후에도 지정독점·공기업을 설립하고 기존의 지정 독점·공기업 유지 가능

## 국경간 소비자 보호 (제16.6조)

- ▣ 소비자 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양국 담당기관간 소비자 관련 아래 사항을 포함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 ① 소비자 보호 정책에 관한 협의와 자국의 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운영과 관련된 정보 교환
  - ② 소비자에 대한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적 관행을 적발하고 이를 금지하기 위한 협력 강화
  - ③ 국경간 차원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소비자 보호법 위반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협의
  - ④ “국경간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적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OECD 가이드라인”(2003)의 이행 지지

## 기타 조항

- ▣ 가격차별 (제16.4조)
  - 가격차별이 수요 · 공급조건의 고려 등 통상의 상업적 고려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독점 또는 공기업이 별개 또는 동일 시장 내에서 가격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도록 규정
- ▣ 투명성 (제16.5조)
  - 자국 경쟁 집행 정책에 있어 투명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타방 당사국 요청이 있는 경우, ① 자국의 경쟁법 집행 활동, ② 공기업 및 정부 또는 민간소유의 지정독점, ③ 자국 경쟁법에 대한 예외 및 면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
  - 경쟁법 위반을 판단하는 모든 최종 행정결정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결정의 근거가 된 관련사실, 논거 및 법률분석을 기재하도록 규정

- 당사국의 결정과 그 결정을 이행하는 법령을 공포하고, 공포가 불가능한 경우 이해관계자 및 상대국이 알 수 있도록 공지(영업비밀정보, 기타 자국법에 따라 대중공개로부터 보호되는 정보는 생략 가능)

■ 협의(제16.7조)

-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 개시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상대국에 의해 제기된 사항을 호의적으로 충분히 고려

■ 분쟁해결(제16.8조)

- 제16.1조(경쟁법과 반경쟁적 영업행위), 제16.6조(국경간 소비자 보호), 제16.7조(협의)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도 협정상의 분쟁해결 절차 이용 불가

## 정부조달

### 정부조달챕터 적용범위 (제17.2조 및 부속서 17-가)

- ▣ (양허기관 및 양허하한선) 한·미 FTA 정부조달 챕터는 양허표에 명시된 각 당사국 중앙정부기관에 적용되며, 지방정부 및 공기업은 정부조달 양허 대상에서 제외
- 상품·서비스 조달 양허하한선(Threshold : 개방 하한금액)
  - 미국 : 10만불 (WTO 정부조달협정은 약 20만불)
  - 한국 : 1억원 (WTO 정부조달협정은 약 2억원)
- 건설서비스(CPC Code 51) 조달 양허하한선
  - 500만 SDR
    - ※ 원화 환산액: 95억원 (기획재정부고시 제2011-22호, 적용 환율 : 1890.16원/SDR), 달러 환산액: 777.7만불 (미 연방조달규정 제25.402조, 2년마다 수정 공고)
    - ※ 미국측 양허하한선은 FAR 25.402에 반영
- ▣ (조달 수단에 민자사업 등 포함) 구매, 리스, 임차 또는 할부구매,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build-operate-transfer contract) 및 공공사업 실시협약(public works concession contract)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적 수단에 의한 정부조달을 포함

- ▣ (적용 배제) 비계약적 합의 또는 당사국이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 개발원조를 포함하여 국제지원을 제공하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수행되는 조달 등은 한·미 FTA 정부조달 챕터 적용 배제

### 학교급식 예외조항 [부속서 17-가 제5절]

- ▣ 학교급식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하에 구매하는 학교급식용 식자재의 경우, 한·미 FTA 정부조달 조항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 부속서 17-가 대한민국 양허표 제1항: “이 장은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한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This chapter does not apply to procurement in furtherance of human feeding programmes).”
  - ※ 개정 WTO GPA(2011.12.15 타결) 우리나라 양허표 수정안에도 학교 급식 예외조항 신설(This Chapter does not apply to procurement in furtherance of human feeding programmes.)

### WTO 정부조달협정 준용 [제17.3조]

- ▣ 계약대상가액산정(제2조), 입찰절차(제7조), 공급자자격심사(제8조) 등 현행 정부조달협정의 조달절차를 적용하도록 규정
- ▣ 정부조달협정이 개정되거나 다른 협정으로 대체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협의 후에 정부조달 챕터 개정 가능
  - ※ 개정 WTO 정부조달협정 발효시, 현행 제17.3조제1항의 규정을 개정 협정의 적절한 규정으로 대체 필요

### 공급자의 과거실적 요구 금지 [제17.5조제2항]

- ▣ 공급자의 참가조건 총족 여부 평가시, 조달기관은 공급자의 조달

참가 또는 계약에 낙찰되기 위한 조건으로 과거실적(해당 조달기관과의 낙찰 사례 또는 당사국 내 사전 실적) 요구 금지

- WTO 개정 GPA(제8조제2항(c)호)는 입찰 참여시에만 과거 조달 실적을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미 FTA는 입찰 뿐만 아니라 낙찰시에도 과거실적을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

#### 참고: 미측 국내법 관련 규정

- 미측은 과거실적 요구 금지 관련 내용을 한미 FTA 정부조달 이행을 위한 USTR 공고 및 연방조달규정(77 FR 45)에 포함 (2012.3.2 및 2012.3.7 각각 공포)
  - 미측의 연방조달규정(FAR: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에 의하면 입찰기업이 과거실적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해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하지 않음(FAR 15.305 (a)(2)(iv))\*  
 \* In the case of an offeror without a record of relevant past performance or for whom information on past performance is not available, the offeror may not be evaluated favorably or unfavorably on past performance.
  - 자국내 과거실적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하는 외국업체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탈락사유를 설명 받을(FAR 15.506, debriefing) 수 있고, 불복청구절차(FAR 33, protest) 이용 가능
    - 불복청구는 발주기관이나 발주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등에 제기 가능

#### 정부조달 작업반 설립 [제17.10조]

-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 정부조달 작업반을 설립함.
- 상호합의 또는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회의 개최

- 정보기술 관련 문제를 포함한 당사국이 제안한 정부조달에 관한 문제 검토
- 각 당사국의 정부조달 기회에 관한 정보 교환

## 기타 사항

- 전자적 수단의 사용 (제17.4조) 및 공고 (제17.6조)
  - 전자적 수단에 의해 적용대상 조달을 수행시, 조달기관은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하고 다른 정보기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와 상호운영이 가능한 정보기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사용을 보장해야함.
  - 각 협정 적용대상 조달에 대하여 정부조달협정 제9조(예정된 조달에 대한 참가 초청)에 따라 적절한 전자적 매체로 조달공고를 공표해야 함.
    - ※ 우리 관련 사이트 : <http://www.g2b.go.kr>
    - 미측 관련 사이트 : <http://www.fedbizzopps.gov>
- 기술규격의 입안·채택 및 적용 (제17.7조)
  - 조달기관은 천연자원 보전과 환경보호를 위해서, 또는 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과 근로조건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해서 기술 규격을 작성, 채택, 또는 적용할 수 있음.
- 기간 (제17.8조)
  - 조달기관은 조달의 성격과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공급자가 입찰참가신청서와 적합한 입찰서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함.
  - 선택입찰방식인 경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마감일은 조달공고

공표일로부터 원칙적으로 25일 미만이 되지 않도록 정하여야 함.

- 단, 긴급사태가 조달기관에 의해 입증된 경우에는 10일 미만이 되지 않도록 공고기간 단축이 가능함.
- 입찰서 제출마감일은 아래 일자로부터 4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공개입찰의 경우 조달공고 공표일
  - 선택입찰의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초청될 것이라고 기관이 통지하는 일자
- 입찰서 제출마감일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
  - ① 주요 내용을 담은 계획된 조달이 WTO 정부조달협정 제9조제7항에 따라 공표되었거나, 반복적인 성격의 조달이거나, 조달기관이 긴급사태를 입증하는 경우, 10일 미만이 되지 않도록 단축 가능
  - ②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조달공고의 공표, △입찰 관련 모든 서류의 전자적 수단 이용, △입찰서의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접수에 대하여 각각 5일씩 단축 가능
  - ③ 상업적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조달공고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동시에 전자적 수단으로 공표하는 경우, 13일 미만이 되지 않도록 단축 가능
    - 입찰서도 전자적 수단으로 접수하는 경우, 10일 미만이 되지 않도록 단축 가능

## 참고 한·미 정부조달 양허수준 비교

구 분	한 국	미 국
양허기관	중앙정부기관 51개	연방정부기관 79개
양허금액	상품·서비스: 1억원 건설서비스: 500만SDR	상품·서비스: 10만불 건설서비스: 500만SDR
양허금액	상품·서비스: 1억원 건설서비스: 500만SDR	상품·서비스: 10만불 건설서비스: 500만SDR
적용 대상	물품	양허기관이 조달하는 양허금액 이상의 모든 물품
	용역	WTO 정부조달협정 한국 양허표에서 개방된 서비스
	건설 서비스	CPC 51 건설서비스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급식 예외조항 규정</li> <li>‘국가계약법령’ 및 ‘사회기 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중소기업 예외조항 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급식 예외조항 규정</li> <li>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예외조항 규정</li> </ul>

## 지적재산권

### 저작권 보호기간 [제18.4조제4항]

-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음반 및 실연) 보호기간 연장 : 사후(생존기간 포함) 또는 발행(또는 창작) 이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 보호기간 연장 의무는 협정 발효 후 2년간 유예
- ▣ 동일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한-EU FTA 및 한-페루 FTA의 선발효로 인해 저작권은 2013.7.1., 저작인접권(음반 및 실연)은 2013.8.1부터 보호기간 연장 적용
  - 저작권의 경우, 한-EU FTA의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시 반영
    - 2년의 유예기간 설정(시행일 2013.7.1)  
※ 한-EU FTA도 한-미 FTA와 동일하게 저작권에 대해 보호기간 연장 및 2년의 유예기간 규정
  - 음반 및 실연의 경우, 한-미 FTA의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시 반영
    - 기발효된 한-페루 FTA에 따라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  
(개정 저작권법 부칙 제1조)  
※ 한-페루 FTA도 한-미 FTA와 동일하게 저작권, 음반 및 실연에 대해 보호기간 연장 및 2년의 유예기간 규정

## 일시적 복제 [제18.4조제1항]

- ▣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 복제 포함
- 복제의 범주에 영구적 복제 뿐 아니라 일시적 복제도 명시적으로 규정
  - ※ 일시적 복제(Temporary reproduction) :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디지털화된 저작물 등을 컴퓨터를 통하여 이용할 때 RAM(전원을 끄면 모든 데이터가 지워지는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복제 등을 지칭
- 다만,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이용(인터넷 검색·웹서핑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의 경우, 권리자의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 설정 가능

## 기술적 보호조치 [제18.4조제7항]

- ▣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의 권리 행사와 관련한 아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민·형사 구제절차 제공
-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행위
  - ※ 기술적 보호조치(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조치로, 이용통제와 접근통제로 구분
    - ① 이용통제(copy/use control)적 기술조치 : 저작물 등에의 접근은 제한없이 허용되지만, 저작물을 복제·전송하는 등의 이용행위를 통제 (예) 인터넷상에서 저작물에는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지만 마우스의 오른쪽 기능을 막아 복제를 못하게 한 것
    - ② 접근통제(access control)적 기술조치 : 저작물 등에 접근하여 사람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보고, 듣고, 읽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것 (예) 암호를 넣어 이를 해제하여야 음악을 들을 수 있거나 또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 조치

- 이용통제 및 접근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거나 무력화시키는 장치 · 제품 · 구성품을 거래(제조 · 수입 · 배포 등)하거나 그런 서비스를 제공
- 7가지 구체적 예외 및 입법 · 행정적 절차에 따른 한시적 예외 설정 가능
- 협정문에 규정된 7가지 예외
  - ①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성 획득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합법적인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에 대한 선의의 비침해적 역분석 행위
    - ※ 역분석(Reverse Engineering) : 기술정보나 소스코드 등을 알아내기 위해 구입한 컴퓨터 하드웨어를 분해 또는 분석
  - ② 정보의 스크램블 및 디스크램블을 위한 기술의 흡결 · 취약성 확인 및 분석 연구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필요한 한도 내의 선의의 비침해 행위
  - ③ 미성년자의 유해물 접근 차단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합법적인 기술 · 제품 · 서비스 또는 장치에 구성품이나 부품을 포함하는 행위
  - ④ 컴퓨터(시스템 및 네트워크 포함)의 보안 상태를 점검 · 조사 · 보정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해당 컴퓨터 소유자가 허락한 비침해 행위
  - ⑤ 온라인상 개인 정보를 비공개로 수집 · 유포하는 능력을 확인하고 무력화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비침해 행위
  - ⑥ 법 집행, 정보 활동, 필수적 안보 등 정부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공무원 등의 합법적 행위
  - ⑦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교육기관 등이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해당 자료에 접근하는 행위

- 비침해 이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입법 또는 행정절차에서 입증된 경우, 특정 종류의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비침해 이용에 대한 예외 및 제한 설정 가능
    - 이렇게 채택된 예외 및 제한은 개신 가능한 3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시적 효력 발생
- ※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시(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를 통해 6가지 추가적 예외를 규정

### 권리관리정보 (제18.4조제8항)

- 전자적 권리관리정보 뿐 아니라 비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도 포함
    - 기존 저작권법은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에 한하여 보호하고 있었으나, 보호대상 범위를 모든 형태의 권리관리 정보로 확대
- ※ 권리관리정보(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 어떤 저작물을 다른 저작물과 구별하고, 그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권리처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저작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 방송 또는 전송에 수반되는 것
-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를 유인·가능·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게 할 것을 알면서 권한없이 하는 아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민·형사 구제절차 제공
    - ① 고의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변경하는 행위
    - ②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변경된 사실을 알고 동 권리관리정보를 배포하거나 배포를 위해 수입하는 행위
    - ③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변경된 사실을 알고 저작물 등을 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하거나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다만, 국가의 법집행, 정보활동 및 필수적 안보와 같은 공무 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권리관리정보의 제거 및 변경은 권리관리정보의 침해에서 면책

### 중앙정부의 정품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 사용 지침 마련 [제18.4조제9항]

- 중앙정부기관의 정품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기타 저작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규별 규정 마련

### 암호화된 위성 및 케이블 신호의 보호 [제18.7조]

- 암호화된 프로그램을 수반하는 위성·케이블 신호를 불법으로 해독하는 기기 등을 이용한 무단 시청 또는 청취 및 재배포 행위와 관련한 아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민·형사 구제절차 제공
  - ① 암호화된 위성·케이블 신호를 배포자의 허락없이 해독하는 기기·시스템을 제조·조립·변경·수출입·판매·리스 또는 달리 배포하는 행위
  - ② 배포자의 허락없이 해독된 신호임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위성·케이블 신호를 수신하여 사용·재배포하는 행위
  - ③ 적법하게 해독된 위성·케이블 신호를 배포자의 허락 범위를 넘어 상업적 이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재배포하는 행위

### 냄새·소리 상표 [제18.2조제1항]

- 상표등록의 요건으로 표지가 시각적으로 인식가능할 것을 요구함

수 없으며, 소리 또는 냄새로만 구성된 표지도 상표로서 등록 가능토록 규정

※ Intel 효과음/MGM 사자 울음소리(소리상표), 레이저 프린터 토너의 레몬향(냄새상표)

### 증명표장 제도 [제18.2조제2항]

▣ 상품이나 서비스가 일정한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증명표장제도 도입

※ 증명표장의 예 : 미국의 Wool Mark, UL(Underwriters' Laboratory) 마크, Cotton Mark

### 상표 등록권자의 권리 [제18.2조제4항]

▣ 상표 등록권자는 제3자가 ①등록상표에 관한 상품·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대하여 ②상표권자의 승낙 없이 ③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지를 ④상업적으로 사용하여 ⑤혼동 가능성을 초래하는 경우, 표지사용을 금지할 배타적 권리 를 보유

▣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지를 등록상표에 관한 상품·서비스와 동일한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 유명상표 보호 [제18.2조제6항-제18.2조제8항]

▣ 유명표장인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 등록을 요건으로 요구할 수 없음을 규정

- 등록 · 유명표장 목록 등재 · 사전인식 여부만을 근거로 유명 표장에 대한 구제조치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
-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 · 서비스에 대해 유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유명상표권자와 연관성을 나타내고 상표권자의 이익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면, 동 유명상표의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등록거절 · 등록취소 · 사용금지
  - ※ 기존 파리조약 제6조의2는 동일 · 유사한 상품에 대해 유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호가 가능하도록 규정
- 어떠한 표장을 “관련 상품 · 서비스를 통상적으로 다루는 대중”이 인지하고 있다면 유명표장으로 인정
- 관련되는 상품 · 서비스에 대해 유명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 및 지리적표시가 사용되어 ①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거나 ②오인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거나 ③기만할 가능성이 있거나 ④유명상표권자와 연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거나, ⑤유명상표의 명성에 대한 불공정한 이용을 구성하는 경우, 해당상표 및 지리적표시의 등록거절 · 등록취소 · 사용금지

### 상표 전용사용권의 등록 요건 폐지 (제18.2조제13항)

- 상표 사용권의 효력발생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주장을 위한 요건으로 사용권의 등록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
  - ※ 종전 우리 상표법상 전용사용권의 경우 등록을 효력발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었으나, 한 · 미 FTA를 통해 전용사용권을 등록하지 않은 사용권자도 침해(손해배상 청구 등)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
  - ※ 전용사용권(exclusive license) :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지리적표시의 보호 (제18.2조제14항 및 제18.2조제15항)

### ▣ 지리적 표시의 출원·청원 절차와 관련한 의무

- 협정당사국의 관여 없이 당사국 국민이 직접 출원·청원하도록 허용
- 출원·청원의 형식적 요건 최소화
- 절차규정 공개 및 명확화
- 출원·청원 절차 및 처리과정 공개 등
- 출원·청원에 대한 공표·이의제기·등록취소 절차 마련

### ▣ 지리적 표시가 선행상표와 혼동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록거절·이의제기·등록취소를 할 의무

- 선행상표로는 △등록상표, △사용에 의해 권리를 획득한 상표, △유명상표가 포함

## 특허 대상 제외 범위 (제18.8조제2항)

### ▣ 아래 사항은 특허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인간·동·식물의 생명·건강 보호, 환경 피해 방지,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 보호 등을 위해 상업적 이용의 금지가 필요한 발명
- 인간 또는 동물의 진단·치료·수술 방법

## 특허취소 사유의 한정 (제18.8조제4항)

- ▣ 특허 허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의하여서만 특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따라 구 특허법상 불실시에 의한 특허취소 제도는 폐지

### 의약품 시판허가 신청 목적의 특허 실시 (제18.8조제5항)

- ▣ 복제의약품 시판허가 신청을 위하여 특허권이 있는 의약품의 특허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이에 따라 생산된 시약은 시판허가 신청을 위한 정보 생산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는 제조·사용 또는 판매되지 않도록 함.

※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기간 중에는 제3자(복제의약품 생산자)가 특허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신약의 특허기간 만료에 맞추어 복제약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판허가 획득을 위한 특허실시를 예외적으로 허용

### 불합리한 특허등록 지역으로 인한 특허 존속기간 연장 (제18.8조제6항 가호)

- ▣ 특허당국의 특허 심사지연 등 불합리한 사유로 인하여 특허 존속기간 (특허등록후 출원일로부터 20년)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경우, 불합리한 지역기간만큼 특허 존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기간이란, “출원후 4년 혹은 심사청구후 3년 중 늦은 날”을 초과하는 기간을 의미
- 특허출원인의 행위에 기인하는 지역은 연장기간에 불포함

### 의약품 시판허가 지역으로 인한 특허존속기간 연장 (제18.8조제6항 나호)

- 신약 시판허가 절차 소요에 따라 특허존속기간이 불합리하게 단축될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의약품의 특허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공지예외 적용기간 (Grace Period) 연장 (제18.8조제7항)

- 특허 출원 이전 공개(공지)된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발명자 자신이 공지한 발명에 한해 일정기간 예외를 인정하는바, 예외기간을 12개월로 규정

### 의약품 자료독점 (제18.9조제1항 및 제2항)

- 의약품의 신규 시판허가 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안전성·유효성 자료에 대하여, 제출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가 동 자료에 근거하여 동일 또는 유사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최초 개발자의 시판허가일로부터 최소 5년간 금지 (농약은 최소 10년 금지)

※ 신규의약품(농약품): 의약품(농약품)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당사국 영역에서 기허가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

- 의약품의 “추가적인 적응증(適應症, indications)” 시판 허가를 위해 제출한 새로운 임상 정보의 경우 시판허가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호

### WTO 공중보건 선언 재확인 (제18.11조)

- 당사국은 “WTO 공중보건 선언(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상 의무를 확인하고, 한·미 FTA가 각 당사국이 동 선언에 따른 공중보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

- 또한 향후 WTO TRIPS 협정이 개정되는 경우, 한·미 FTA 협정문이 개정된 TRIPS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양국이 신속히 협의할 것을 명시

### 참고: WTO 공중보건선언 주요내용

- 2001년 도하각료회의에서 'TRIPS와 공중보건에 관한 각료 선언문(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 WT/MIN(01)/DEC/2)' 채택
  - 의약품 생산능력이 없거나 불충분한 회원국이 TRIPS 협정의 강제 실시제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TRIPS 이사회가 동 문제에 관한 신속한 해결책을 찾아 2002년 말까지 일반이사회에 보고토록 규정
- 2003.8월, 일반이사회는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 para.6 이행 결정(WT/L/540)' (이하 '2003.8월 결정') 채택
  - 강제실시의 대상을 의약품(pharmaceutical products)으로 규정
  - 의약품 생산기반이 없는 회원국에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해 강제실시권을 실시할 경우 TRIPS 제31조 ① 국내시장 공급 목적, ⑥ 적절한 보상 의무 면제 제공
  - 회원국들은 동 결정 내용에 기반하여 2004.6월까지 TRIPS 협정을 개정하도록 규정
- 2005.12월, 일반 이사회에서 TRIPS 개정의정서(IP/C/41) 최종 채택(WT/L/641)
  - 2003.8월 결정문 내용을 대다수 반영하여 제31조 bis와 부속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협정문 개정
  - WTO 협정 제10.3조에 따라 회원국 2/3의 수락시, 수락회원국에 대해서만 발효
  - 2007.12.1까지 수락을 위해 개방

- TRIPS 개정의정서를 수락한 회원국이 2/3(42국)에 미치지 못하여 수락 기한을 3차례 연기하여 현재는 2013.12.31까지 개방
- 수락서 기탁 현황 : 2011.10월 현재 34개국 수락  
※ 2003.8월 결정문은 개정 TRIPS 협정이 발효할 경우 효력 상실

### 허가-특허 연계 (제18.9조제5항)

- ▣ 오리지널 의약품의 원 개발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복제의약품 생산업자가 시판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협약 절차 내에서 아래 의무사항을 규정
  - ① 특허기간 중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복제약 시판허가를 신청한 자의 신원을 특허권자에게 통보
  - ② 특허기간 중 특허권자의 동의 또는 묵인이 없이는 후발 신청자의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협약 단계에서 조치 시행  
※ 이 제도는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기간 중에 당해 특허의 무효 또는 비침해를 이유로 복제약 시판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특허기간 만료후 출시를 위해 시판허가를 신청하는 대부분의 복제약에는 적용되지 않음.
- ▣ 2011.2월 한미 FTA 추가협상으로 상기 ②의 시판방지조치 의무의 이행이 3년간 유예됨.

### 법정손해배상제도 (제18.10조제6항)

- ▣ 상표권 및 저작권(저작인접권 포함) 침해 관련 민사 소송에서 권리

자가 구체적 실손해배상 대신 법령에 미리 규정된 액수의 손해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

- 법정손해배상액은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고 침해로부터 야기된 피해를 권리자에게 완전히 보상하기에 충분해야 함.

**참고: 양국 국내법에 규정된 법정손해배상액**

○ 우리나라

- 저작권 침해 : 1천만원 이하(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 5천만원 이하)
- 상표권 침해 : 5천만원 이하

○ 미국

- 저작권 침해 : 750불~30,000불 (선의로 침해한 경우, 200불 이상/고의로 침해한 경우, 150,000불 이하)
- 상표권 침해 : 1,000불~200,000불(고의로 침해한 경우, 2,000,000불 이하)

**정보제공명령 권한 (제18.10조제10항)**

- 지재권 집행에 관한 민사 절차에서 법원이 침해자에게 침해와 관련되어 침해자가 소유·통제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권리자 또는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
- 제출 대상 정보에는 침해연루자(제3자 포함), 침해 관련 상품·서비스의 생산수단 및 유통경로 관련 정보 포함

## 유효한 명령 불복시 제재 (제18.10조제11항 가호)

- 적절한 경우, 민사절차에서 법원의 유효한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이를 제재(벌금, 구류 또는 구금)할 수 있도록 법원에 권한 부여

## 비밀유지명령 위반시 (제18.10조제11항 나호)

- 민사재판 당사자, 변호인, 전문가 등 소송관계자가 재판과정에서 생산되거나 교환된 비밀정보와 관련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

## 대체적 분쟁해결절차 (제18.10조제16항)

- 소규모의 저작권 침해 사례 발생시 법적소송 대신 절차적으로 간편한 조정 절차 등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대체 분쟁해결제도 허용
- 미측은 조정 등의 절차가 민간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우리측은 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경미한 저작권 침해사례를 조정  
※ 법적 절차와 달리 반드시 조정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그 내용은 법적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 일방적 잠정조치 (제18.10조제17항 및 18항)

- 일방적 잠정조치 요청에 당사국이 신속히 대응하도록 규정
- 잠정조치 관련, 권리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가 임박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공할 것을 권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

- 침해자 보호 및 권리남용 방지 등을 위해, 합리적 수준의 담보 또는 보증 제공을 권리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법원에 부여

### 직권 국경조치 (제18.10조제22항)

- 위조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 또는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으로 의심되는 수입·수출·환적물품 또는 자유무역지대의 물품에 대해 세관이 직권으로 국경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

### 역담보 허용 금지 (제18.10조제20항)

- 위조된 상표상품이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 또는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에 대해서는 역담보를 통한 반출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

※ 역담보제도 : 수입업자가 통관보류된 물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면 통관이 허용되는 제도

### 범죄수의 몰수 (제18.10조제27항 다호)

-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로 얻은 모든 자산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

### 비친고죄 (제18.10조제27항 바호)

-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권 위조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고소없이 수사기관의 직권으로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규정

※ 친고죄란 고소(발)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며, 비친고죄는 고소(발)가 없이도 수사기관의 직권으로 공소 제기가 가능한 범죄임.

## 위조 · 불법 라벨 및 위조 서류 · 포장의 유통 금지 [제18.10조제28항]

- 위조 · 불법 라벨 또는 위조 포장 · 서류를 알면서 밀거래한 경우 고의적인 상표위조 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닐지라도 형사절차가 적용되도록 규정

## 도촬 금지 조항 [제18.10조제29항]

- 영화관 등에서 저작권자 등의 허락없이 비디오카메라 등을 통해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을 전송 또는 복제하기 위해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절차가 적용되도록 규정
- 도촬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동일하게 규정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 조항 [제18.10조제30항]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침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면서 일정 행위를 하는 경우 면책이 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기여도가 유형별로 다른 점을 감안,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4가지 유형별로 구별 하여 차등화된 면책 규정을 적용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유형 : ① 단순도관, ②캐싱서비스, ③저장서비스, ④정보 검색도구
- 저작권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침해 협의자의 신원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를 수립하도록 규정

## 노동

## 기본 노동권 (Fundamental Labor Rights) [제19.2조]

※ 제19.2조에 규정된 의무는 국제노동기구에 관한 경우 “국제노동선언” 만을 지칭

- ▣ 양국은 98년 ILO 선언상의 아래 5개 기본 노동권을 국내 법령과 관행에 채택하고 유지해야 함.
  - ① 결사의 자유, ②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③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의 철폐, ④ 아동노동의 효과적 폐지 및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⑤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철폐
  - ILO 핵심협약 가입 의무화와는 무관

참고: ILO 8개 핵심 협약 및 한·미 양국 비준 현황 (한국 4개, 미국 2개 가입)

동등보수 협약(한), 고용 및 직업상 차별금지 협약(한), 최저연령 협약(한),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한/미), 강제근로 폐지 협약(미), 강제근로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단결권 및 단체 교섭 협약

## 노동법의 적용 및 집행 (제19.3조)

- ▣ 제19.2조상의 기본 노동권을 포함한 자국의 노동법을 효과적 집행해야 함.
  - 양국간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자국 노동법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
  - 양국은 기본 노동권에 대한 노동집행활동간 자원의 배분에 관하여 합리적인 재량을 행사하고 선의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
    - 단, 당사국이 집행 자원의 배분에 관하여 내리는 결정은 동 챕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가 되지 못함.

##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제19.4조제1항 및 제2항)

- ▣ 각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인정된 이해관계자에게 자국 노동법의 집행을 위한 행정·준사법·사법 또는 노동 재판소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재판소의 절차의 공정성, 공평성, 투명성을 보장해야 함.

## 공중의견제출제도 도입·운영 (제19.5조제3항)

- ▣ 동 챕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당사국의 인은 양 당사국중 어느 접촉선(CP: Contact Point)에라도 시정 요구 등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접촉선(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의견을 제출할 경우, 동 의견은 미국내 노동 사안으로 한정

- ※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9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예규 22호)'에 관련 내용 규정
- 미국이 체결한 모든 FTA의 노동 챕터 상의 미측 접촉선과 공중의견 제출 제도에 대한 guideline(71 FR 76694 (2006-12-21))을 관보에 게재
  - ※ 미측 접촉선
    - Office of Trade and Labor Affairs, Bureau of International Labor Affairs
  - ※ 가이드라인(Notice of Procedural Guidelines)
    - <http://www.dol.gov/ilab/programs/otla/2006021837.pdf>에서 다운로드 가능
- ▣ 이러한 의견은 사소해서는 안 되며 일정 검토가치가 있어야 하며, 적절하다고 판단시 접수
  - ※ 미국은 각종 입증자료 제출의무, 충분한 검토기간(검토 여부 결정 전 60일, 정부간협의 요구 전 검토 180일)과 같은 운영절차를 엄격히 규정
- ▣ 의견이 접수되면 당사국의 접촉선은 협정 제19.5조 제3항과 합치되는 적절한 국내절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접수된 의견을 타방 당사국과 대중에게 공개
- 단, 검토시 국내사법절차나 국제기구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 인지, 그리고 최근 다른 의견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 등을 고려 가능

참고: 공중의견제출제도(PC) 활용 예시

○ 미국의 한-미 노동 챕터 관련 의무위반행위 발생 및 접수

- 우리국민이 미국 영역에서의 동 노동 챕터의 관련 사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우리정부의 노동챕터 이행기관(접촉선)에 진정 제기 가능
- 진정서(국문 또는 영문)에는 인적사항, 진정제기사항, 피해정도, 요구사항 등을 가능한 자세히 기재

### ○ 조사 개시 결정 및 통지

- 관할당국은 동 진정서의 검토(조사개시) 여부를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
- 동 검토시 미국의 노동 챕터 의무 위반 여부, 국내 구제절차 신청 여부, 검토가치 존부 등을 고려
- 조사개시 결정시 타방(한국은 미국, 미국은 한국) 접촉선에 동 진정 개요 등 통보

### ○ 의견서 내용에 대한 조사개시

- 관할당국은 제기된 사안의 노동 챕터 의무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  
※ 조사방법 : 진정인,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청문회 개최, 진정인에 대한 추가자료제출 요청 등

### ○ 조사결과보고서 발표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의 경우 120일, 미국의 경우 18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대중에 공개해야 함.

## 노무협의회 (제19.5조제1항 및 제2항)

▣ 노무협의회(LAC: Labor Affairs Council)는 노동협력메커니즘(LCM: Labor Cooperation Mechanism) 활동을 포함한 동 챕터의 이행을 감독함.

- 각 당사국의 노동부와 적절한 기관의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
- 협정 발효 후 1년 내에 회의개최(그 이후는 필요시 개최)
- 각 당사국은 자국 대중을 구성원으로 자문위원회 구성 가능

## 노동협력 메커니즘 (제19.6조)

- 양국은 노동협정 부속서의 노동협력메커니즘에 근거하여 노사관계, 인적자원 개발 및 평생학습 등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양국의 노동 분야 관심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교류, 세미나·워크숍 개최, 공동연구 실시 등 협력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 협정문 적용대상 노동법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향후 노무 협의회를 통한 양국 노동법 규정의 비교·검토 사업도 포함

## 노동협의 (제19.7조)

- 당사국은 동 챕터 관련 사안에 대해 타방 당사국의 접촉선에 서면 협의 요청을 전달한 경우, 양 당사국은 사안의 해결을 위해 협의해야 하며, 해결이 어려울 경우 노무협의회 등을 통해 신속한 해결을 도모해야함.
- 최초 협의 요청 전달 후부터 60일 이내에 사안의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동위원회 회부 등 분쟁해결에 관한 제22장의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
- 단, 제19.7조에 따라 사안 해결을 시도하지 아니하고는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 이용 불가
- 양국은 이 장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효과가 성립될 수 있는 실질 내용을 가진 사건의 경우에만 분쟁 해결절차에 회부

## 노동법의 정의 및 범위 (제19.8조)

- 협정문 대상 노동법을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및 최저임금, 근로시간,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규로 한정
  - ※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강제근로 폐지, 최악형태의 아동노동 폐지, 고용 및 직업상 차별철폐
- 협정문 적용대상 노동법의 동등성 확보를 위하여
  - 적용대상 노동법에 미국의 주별 노동법을 제외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여 우리도 중앙정부 노동법에 한정
  - 우리 노동법에만 규정되고 미국 노동법에는 명백히 없는 사항(paid annual leave or holidays)을 협정문 적용대상에서 제외
  - 제19.8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동법의 대상과 관련하여, 노동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양국 노동법 범위의 비교·검토 사업 실시

## 환경

###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의무 [제20.1조 및 제20.3조]

- ▣ 양국은 자국의 환경법 및 정책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동 보호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의무를 규정
- ▣ 단, 환경보호 수준 및 환경개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른 환경법 및 정책을 채택 및 수정하는 각 국가의 주권적 권리는 인정

### 다자간 환경협정의 의무 이행 [제20.2조 및 제20.10조]

- ▣ 양국은 양국이 모두 비준한 7개 다자간 환경협정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 및 조치를 채택 · 유지하고 이행해야 함.

#### 참고: 7개 다자간 환경협정

- ①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 ②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 ③ 해양오염 협약(MARPOL 73/78)
  - ④ 습지보존협약(람사협약)
  - ⑤ 국제포경규제협약(IWC)
  - ⑥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CCAMLR)
  - ⑦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약(IATTC)
- ※ 동 협약 리스트는 양측 합의 하에 추가 가능

- 단, 의무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양국간 무역·투자에 대한 영향이 있음을 입증 필요
  - 7개 다자간 환경협정과 FTA상 의무간 불일치가 있을 경우, 양 협정상 의무의 균형을 추구
- ▣ 한·미 양국이 모두 당사국인 다자간 환경협정과 무역협정간 상호 보완(mutual supportiveness)을 지속적으로 추구

### 환경법의 효과적 적용 및 집행 [제20.3조]

- ▣ 양국간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자국 환경법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
- ▣ 양국간 투자·무역에 영향을 주면서 환경법상 보호수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환경법 적용 면제·이탈 금지

### 절차적 보장 [제20.4조]

- ▣ 이해관계가 있는 사인은 국내법에 따라 환경법 위반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당사국에게 조사 요청 가능
- ▣ 당사국은 환경법 위반시 제재 및 구제를 위한 사법·준사법·행정절차를 보장하고, 관련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인이 동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
- 구체적으로 관련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인은 ① 손해 배상 소송 ② 구제명령 ③ 금전적 벌칙, 긴급폐쇄, 활동의 일시적 정지 등 제재 및 구제 청구 가능

## 환경협의회 설치 (제20.6조)

- ▣ 환경 챕터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환경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 환경협의회(Environmental Affairs Council) 설립 및 운영
- 환경협의회 운영방식
  - 제1차 협의회는 협정 발효일 이후 1년 이내에 개최하고, 그 이후에는 필요시 개최
  - 협의회 개최시, 국가자문위원회의 견해 등 환경 챕터 이행에 관하여 대중과 논의하기 위해 공개회의(Public Session) 개최
    - ※ 공개회의의 서면 요약 공개
  - 협의회 의제 개발시 대중에게 조언을 구하는 등 대중참여 증진 모색
  - 협의회의 공식 결정은 원칙적으로 공개

## 대중참여 확대 (제20.7조)

- ▣ 환경 챕터 이행에 있어 다양한 방식의 대중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환경보호에 대한 민간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환경정책을 지향
- 환경법 및 환경법 집행/준수 절차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환경법에 대한 대중인식 제고
- 사인(私人)은 환경 챕터의 이행에 관하여 한·미 양국에 정보 및 의견교환을 요청하고 서면으로 입장제출(Submission) 가능
  - ※ 한·미 양국은 사인의 정보 및 의견교환 요청을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서면 입장제출(Submission)에 대해서는 답변해야 함.
- 환경 챕터 이행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적절한 경험을 가진 사인으로 구성된 국가자문위원회 개최

- 환경협의회 개최시 국가자문위원회의 견해 고려, 대중과의 공개회의(public session) 개최 및 동 공개회의 기록 공표 의무화

※ 환경협의회(Environmental Affairs Council) : 환경 챕터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고위 정부 관리로 구성된 환경협의회 설립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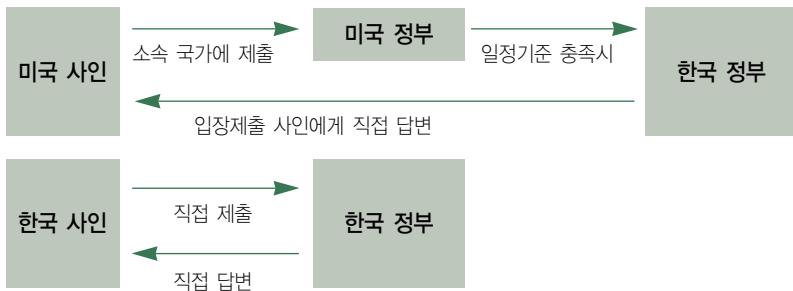
- FTA 협정발효 1년후 180일이 지나기 전까지 환경협의회는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에 대중참여에 대한 이행보고서 제출

※ 모든 이행보고서는 공동위원회 제출시 대중에도 공개

- 단, 상대국 소속 사인의 입장제출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통제하고 과도한 입장제출로 인한 행정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한·미 양국은 부속서한 교환을 통해 아래와 같이 상대국 사인의 입장제출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양국은 환경관련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경법 및 절차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서면입장 제출을 위한 통로 마련

구분	우리측	미측
환경관련 법령 및 절차 공개	www.law.go.kr(법제처 법령정보센터) www.me.go.kr(환경부) www.scourt.go.kr(대법원)	www.gpo.gov (미국 법령 공개 홈페이지) www.epa.gov(미국 환경보호청)
서면입장 제출	전담부서(환경부 해외협력담당관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	www.state.gov/e/oes/env/trade/c49687.htm(국무부 홈페이지 내 관련 section)
제출된 서면 입장에 대한 당국 회신	대한민국의 인이 제출한 서면입장과 미합중국 정부를 통해 제출된 미합중국 인의 서면입장에 대해 60일 이내(추가 90일 연장 가능)에 회신 할 것을 규정	제출된 서면입장이 관련 당국자에 의해 검토되고 합리적 기간 (reasonable time frame) 내에 회신될 것이라고 규정
관련 규정	한·미 FTA 환경챕터상의 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규정 (환경부 예규 제442호)	Freedom of Information Act (5 USC 552)

- 상대국 소속 사인은 소속 당사국을 통해 입장을 제출토록 하고, 소속 당사국은 동 사인이 제출한 입장이 환경 챕터상 특정조항의 이행과 관련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제한 가능



### 분쟁해결절차 (제20.9조)

-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한 경우, 일반 분쟁해결절차 대신 1차적으로 정부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협의회 회합을 요청하도록 하여, 양측간 협의를 통한 협정의 이행을 강조
- 환경법 적용과 집행의무 관련 한·미 양국은 부속서한 교환을 통해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기 이전에 분쟁사안을 규율하는 환경법과 동등한 법이 자국에 있는지 여부를 우선 고려토록 함으로써, 양국이 공통으로 규율하는 사안만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될 수 있도록 제한

## 환경법의 정의 및 범위 (제20.11조)

- 환경 챕터상 환경법은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당사국의 법 또는 규정이나 그 조항을 의미함.
- 단, 근로자 안전 또는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 또는 규정이나 그 조항은 포함하지 않음.
- 아울러, 환경법은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집행가능한 환경법으로 제한함.
- 미국 연방 환경법과 우리나라 중앙정부 환경법이 공통으로 규율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될 수 있도록 제한함.

## 환경 협력 확대

- 한·미 양국간 환경협력강화를 위해 환경 챕터와 별도로 환경 협력협정(AEC,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을 체결 (2012.3.15 발효)

### 참고: 환경협력협정(AEC) 주요 내용

#### ○ 목적

- 양국의 환경보전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공동사업 발굴·추진, 정보 및 인적교류 촉진 등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 사업추진 체계

- 양국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환경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

- 협력위원회는 협력사업을 점검하고 협력사업의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채택할 수 있으며 협력결과 보고서를 작성 공포
- 한·미 FTA 발효 1년 이내 첫 회의를 가지고 이후 합의에 따라 주기적으로 회동
- 협력 사업계획(Action Plan) 수립·집행
- 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개진 기회 제공, 합동포럼에 민간참여 회의 포함 등 민간참여 촉진

#### ○ 협력사업 분야

- 인센티브, 시장메커니즘, 민·관 파트너십, 모범사례에 대한 정보 교환 등을 통해 환경보전 및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 환경보전과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환경법 및 정책 개발과 이에 대한 이행 준수·집행에 대한 정보교환
- 다자간환경협약(MEA) 이행
- 교육, 정보제공, 민간참여 촉진 등을 통한 공공인식 제고·참여
- 육상, 내륙, 연안, 해양 생태계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관리
- 불법 벌목 및 부산물의 운송교역 대응/CITES 종의 불법거래 대응
- 오염예방·방지, 유해폐기물 및 유독물 관리, 재활용 등을 통한 대기·수질 오염 저감
- 환경기술개발, 에너지 효율성 제도 등을 통한 청정생산 기술
- 환경 위해성평가 및 감시능력 제고, 과학에 기반한 환경기준 설정
- 환경법 및 관련규정 준수에 대한 정보교환
- 해양운행 선박 및 항만과 관련된 환경보호
- 산업 및 자연재해 등 환경 비상사태 대응 및 예방 기법
- 여타 양국이 합의하에 추진하는 사업

#### ○ 협력형태(Form of Cooperation)

- 전문가 등 인력 교류 촉진
- 공동 회의 세미나, 워크샵 및 훈련과정 운영
- 공동 연구·사업·보고서 작성 지원
- 정보교류를 위한 학계·산업계·정부의 연계 촉진
- 양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합의한 사업 등

## 투명성

### 공표 [제21.1조제1항]

#### ▣ 의무 내용

- 협정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련된 법률·규정·절차 등을 신속하게 공표하고, 상대국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시 기회 보장
- 협정 적용 사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중앙정부의 제안된 규정(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대하여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최소 4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 부여
  - ※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대부분의 규정 및 제안된 기술규정에 대해서는 최소 60일 입법예고 기간 부여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6조)
- 입법예고 기간중 제출된 주요의견 및 개정사항은 관보 또는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

#### 참고: 양측 관련 제도

##### ○ 우리측

- 우리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iikms.assembly.go.kr](http://iikms.assembly.go.kr)) 및 법제처 사이트([www.moleg.go.kr](http://www.moleg.go.kr))를 통해 모든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 입법절차 진행상황을 공표하고 있음.
- 행정절차법(2012.3.15 시행)은 입법예고 기간을 40일 이상으로 규정
-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는 인터넷 등에 공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2항)

### ○ 미측

- 미측은 입법예고, 의견 제출,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 및 설명 등을 위한 정부 공식 사이트 운영중 (www.regulations.gov)
- 의견 제출에 최소 6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행정명령 12866(1993.9.30) Sec.6(a)(1))
- 제안된 입법안을 관보(Federal Register)에 미리 게재하여, 의견 제출 기한 및 절차, 법적 권한, 주요 내용 등을 고지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를 최종 관보에 게시(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Sec.553)

### 정보의 제공 (제21.2조)

-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할 경우, 해당되는 조치(조치안 포함)와 관련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

### 행정절차 (제21.3조)

- 자국의 모든 조치(법 · 규정 · 절차 · 관행 · 요건 등)안을 다른 쪽 당사국의 사람 ·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할 경우 행정절차는 아래 사항을 보장
  - ① 행정절차 개시되는 경우 가능하다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이해관계인에게 절차의 성격 및 법적 근거 등 합리적으로 통지를 제공
  - ② 최종 행정처분 이전에 다른쪽 당사국의 인에게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실과 주장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 제공 보장

### 민간 구매에 관한 정책 (제21.5조)

- 자국의 민간인이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사용을 자제토록 하는 것이 자국의 정책이 아님을 확인

## 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

### 접촉선 (제22.1조 및 제22.5조)

- ▣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접촉선 지정 (제22.1조)
  - 우리는 외교통상부이며, 미측은 USTR
- ▣ 분쟁해결 절차의 행정적 지원을 담당할 부서 지정 (제22.5조)
  - 우리는 외교통상부이며, 미측은 상무부

### 공동위원회 (제22.2조)

- ▣ 양국간 통상장관을 의장으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협정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필요시 협정 개정 여부를 검토
  - 정기회기 : 양국 영역에서 교대로 매년 개최
  - 특별회기 :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후 30일 이내
- ▣ 공동위원회의 의무
  - 협정의 이행 감독

-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업무 감독
- 양 당사국간 무역관계 증진 방안 검토
-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노력
- 패널 위원에게 지불될 보수 및 비용 결정
-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 검토

■ 공동위원회의 권한

- 임시 및 상설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를 설치하고 이에 책임을 위임
- 비정부 인사 또는 단체의 조언 요청
- 협정의 개정 검토 또는 협정 상의 약속 수정
- 협정 규정에 대한 해석
- 공동위원회의 절차규칙 채택
  - ※ 2012.5.16 제1차 공동위원회에서 ‘공동위원회 절차규칙’ 채택(상세 내용 아래 참고)
-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기능 수행을 위한 그 밖의 조치
- 각 당사국은 공동위원회 또는 산하 위원회·작업반 등에서 교환된 비밀정보를 해당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
- 공동위원회 및 산하 위원회·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의 컨센서스로 이루어짐.

**참고: 공동위원회 절차규칙 (2012.5.16 채택) 주요 내용**

○ 기본 구성

- 공동위원회 의사규칙(Rules of Procedures)은 △기본적인 구성 및 운영절차, △수석대표회의 설치, △산하 위원회·작업반 등에 대한 업무감독 사항을 규정  
※ 세부적으로 공동위의 구성, 의제, 결정, 수석대표회의 산하 위원회 등에 대한 감독 규정으로 구성

○ 주요내용

- (구성) 협정 22.2조에 의거 공동위를 설치하고, 공동위 구성, 역할, 구조, 회의일정 등은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동 조에 따라 운영
- (의제) 잠정의제는 늦어도 회의개최 14일전 합의
- (결정) 당사국 합의에 의해 서면 결정문을 채택할 수 있음.
- (수석대표회의) 당사국간 고위급으로 구성된 수석대표회의를 설치하고, 산하 분위별 위원회 등의 활동에 대하여 조정역할 수행
- (산하 위원회 등에 대한 감독)
  - 산하 위원회 등에서 당사국간 교환된 문서(서한, 문서, 이메일 등)는 양측 공동위원회의 접촉선(contact points)에 제공
  - 공동위원회는 산하 위원회 등에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 가능
  - 산하 위원회 등은 공동위원회의 승인하 자체 의사규칙 채택이 가능

## 분쟁해결절차 (제22.7조~제22.12조)

- ▣ 국가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는 “① 당사국간 협의 → ② 공동위원회 회부 → ③ 패널 심리 → ④ 패널 설치 → ⑤ 패널의 판정 → ⑥ 패널 판정의 이행”의 순서로 진행 (※ 상세절차 별첨)
- ▣ 동 협정상 분쟁해결절차와 WTO 분쟁해결절차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소국은 선택 가능
  - 단, 어느 한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한 경우 다른 절차는 이용 배제
- ▣ 분쟁해결절차에서의 투명성 및 대중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절차 마련
  - 양국 비정부기관의 의견제출 요청 고려
  - 심리 과정 및 패널제출문서 공개(단, 비밀정보 보호 필요)

## 분쟁해결절차 적용범위 (제22.4조)

※ 제8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10장제2절(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16장(경쟁 관련 사안) 중 일부 조항(제16.1조, 16.6조, 제16.7조)과 관련한 사항은 협정 제22장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 적용 배제

- ▣ 국가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와는 별도)는 아래 사항에 대해 적용됨
  - ① 협정 불합치 조치
  - ② 협정 의무 불이행
  - ③ 비위반제소

- 비위반제소 적용범위: 제2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 제3장(농업), 제4장(섬유 및 의류),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 제17장(정부조달), 제18장(지적재산권)
  - ※ 제12장 또는 제18장 상의 혜택을 침해 또는 무효화 하는 조치가 협정 제23.1조에 따른 일반적 예외에 해당할 경우 비위반제소 불가
- 단, 지재권의 경우 WTO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비위반제소 허용을 유예키로 합의(제22장 각주 1)
  - ※ 비위반제소(non-violation complaints):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일방 당사국의 조치로 인해 타방 당사국이 협정의 체결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는 경우 국가대 국가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패널판정 불이행시 조치 [제22.13조]

- ▣ 패널판정 불이행시 동등한 효과를 갖는 협정상 혜택의 정지 또는 금전적 보상 가능
- ▣ 금전적 보상은 일시적인 것으로서 피소 당사국이 패널판정을 이행할 때까지 제소 당사국에게 매 분기 지급
  - 보상액은 패널이 정한 혜택의 정지 수준의 50% 또는 패널의 이에 대한 결정이 없을 경우 제소국이 혜택의 정지를 제안한 수준의 50% 수준에서 미화로 결정
  - 공동위원회는 이를 기금으로 조성, 무역장벽을 감축하거나 당사국의 협정이행을 지원하는 등 당사국간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 가능

## 자동차 관련 별도 분쟁해결절차 [부속서 22-가]

※ 상세 내용은 제9-1장 자동차(79p) 참조

▣ 자동차(motor vehicle)와 관련된 분쟁의 경우, 신속한 분쟁해결절차 및 강화된 구제조치(소위 'snap-back')를 허용

※ 협정상 불합치 또는 무효화/침해가 자동차의 판매, 판매를 위한 제의, 구매, 운송, 유통 또는 사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동 조치 제거시까지 승용차(HS8703류 해당상품)에 대하여 MFN 관세 부과 가능

## 분쟁해결 모범 절차규칙 (제22.10조)

▣ 개관

- 분쟁해결 모범 절차규칙은 협정과 별도로 양국 분쟁해결 담당부서간 협의를 거쳐 제정(2012.6.1 발효)
- 문서 제출 절차, 패널운영방식, 심리절차, 비밀정보 취급방식 등 분쟁해결 절차 관련 세부사항 규정
- 별도 합의가 없는 이상 합의된 모범 절차규칙은 한미 FTA의 분쟁해결절차에 적용

▣ 패널 절차



	의무 내용	기한
(제소국)	소장 제출	패널 구성일로부터 7일
(피소국)	답변서 제출	패널 구성일로부터 35일
(제소국)	반박서면 제출	답변서 수신일로부터 21일
(피소국)	재반박서면 제출	반박서면 수신일로부터 21일
(패널)	심리 진행	재반박서면 수신일로부터 14일
(패널)	양국에 질의서 송부	심리기일로부터 3일
(양국)	질의서에 대해 답변	질의서 수신일로부터 14일
(양국)	상대방 답변에 대한 반박서면	상대방 답변서 수신일로부터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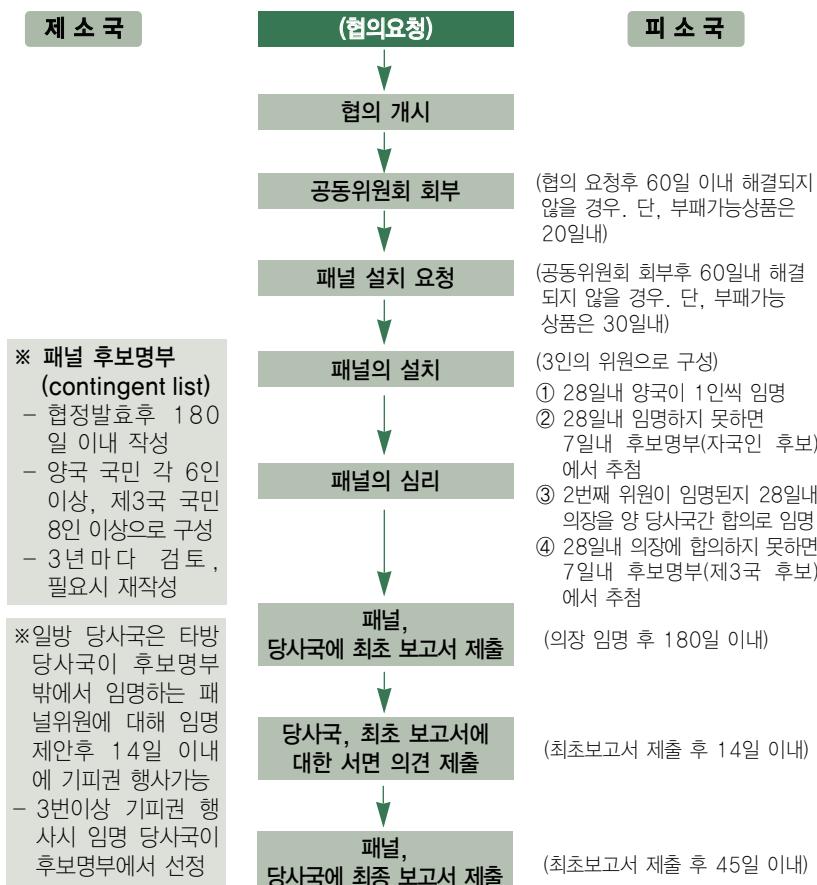
## ▣ 기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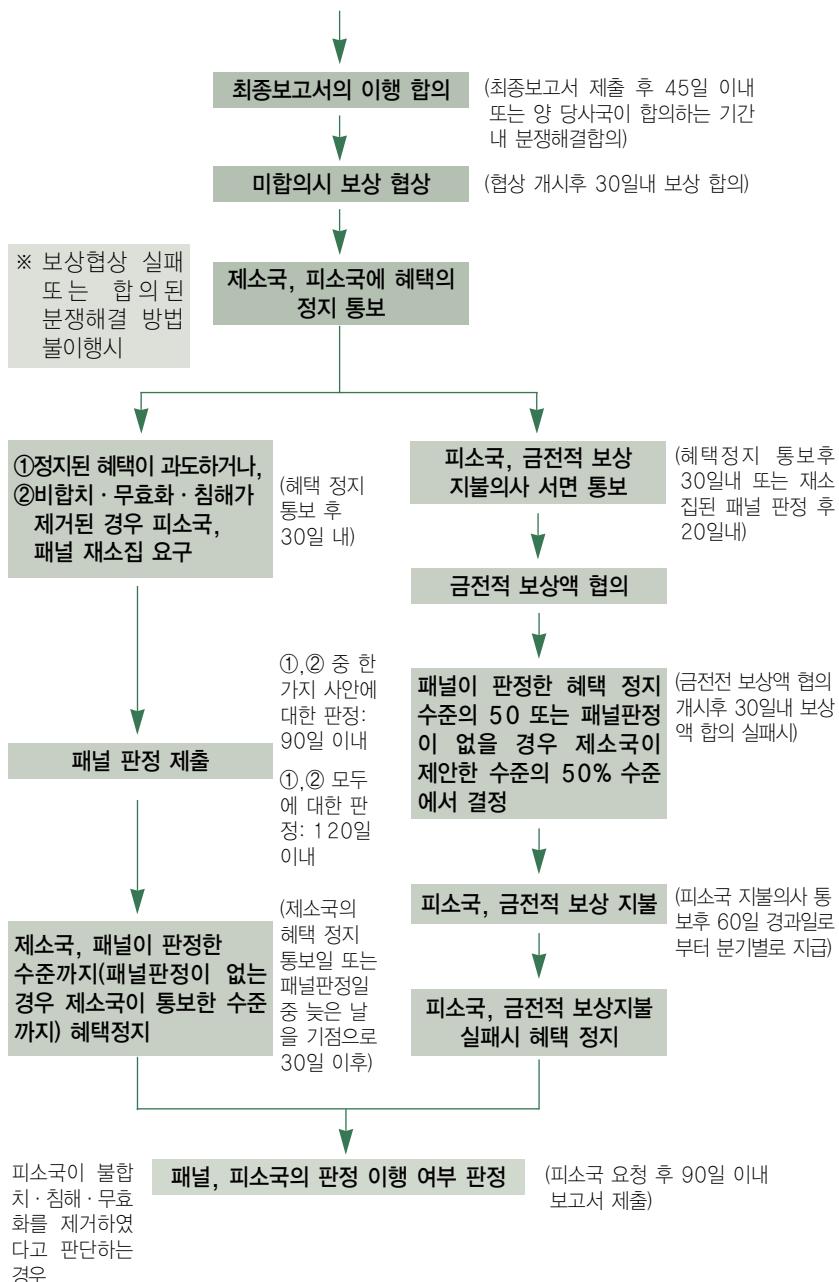
- WTO와 달리 FTA에서는 상설사무국 개설이 어려운바, 이를 대신할 책임사무소(Responsible office)를 사건 전별로 피소국에 설치
  - ※ 책임사무소는 패널에 대한 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
- 절차상 국어와 영어 모두 사용 가능. 단, 절차가 영어로 진행될 경우, 패널의 재량으로 우리나라의 서면제출 기한을 각 단계별로 3일까지 연장 가능
- 패널심리는 원칙적으로 일반에 공개하고, 직접 참관하거나 CCTV로 방청 가능
- 당사국이 일방적으로 특정 정보를 비밀정보로 분류·지정 가능
- 각국의 비정부기구는 패널의 혀락을 받아 사건의 사실상·법률상 논점에 대하여 의견 제시 가능
- 모범절차규칙은 양국이 그 이행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한 때, 또는 양국이 합의한 날 발효. 모범절차규칙은 양국 간 합의를 통해 개정 가능

## 추가협상 합의내용 (서한교환 제6절)

- 한·미 FTA 原협정의 총칙 및 분쟁해결 규정이 추가협상 합의 내용에도 적용

### 《한·미 FTA 분쟁해결 절차도》





## 예 외

### 일반적 예외 [제23.1조]

- GATT 제20조 및 GATS 제14조의 일반적 예외 적용
  - GATT 제20조와 관련 주해 적용 챕터 : 협정 제2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제3장(농업), 제4장(섬유 및 의류),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7장(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제8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9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 ※ GATT 제20조 상의 인간·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보호 조치에 환경 보호조치도 포함되고, 천연자원 보존에는 생물 자원의 보존도 포함되는 것으로 양해
  - GATS 제14조 적용 챕터 : 협정 제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 제14장(통신), 제15장(전자상거래)
    - ※ GATS 제14조 상의 인간·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보호 조치에는 환경보호 조치도 포함되는 것으로 양해

### 참고: GATT 제20조/GATS 제14조 상 일반적 예외조치

#### ※ GATT 제20조상 일반적 예외 조치

- 공중도덕 보호, 인간·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금·은의 수출입 관련 조치,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 역사·예술 유물의 보호, 공급부족 상품의 취득·유통에 필수적인 조치 등

#### ※ GATS 제14조상 일반적 예외 조치

- 공중도덕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 인간·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안전, 사기 행위의 방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 필수적 안보 (제23.2조)

#### ▣ 국가안보상의 예외조치 허용

- 필수적 안보이익에 반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허용
- 필수적 안보이익의 보호 또는 국제평화 및 안보의 유지를 위한 의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당사국이 판단하는 조치 가능  
※ ISD 또는 협정상 국가간 분쟁해결절차에서 당사국이 동 예외를 원용하면 동 예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패널이 판정하도록 함.

### 과세 (제23.3조)

#### ▣ 과세조치는 협정 원칙적으로 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

- ※ 동 조의 목적상 “세금 및 과세조치”는 관세 또는 반덤핑/상계관세, 수입 수수료 및 기타 부과금을 포함하지 않음.

- 상품 챕터 일부조항(내국민대우, 수출세, 자동차 배기량별 세제 등)과 서비스·투자 챕터 일부 조항(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관련

및 수용·보상 관련 등)은 제한적으로 과세조치에 적용

- ▣ 과세조치가 수용에 해당되는 경우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ISD)가 적용되나,
  - ISD 회부 전 양국 조세당국(한국 : 기획재정부, 미국 : 재무부)이 먼저 협의하고,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 ISD 제소를 진행
  - ※ 상세 내용은 투자 분야 참조
    - “조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부속서를 투자 chapter에서 채택

### 정보 공개 (제23.4조)

- ▣ 협정상 어떤 내용도 공개되면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공공 이익에 반하거나, 특정기업·공공·민간의 합법적인 상업상 이익을 손상하는 비밀정보의 제공 또는 접근 허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

## 최종 조항

- 협정문의 부속서(Annex), 부록 및 각주는 불가분의 협정 일부로 구성
- 양국간 서면으로 합의시 협정 개정 가능
- 협정문에 통합되어 있는 WTO 협정이 개정되는 경우, 양국은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해 협의할 의무
- 상호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새로운 국가의 협정 가입 허용
- 협정은 양국이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60일 경과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
  - 한 당사국이 협정을 종료할 의사를 서면으로 일방 통보하면, 180일 경과후 협정 효력이 종료
  - ※ 협정 종료 의사가 통보된 후, 당사국은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 한국어와 영어 협정문은 동등한 정본

## 참고 한·미 FTA 상 협의 채널 구성 현황

협의 채널	근거	분야	구성	회합 및 설치	비고
공동 위원회	제22.2조	협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국 대표</li> <li>의장 : 통상교섭본부장, 미무역대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기) 매년</li> <li>(특별) 일방 요청 후 30일</li> </ul>	임시·상설 위원회, 작업반 또는 기타 기구 설치 가능
고위급 회의	공동 위원회 절차 규칙 규칙4	협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국 대표</li> <li>의장 : FTA교섭 대표, USTR 대표 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국간 합의에 의해 회합</li> </ul>	임시·상설 위원회, 작업반 또는 기타 기구의 작업을 지원하고, 공동위원회를 지원
상품무역 위원회	제2.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장 (상품)</li> <li>제6장 (원산지)</li> <li>제7장 (관세행정)</li> </ul>	양국 대표	당사국 또는 공동 위원회의 요청시 회합	관세 사안에 관한 소위원회 소집 가능
농산물 무역 위원회	제3.4조	농업	양국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치) 협정 발효 후 90일</li> <li>(최소 1회) 매년</li> <li>(회의주제) 주최국 대표</li> </ul>	
섬유 및 의류 무역 사안에 관한 위원회	제4.4조	섬유 및 의류	양국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방 또는 공동 위원회의 요청시 회합</li> </ul>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	제5.7조	의약품 및 의료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국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정부 공무원 및 그 외 적절한 중앙 보건의료 프로그램 담당 공무원</li> </ul> </li> <li>공동의장 : 각국의 보건 및 통상 공무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소 1회) 매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 위원회에 결과 보고</li> <li>규제협력 등 기술적 면을 다루기 위한 작업반 설치 가능</li> </ul>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위원회	제8.3조	위생 및 식물위생 (S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국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PS 사안 담당자</li> <li>SPS 조치의 개발·이행 및 집행을 담당하는 자국의 관련 무역 및 규제 기관 또는 부처의 적절한 대표의 위원회의 참여 보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소 1회) 매년</li> <li>(설치) 협정 발효 후 45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국의 수석 대표 확인, 위원회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서한 교환 필요</li> <li>동 위임 사항에는 각국의 담당 기관 및 부처를 규정</li> </ul>

협의 채널	근거	분야	구성	회합 및 설치	비고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제9.8조 부속서 9-가	무역에 대한기술 장벽 (TBT)	양국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소 1회) 매년</li> <li>· 주관</li> <li>· (우리) 기술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li> <li>· (미국) 미무역대표부 또는 그 승계 기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반 설치 가능</li> <li>· 업무범위 및 위 임사항 결정</li> <li>· 비정부 전문가 등 포함 · 협의</li> <li>- 일방 요청에 따른 협의시, 합의 하 면, 제22.7조 (협의)에 따른 협의 구성</li> </ul>
자동차 작업반	부속서 9-나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국 대표</li> <li>- 조정자</li> <li>· (우리) 외교통상부 대표</li> <li>· (미국) 미무역대표부 대표</li> <li>- 포함 또는 협의 기관</li> <li>· (미국) 교통부 대신 연방고속도로 안전청, 환경보호청</li> <li>· (우리)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li> <li>· (기타) 양국의 그 밖의 관련 규제기관</li> <li>· (외부) 적절한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 1회) 매년</li> <li>· WP.29 또는 양국 모두 참여하는 자동차 규제 관련 양자 또는 다자간 포럼 회의와 연계 개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우편, 화상 회의, 및 기타 통신수단 활용</li> </ul>
무역구제 위원회	제10.8조	무역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국 대표</li> <li>· 무역구제를 담당 하는 각 국 관련 기관의 적절한 수준의 대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소 1회) 매년</li> <li>· 합의시 추가 회합 가능</li> </ul>	
서비스 · 투자 위원회	서한 교환	서 비 스 · 투자 · 통신	양국 대표	발효 후 90일 이내 회합	- 제11조, 제12 조, 14조
중소기업 작업반	서한 교환	중소기업	양국 대표	발효 후 90일 이내 회합	
전 문 직 서 비 스 작업반	부속서 12-가	전문직 서 비스 공급 자의 면허 및 증명을 위한 표준 및 기준	양국 대표	발효 후 1년 이내 회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양자 · 복수 · 다자간 협정을 적의 고려</li> <li>- 진전사항 및 향후 작업방향을 공동 위원회 보고(발효 후 2년내)</li> </ul> <p>* 상세 생략</p>

협의 채널	근거	분야	구성	회합 및 설치	비고
금융 서비스 위원회	제13.16조 부속서 13-다	금융 서비스	- 양국 대표 · (우리) 기획재정부 · (미국) 재무부(은행 · 기타 금융서비스), 상무부(보험) 및 미무역대표부	매년 또는 합의하는 대로	각 회의 결과는 공동위원회에 보고
보험 작업반	부속서 13-다	보험 공급	- 양국 대표 · 금융 서비스 감독 조직의 관련 공무원	매년 1회 (교차 개최)	
정부조달 작업반	제17.10조	정부조달	양국 대표	상호 합의 또는 일방 요청시 회합	
노무 협의회	제19.5조	노동	- 양국 고위공무원 · 각국 노동부 및 기타 적절한 기관 또는 부처	- 발효 후 1년 이내 회합 · 대중과 회합할 수 있는 시간 포함	- 각 국은 국가노동 자문위원회(노 동·업계 단체 대 표 등으로 구성) 소집 가능 - 전족선 지정 - 협의회의 공식 결정은 공개
환경 협의회	제20.6조	환경	- 양국 고위공무원 · 환경 담당 등	- 발효 후 1년 이내 회합 · 이후 필요시 · 대중과 회합할 수 있는 시간 포함	논의내용 서면 요약 및 공식 결정은 공개
한반도 역외가공 지역 위원회	부속서 22-나	개성공단	양국 공무원	- 발효 1주년 되는 날에 회합 · 이후에는 매년 (최소 1회) 또는 상호 합의하는 때	- 원산지 상품 간주 되기 이전 총족 기준 수립 - 동 위원회가 상기 기준 총족 여부 결정 - 역외가공지역내 원산지 최종 상품 에 추가 될 수 있는 총 투입가치 의 최대한도 설정
수산 위원회	부속서 22-다	EEZ내 상업적 활동 등	양국 대표	- 발효 후 1년 회합 · 이후에는 매년 개최	공동위원회에 회의 결과 통보



# 한·미FTA 주요내용

## 부 록





# 서비스투자위원회 및 중소기업작업반 설치 서한

## I. 추진 배경 및 경위

- 2011.6.3 우리 국회에 제출된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미 FTA가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분야 및 서비스·투자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
- 정부는 중소기업 분야 및 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한 국내적 논의 동향을 고려, 미측과 협의를 진행한 바, 미측은 협정내용의 수정을 수반하는 논의에 난색 표명
- 양측은 협정 발효후 중소기업 분야 및 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한 제기사항을 양국간에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작업반” 및 “서비스·투자 위원회”를 설치키로 합의
- 2011.10.30 한·미 통상장관간 서한 교환 형식으로 합의

## II. 서한교환 주요 내용

### 1. 서비스·투자 위원회 설치

- 한미 양국은 한·미 FTA ‘서비스·투자 위원회’ 설치에 합의
- 서비스·투자 분야의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서비스·투자 위원회와 공동위원회의 이중 장치를 통해 보다 신중한 협정 이행 도모

※ 금융서비스위원회는 협정상 설치규정이 이미 존재(한·미 FTA 부속서 13-다)

■ 서비스·투자 위원회는 아래 기능을 수행

- ① 협정 제11장(투자), 제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제14장 (통신)의 이행과 집행을 점검·감독
- ② 서비스·투자 분야의 협정 이행 개선 방안을 모색·개발
- ③ 서비스·투자 분야의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제기하는 어떠한 특정 이슈도 다룸
- ④ 동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사안을 검토

■ 동 위원회는 양국 정부대표로 구성하며, 제1차 회의는 협정 발효후 90일 이내에 개최하고 그 이후에는 매년 개최 (양측이 합의하는 경우 수시 회의도 개최 가능)

## 2. 중소기업 작업반 설치

■ 한미 양국은 '중소기업 작업반'을 설치, 첫 회의 개최 후 1년 내에 활동 결과를 권고(recommendations)와 함께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 보고

■ 중소기업 작업반은 아래 기능을 수행

- ① 협정 이행이 중소기업의 생산, 유통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
- ② 협정에 의해 창출되는 경제적 이득을 중소기업이 보다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개발
- ③ 협정 규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어느 한 쪽 당사국에 의하여 제기되는 어떠한 특정 이슈도 다룸.
- ④ 그 밖에 작업반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중소기업 관련 사안을 검토

■ 동 작업반은 양국 정부대표로 구성하며, 제1차 회의는 협정 발효후 90일 이내에 개최하고 그 이후에는 매년 개최 (양측이 합의하는 경우 수시 회의도 개최 가능)

### III. 서비스투자위원회 설치 서한

#### 〈 비공식 번역 한글본 : 우리측 제안 〉

론 커크  
미합중국 무역대표  
워싱턴 디씨

2011년 10월 30일

커크 대사 귀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당사국들”)간의 전반적인 경제관계에서 서비스 무역과 투자가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 무역협정(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시에 서비스·투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된다. 우리 각 정부 대표로 구성될 이 위원회는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의 감독을 도와주는 중요한 메커니즘을 제공할 것이다.

서비스·투자 위원회는 (1) 서비스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11장, 제12장 및 제14장의 이행과 집행을 점검·감독하고, (2)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이들 분야에서 이행되는 방식을 보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개발하고, (3) 이들 분야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에 의하여 제기되는 어떠한 특정 이슈도 다루고, (4) 이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사안을 검토할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설치된 다른 위원회, 기구 및 작업반과 마찬가지로, 이 위원회는 공동 위원회에 의해 감독될 것이며, 그 밖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22.2조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규정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 위원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발효 후 90일 이내에 그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할 것이고,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이후에는 매년 회합할 것이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우리 양 정부간 합의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랍니다.

김 종 훈

〈 비공식 번역 한글본 : 미측 회신 〉

김 종 훈  
통상교섭본부장  
대한민국 서울

2011년 10월 30일

김 본부장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당사국들”)간의 전반적인 경제관계에서 서비스 무역과 투자가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 협정(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시에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된다. 우리 각 정부 대표로 구성될 이 위원회는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의 감독을 도와주는 중요한 메커니즘을 제공할 것이다.

서비스·투자 위원회는 (1) 서비스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11장, 제12장 및 제14장의 이행과 집행을 점검·감독하고, (2) 한·미 자유 무역협정이 이들 분야에서 이행되는 방식을 보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개발하고, (3) 이들 분야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에 의하여 제기되는 어떠한 특정 이슈도 다루고, (4) 이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사안을 검토할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설치된 다른 위원회, 기구 및 작업반과 마찬가지로, 이 위원회는 공동위원회에 의해 감독될 것이며, 그 밖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22.2조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규정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 위원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발효 후 90일 이내에 그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할 것이고,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이후에는 매년 회합할 것이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우리 양 정부간 합의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본인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귀하의 서한과 이 회답서한이 우리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론 커크

## IV. 중소기업작업반 설치 서한

### 〈 비공식 번역 한글본 : 우리측 제안 〉

론 커크  
미합중국 무역대표  
워싱턴 디씨

2011년 10월 30일

커크 대사 귀하,

“중·소규모 기업”(중소기업)이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및 혁신을 촉진시키는 측면에서 우리 양국 경제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단계에서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것은 우리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된다.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당사국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시에 우리 각 정부 대표로 구성된 중소기업 작업반을 설치할 것이다.

이 작업반은 (1)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이 중소기업1)에 의한 생산, 유통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2) 중소기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창출되는 경제적 기회의 이득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개발하고, (3) 이 협정의 규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어느 한 쪽 당사국에 의하여 제기되는 어떠한 특정 이슈도 다루고, (4) 이 작업반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중소기업에 관한 그 밖의 사안을 검토할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설치된 다른 위원회, 기구 및 작업반과 마찬가지로, 이 작업반은 공동위원회에 의해 감독될 것이며 그 밖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22.2조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규정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 작업반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발효 후 90일 이내에 그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할 것이고,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이후에는 매년 회합할 것이다. 이 작업반은 그 첫 번째 회의로부터 1년 이내에, 공동위원회에서의 검토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 권고와 함께 그 작업반의 활동 결과를 공동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다.

이 작업반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발효 후 90일 이내에 그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할 것이고,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이후에는 매년 회합할 것이다. 이 작업반은 그 첫 번째 회의로부터 1년 이내에, 공동위원회에서의 검토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 권고와 함께 그 작업반의 활동 결과를 공동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우리 양 정부간 합의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김 종 훈

---

1) 이 작업반의 목적상, 중소기업이라 함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관련 국내 법, 규정 또는 정부가 정한 기준상에 그렇게 정의 되거나 취급되는 모든 종류의 사업체를 포함 한다.

### 〈 비공식 번역 한글본 : 미측 회신 〉

김 종 훈  
통상교섭본부장  
대한민국 서울

2011년 10월 30일

김 본부장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중·소규모 기업”(중소기업)이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및 혁신을 촉진시키는 측면에서 우리 양국 경제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단계에서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것은 우리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된다.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당사국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시에 우리 각 정부 대표로 구성된 중소기업 작업반을 설치할 것이다.

이 작업반은 (1)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이 중소기업2)에 의한 생산, 유통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2) 중소기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창출되는 경제적 기회의 이득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개발하고, (3) 이 협정의 규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어느 한 쪽 당사국에 의하여 제기되는 어떠한 특정 이슈도 다루고, (4) 이 작업반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중소기업에 관한 그 밖의 사안을 검토할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설치된 다른 위원회, 기구 및 작업반과 마찬가지로, 이 작업반은 공동위원회에 의해 감독될 것이며 그 밖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22.2조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규정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 작업반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발효 후 90일 이내에 그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할 것이고,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이후에는 매년 회합할 것이다. 이 작업반은 그 첫 번째 회의로부터 1년 이내에, 공동위원회에서의 검토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 권고와 함께 그 작업반의 활동 결과를 공동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우리 양 정부간 합의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랍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귀하의 서한과 이 회답서한이 우리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랍니다.

론 커크

---

1) 이 작업반의 목적상, 중소기업이라 함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관련 국내 법, 규정 또는 정부가 정한 기준상에 그렇게 정의 되거나 취급되는 모든 종류의 사업체를 포함 한다.

## 공동위원회 절차규칙

### 공동위원회 절차 규칙

#### 규칙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양 당사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협정") 제22.2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설립을 확인한다.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공동위원회의 구성, 기능, 구조 및 회의 일정은 협정 제22.2조의 규정을 따른다.

#### 의 제

#### 규칙 2

각 공동위원회 회의의 잠정의제는 각 회의 개최 14일전보다 늦지 않은 때 까지 양 당사국간 합의되어야 한다.

#### 회기간 채택되는 결정

#### 규칙 3

공동위원회는 공식 공동위원회 회기간 양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서면으로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 임시 및 상설 위원회,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

## 규칙 4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 고위급 협의체를 설치한다. 동 협의체는 양 당사국의 상호 합의에 따라 회합할 것이다. 고위급 협의체에 참가하는 고위 공무원은 모든 임시 및 상설 위원회,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작업을 조정하고 공동위원회의 임무 수행을 지원하는 책임을 갖는다.

## 규칙 5

공동위원회는 협정 제22.2조제3항가목에 따른 공동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각 임시 및 상설 위원회,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에 의해 지정된 접촉선을 통보받는다.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각 임시 및 상설 위원회,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서신을 포함한 모든 최종 문서는 협정 제22.1조에 따라 각 당사국이 지정하는 접촉선에 전달된다.

## 규칙 6

공동위원회는 임시 및 상설 위원회, 작업반 및 그 밖의 모든 기구에 각자의 활동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 규칙 7

각 임시 및 상설 위원회,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는 공동위원회의 승인하에 자신의 절차규칙을 수립할 수 있다.

## 규칙의 개정

## 규칙 8

공동위원회는 언제라도 동 절차규칙 또는 동 절차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 분쟁해결절차 모범절차규칙

### 모범절차규칙

#### 적용

1. 이 모범절차규칙(이하 "모범 규칙"이라 한다)은 그 부록을 포함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 협정의 제22.10조(절차 규칙)에 따라 제정되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 22장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 적용된다.

#### 정의

2. 이 규칙에서,

"협정"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 협정을 말한다.

"보조인"이라 함은 패널 구성원의 임명 조건에 따라 그 구성원을 위해 조사를 수행하거나 지원을 제공하는 인을 말한다.

"승인된 인"이라 함은 다음의 인을 말한다.

가. 부록1에 따라 지정된 당사국의 권한있는 대표자,

나. 부록1에 따라 지정된 책임 사무소의 권한있는 피고용인,

다. 패널 구성원, 또는

라. 부록1에 따라 지정된 패널위원의 보조인

"권한있는 대표자"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당사국의 공무원, 또는

나. 분쟁 중 당사국이 자문하거나 당사국을 보조하고 그 당사국이 패널 및 다른 쪽 당사국에 그 위임사실을 통지한 당사국의 법률 고문 또는 그 밖의 자문인 또는 컨설턴트. 단, 비밀 정보를 수령 함으로써 제22장에 따른 절차 밖에서 혜택을 얻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모든 실체의 인 또는 피고용인, 임원 또는 대리인을 모든 상황에서 제외한다.

"실행가능한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비밀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전자 문서의 경우, 전자적 전송에 의함, 또는

나. 비밀 정보를 포함하는 종이 또는 전자 문서의 경우, 상업적 특급 배송서비스로 익일배송에 의함

"행동규범"이라 함은 제22.9조제4항라호 (패널의 설치)에 따라 공동 위원회에 의해 제정된 행동규범을 말한다.

"제소 당사국"이라 함은 제22.9조(패널의 설치)에 따른 패널 설치를 요구하는 당사국을 말한다.

"비밀 정보"라 함은 규칙 제16호에 따라 당사국이 그와 같이 지정한 정보를 말한다.

"전달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패널 또는 책임 사무소에 당사국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책임 사무소가 그 당사국에 제공한 수취확인서에 기재된, 책임 사무소가 문서를 접수한 날, 또는

나. 패널 또는 책임사무소가 전달한 문서에 대하여, 책임사무소가 관련 당사국에 전자 문서를 전송한 날, 또는 종이 문서에 대한 상업적 특급 배송 서비스의 기록에 기재된 날 중 이른 날

"일"이라 함은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전달"이라 함은 전자 문서에 대하여, 전달 매체 또는 전자적 전송을 통해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문서"는 종이 또는 전자적 형태를 불문하고, 패널 절차 중에 제출된 모든 서면형식을 포함한다.

"전자 문서"라 함은 그 문서의 종이 문서본과 동일한 상업적 문서작성 형식으로 된 문서본을 말한다.

"정보"라 함은 종이 문서, 전자적 파일, 또는 구두 정보를 포함하여 형식과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를 말한다.

"공동위원회"라 함은 제22.2조(공동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사무소"라 함은 제22.9조(패널의 설치)에 따라 설치된 패널에게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22.5조(분쟁해결절차의 운영)에 따라 당사국이 지정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패널"이라 함은 제22.9조(패널의 설치)에 따라 설치된 패널을 말한다.

"패널위원"이라 함은 패널의 구성원을 말한다.

"당사국"이라 함은 협정의 당사국을 말한다.

"피소 당사국"이라 함은 제소 당사국이 제22.9조(패널의 설치)에 따라 분쟁해결패널에 그 사안을 회부했다는 것을 명시하는 서면 통보를 접수하는 당사국을 말한다.

"공휴일"이라 함은, 당사국에 대하여, 토요일, 일요일 및 그 당사국이

공휴일로 공식적으로 정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 그 밖의 모든 일을 말한다.

"기록"이라 함은 정보가 기록되거나 저장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그리고

"책임 사무소"라 함은 규칙 제88호에 적시된 기능을 담당하는 피소 당사국 내의 사무소를 말한다.

3. 이 모범 규칙에서 조, 부속서 또는 장에 대한 모든 언급은 협정의 적절한 조, 부속서 또는 장을 지칭한다.

### 위임사항

4. 제소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그러한 위임사항을 책임 사무소에 신속히 전달하고, 책임 사무소는 다시 실행가능한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다른 쪽 당사국 및 패널이 구성된 경우 그 패널에 이를 전달한다.
5. 양 당사국이 패널 설치 요청의 전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임사항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이를 책임 사무소에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통보가 접수되는 즉시 책임 사무소는 제22.10 조 제3항(절차 규칙)에 규정된 위임사항을 실행가능한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양 당사국 및 패널이 구성된 경우 그 패널에 전달한다.

### 서면 입장 및 그 밖의 문서

6. 어떠한 문서도, 그 문서를 이 모범 규칙에 따라 제출기간 내에 책임 사무소가 접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책임 사무소를 통해 패널에 문서를 제출하는 당사국은 공식본을 전자적 또는 종이 형태로 책임 사무소에 전달하며, 또한 같은 날

전자 또는 종이 사본을 적절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 전달하며, 책임 사무소에 전달하는 때에, 그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사본을 전달했음을 명시한다. 책임 사무소는 또한 다른 쪽 당사국의 사무소에 전자 사본을 전달한다. 문서의 일부를 전자적 수단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그 문서를 제출하는 당사국은 이를 전자 사본에 명시해야 하며, 그 문서의 해당 부분에 대한 사본을 실행가능한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다른 쪽 당사국에 전달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책임 사무소가 양 당사국이 패널에 제출한 문서를 수령하는 경우, 책임 사무소는 그러한 문서의 전자 사본을 패널위원들에게 같은 날 배포한다. 그 문서의 일부가 전자적으로 전달될 수 없는 경우, 책임 사무소는 실행가능한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패널위원들에게 그 문서의 해당 부분에 대한 종이 사본을 전달한다.

8. 제소 당사국은 패널 구성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패널에 최초 서면 입장을 제출한다.
9. 피소 당사국에 대한 패널의 설치 요청 전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사무소가 문을 닫는 공휴일 목록과 그 당사국 사무소의 통상적인 업무시간을 책임 사무소에 전달한다. 패널 구성 후 7일 이내에, 패널은 다음을 규정하는 패널 절차에 대한 일정표를 공표한다.
  - 가. 피소 당사국은 패널 구성일로부터 35일 이내에 최초 서면 입장을 제출.
  - 나. 피소 당사국의 최초 서면 입장 전달로부터 21일 이내에, 제소 당사국의 모든 반박입장을 제출
  - 다. 제소 당사국의 반박 입장 전달로부터 21일 이내에, 피소 당사국의 모든 반박입장을 제출
  - 라. 피소 당사국의 반박 입장 전달로부터 14일 이내에 심리
  - 마. 심리 최종일로부터 3일 이내에 패널의 모든 서면 질의를 양 당사국에 전달

- 바. 심리 최종일로부터 17일 이내에, 심리 중에 발생한 모든 사안 및 패널로부터의 서면 질의에 대해 응답하는, 당사국의 보충적 서면 입장을 제출 그리고
- 사. 패널로부터의 서면질의에 대한 모든 응답의 제출로부터 14일 이내에, 다른 쪽 당사국의 보충적 서면 입장에 대한 한 쪽 당사국의 의견 및 패널로부터의 서면 질의에 대한 모든 응답을 제출
10. 당사국이 책임 사무소에 문서를 전달하는 때에, 책임 사무소는 문서의 제목과 전달일을 명시하는 수취 확인서를 그 당사국에 제공 한다.
11. 패널 절차와 관련된 요청, 통보, 서면 입장 또는 다른 문서에서 사무적 성격의 사소한 오류는 그 변경사항을 명확히 나타내는 새로운 문서의 제출로 정정될 수 있다. 당사국은 전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또는 패널이 지정하는 다른 때에 그러한 오류를 정정하여야 한다. 사무적 성격의 사소한 오류 정정은 규칙 제9호에 따라 패널이 규정한 패널 절차에 대한 일정표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12. 이 모범 규칙에 따라 당사국의 사무소에 전달되는 문서는 모두 그 사무소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중에 전달되도록 한다. 그 사무소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이후에 전달되는 모든 문서는 다음 영업일 중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13. 당사국의 문서제출일이 그 당사국의 공휴일 또는 그 당사국의 사무 소가 불가항력에 의해 문을 닫는 날이 되는 경우, 문서제출일은 그 당사국의 다음 영업일이 된다.

### 서면 입장제출 및 그 밖의 문서의 공표

14. 규칙 제15호 및 제16호에 따라, 당사국의 서면 입장제출, 구두 진술의 서면본, 패널이나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요청이나 질의

에 대한 서면 응답, 제19.7조제1항(노동협의), 제20.9조제1항(환경 협의 및 패널절차) 및 제22.7조(협의)에 따라 이루어진 협의 요청, 그리고 제22장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통보를 포함하여 패널에 제출되거나 패널이 공표한 각 문서는 공개된다. 이 조항에서 “문서”라 함은 순수하게 행정적인 성격의 문서를 포함하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다. 책임 사무소는 책임사무소에 문서가 전달된 후 즉시 그러한 문서 및 통보를 대중에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제22.11조제4항(패널 보고서)에 따라, 각 당사국은 또한 그 보고서가 양 당사국에게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패널의 최종 보고서를 대중에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15. 어떠한 당사국도 제22.11조제1항(패널 보고서)에 따라 양 당사국에 제출된 최초 보고서의 내용 또는 최초 보고서에 대한 어떠한 의견의 내용도 공개할 수 없다.
16. 비밀 정보 또는 제23.2조(필수적 안보) 본 규칙의 어떠한 내용도, 공개될 경우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결정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접근을 허락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또는 당사국이 국제 평화나 안보의 유지 또는 회복, 또는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의 보호에 대한 자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예 기술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한도에서, 당사국은 부록2 가능한 최대한도에서, 비밀 정보는 입장제출의 증빙자료 또는 첨부자료에 포함되어야 한다. 예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입장제출에 포함된 특정 사실 정보를 비밀 정보로 지정할 수 있다. 비밀 정보로 지정될 수 있는 정보는 공공 영역에서 이용 가능하지 아니한 모든 민감한 사실 정보에 한정된다. 각 당사국은 정보를 비밀 정보로 지정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한다.
17. 당사국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를 비밀 정보로 지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규칙 제7호에 따라 그 비밀 정보가 편집되고 가능한 한

최대한 그 고유의 비밀 정보가 요약되어 있는 그 문서의 공개본을 준비하여 전달한다.

18. 당사국이 문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비밀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의 공개본을 준비하여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비밀 정보를 편집한 후, 그 문서를 대중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 규칙 제7호에 따라 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19. 당사국이 규칙 제17호 또는 제18호에 따라 입장제출로부터 비밀 정보를 편집한 경우, 그 당사국은 그 문서의 공개본에 그러한 정보가 편집된 각 장소를 명확히 표시한다.
20. 당사국은 규칙 제16호에 기술된 특정한 사실 정보를 밝히는 한도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국의 서면 법적 주장의 어떠한 부분도 비밀 정보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 **비밀정보의 확인 및 취급 절차**

21. 규칙 제21호 내지 제24호와 부록2는 당사국이 패널 절차 중에 제출하고 비밀 정보로 지정한 정보에 적용된다. 그러나 부록2의 제1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절차는 당사국이 처음 제출한 비밀 정보 및 그로부터 파생된 정보에 대하여 당사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규칙 제16호 및 부록2에 따라 비밀 정보라고 지정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해 패널에 제출된 정보를 비밀로 취급한다. 이 모범 규칙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쪽 당사국이 제출한 정보를 언급할 때, 다른 쪽 당사국이 비밀 정보로 지정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당사국이 자국의 입장에 대한 진술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23. 당사국은 부록2에 명시된 비밀 정보를 적시, 접근, 사용, 저장 및 처분한다.

24. 각 당사국은 부록1에 따라 승인된 인으로 지정된 자국의 권한 있는 대표자 각각이 이 절차를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패널은 부록1에 따라 승인된 인으로 지정한 권한 있는 피고용인 또는 패널위원의 모든 보조원 각각이 이 절차를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 패널의 운영

25. 패널의 의장은 패널의 각 회의를 주재한다. 패널은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6. 이 모범규칙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전화, 팩스 전송, 화상회의 및 컴퓨터 연결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27. 패널의 논의에는 패널 위원만이 참여할 수 있으나, 패널은 그러한 심의에 보조인, 통역사 또는 번역사의 출석을 허락할 수 있다. 그러한 심의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은 심의 중에 논의된 어떠한 정보도 당사국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28. 이 모범규칙이 다루지 아니하는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패널은 협정 또는 이 모범규칙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적절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29. 세 명의 패널위원 후보 모두의 선정에 있어서, 책임 사무소는 각 패널위원 후보에게 패널위원 후보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한다. 책임 사무소는 각 패널위원 후보가 패널위원으로 패널에 직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제안에 수락한 후 신속하게 당사국에게 그러한 수락을 통보한다. 책임 사무소는 패널 후보와 연락을 한 날로부터 5일을 초과하여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수령하는 경우, 양 당사국에 통보한다. 책임 사무소가 패널위원 후보와 최초로 연락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패널위원 후보가 패널에 패널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수행 가능한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책임

사무소는 양 당사국에게 이를 알리고 그러한 패널위원 후보는 직무 수행이 가능하지 않다고 간주한다. 최초로 패널위원 후보와 연락을 할 때, 책임 사무소는 최초 공개 진술 양식 및 행동규범 사본을 제공하고, 각 패널위원 후보에게 패널에서 직무를 수행 하는 제안에 수락하는 경우 최초 공개 진술을 작성하고 그것의 전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책임 사무소로 돌려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요청한다.

30. 책임 사무소가 세 명의 패널위원 후보 모두에게 패널에서 직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제안을 수락한 작성된 최초 공개 진술 양식을 수령한 날에, 그 책임 사무소는 양 당사국에 패널의 구성을 통보한다. 제22.11조제1항(최초 보고서)에 규정된 180일의 기간은 책임 사무소의 통보일로부터이다. 이 규칙에 따라, 패널은 책임 사무소가 당사국에게 그 설립을 통보하는 날짜에 설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31. 패널위원 후보가 임명을 수락하지 아니하거나, 규칙 제32호에 따라 패널위원이 사망,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 또는 달리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협정의 제22.9조(패널의 설치)와 이 모범규칙의 규칙 제29호에 규정된 선정 절차에 따라 가능한 한 신속하게 대체자를 선정한다.
32. 양 당사국이 패널위원이 제22.9조제4항라호(패널의 설치)를 준수하는데 실패하였다고 합의하는 경우, 그 패널위원을 해임하거나, 실패를 면제하거나 패널위원에게 실패를 개선하기 위해 특정한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이 실패를 면제하거나, 개선 후 실패가 중지되었다고 결정하는 데 합의하는 경우, 그 패널위원은 계속 패널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이 제22.9조제4항라호를 준수하는데 잠재적으로 실패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양 당사국은 제22.9조 제4항 라호(패널의 설치)를 준수하도록 잠재적 실패에 대처하도록 노력한다.
33. 패널 절차에 적용 가능한 모든 기간은 패널위원이 사망, 사임,

해임되거나 실패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허락되거나, 또는 달리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진 날로부터 대체자가 선정되거나 개선 후 실패가 면제 또는 중지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정지된다.

34. 패널은 제소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연속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언제든지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패널은 양 당사국이 그렇게 하기로 공동 요청을 하는 경우, 업무를 언제든지 정지한다. 그러한 정지의 경우, 이 모범규칙에 규정된 모든 관련 일정표는 업무가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된다. 패널의 업무가 연속 12개월을 초과하여 정지된 경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22.9조(패널의 설치)에 따른 패널 설치 요청 권리는 소멸된다.
35.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한 후, 패널 절차에 적용 가능한 모든 기간을 수정할 수 있고, 패널위원회가 교체될 때와 같이 절차에 요구 되는 대로 다른 절차적 또는 행정적 조정을 할 수 있다.
36. 패널은 패널 절차에서 제기되는 사안을 배타적으로 고려하고, 사안을 결정하는 그들의 책임을 다른 어떠한 인에게도 위임하지 아니한다.

## 심리

37. 의장은 양 당사국, 다른 패널 구성원, 그리고 책임 사무소와 협의 한 후 심리의 날짜, 시간 및 장소를 정한다. 책임 사무소는 결정된 심리의 날짜, 시간 및 장소를 양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패널은 피소 당사국의 서면 반박 입장 제출 전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리를 연다.
38.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심리는 피소 당사국의 수도에서 연다.
39. 양 당사국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 패널은 추가 심리를 소집할 수 있다.

40. 모든 패널위원은 각 심리에 출석한다. 최초 심리 이후에 패널위원 대체자가 선정된 경우, 패널은 한 쪽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패널이 새 심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새 심리를 연다.
41. 패널의 모든 심리는 대중이 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이라는 표현은 반드시 심리에 물리적으로 임석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아니 한다. 패널 심리를 대중이 볼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 패널은 전자적 수단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과 연계하여 결정한 수단으로 그러한 심리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심리를 유선방송을 제외한 방송으로 내보내는 경우, 양 당사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개한다. 단, 패널은 모든 비밀 정보 논의 기간 동안에는 심리를 비공개로 한다.
42. 심리 중에 비밀 정보를 제출 또는 논의하고자 하는 당사국은 규칙 제7호에 따라 패널에 그러한 의도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가능한 한도에서, 그 당사국은 심리일로부터 최소 7일 이전에 그러한 서면 통보를 제공한다.
43. 승인된 인만 심리의 비공개 된 부분에 참석할 수 있다.
44. 심리일로부터 2일 이내에 각 당사국은 규칙 제6호에 따라 심리에 참석하는 당사국 대표단의 이름이 있는 문서를 다른 쪽 당사국과 책임 사무소에 전달한다.
45. 패널은 제소 당사국과 피소 당사국에게 동일한 시간이 부여되도록 보장하면서 다음의 방식으로 심리를 수행한다.

### 주장

- 가. 제소 당사국의 주장,
- 나. 피소 당사국의 주장,

### 반박주장

- 다. 제소 당사국의 답변, 그리고
  - 라. 피소 당사국의 반박 답변.
46. 패널은 심리 동안 언제라도 어느 당사국에게도 직접 질문할 수 있다.
47. 책임 사무소는 각 심리의 속기록이 준비되도록 주선하고, 준비된 이후로부터 가능한 한 조속히 양 당사국과 패널에게 그 속기록의 전자사본을 전달한다.

## 통보

48. 협정과 이 모범규칙의 요건에 따라 양 당사국에게 통보하는 것에 대하여, 패널은 직접 또는 등기우편, 쿠리어, 팩스, 전자우편 또는 수령이 합리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통신수단으로 양 당사국에게 통보할 수 있다.
49. 패널은 규칙 제48호에 따라 적절한 경우 통보 주소를 양 당사국의 사무소로 한다. 패널은 이 통보를 책임 사무소를 통해 전달한다.

## 보충적 서면 입장

50. 패널은 절차 동안 언제라도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질의를 제시할 수 있다. 패널은 서면 질의를 전자적 그리고 서면 형태로 책임 사무소를 통해 각 당사국에 전달한다. 책임 사무소는 즉시 전자 사본을 전달하고 질의의 종의 사본은 실행 가능한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양 당사국에 전달한다.
51. 각 당사국에게 다른 쪽 당사국이 제출하는 답변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공할 기회가 주어진다.

52. 각 당사국은 심리 중 제기된 사안에 답변하는 보충적 서면 입장을 책임 사무소에 전달할 수 있다.

53. 각 당사국은 규칙 제7호에 따라 패널의 서면 질의, 서면 의견, 또는 규칙 제50호, 제51호 또는 제 52호에 따른 다른 모든 입장에 대한 답변을 규칙 제9호에 따라 패널이 규정한 일정표에 명시된 날짜 이내에 제출한다.

### 비정부기관의 서면의견 제출

54. 패널은 제22.10조제1항마호(절차규칙)에 따른 서면의견 제출에 대한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비정부기관의 요청에 응할 수 있다. 단, 그 기관은 규칙 제55호 및 제56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55. 비정부기관은 피소 당사국의 최초 서면 의견이 공개된 이후로부터 7일 이내에, 또는 그 입장이 비밀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공개본이 공개된 이후로부터 7일 이내에, 책임 사무소에 서면 의견 제출 요청을 전달해야 한다. 그 요청은

가. 적용 가능한 경우, 활동의 성격, 회원 자격, 법적 지위, 자금원 및 당사국 영역 내의 주소를 포함한 요청을 제출하는 비정부기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나. 비정부기관이 자신의 서면 의견에서 다를 것으로, 패널이 고려하는 어떠한 법적 또는 사실적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특정한 사안을 적시한다.

다. 비정부기관의 서면 의견이 어떻게 분쟁 해결에 기여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의견이 당사국이 한 혹은 할 것으로 기대되는 법적 그리고 사실적 주장을 반복하지 아니할 것 같은 이유, 또는 양쪽 당사국과 다른 시각을 가지는 이유를 설명한다.

라. 비정부기관이 어느 한쪽 당사국과 직접적 혹은 간접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요청이나 서면 의견 준비 과정에서 자신의 회원이나 변호인 이외의 당사국, 그 밖의 정부, 개인 또는 기관에게서 재정적 또는 그 밖의 도움을 받았는지 혹은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지 여부를 공개하는 문안을 포함한다. 그리고

마. 네 쪽을 넘지 아니한다.

56. 규칙 제55호에 따른 요청 또는 제59호에 따른 입장은 모두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모든 문서는 행간 여백 없이 타자로 작성하며, 12 포인트 타임스 뉴 로만체 또는 휴먼명조체로 8.5x11인치 크기 또는 A4용지에 1인치 또는 2.5센티미터의 여백을 설정하여 작성한다. 요청 또는 입장은 비정부기관의 대표가 서명하고 날짜를 기록하여야 하며,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하고, 규칙 제7호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57. 책임 사무소는 각 당사국에게 비정부기관의 모든 요청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그 요청을 대중에게 공개한다. 양 당사국과 협의한 후에 패널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 의견의 전체 또는 부분 제출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책임 사무소는 신속하게 (가) 비정부기관과 양 당사국에 자신의 결정을 통보하고, (나) 그 결정을 대중에게 공개한다.
58. 규칙 제57호에 따라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패널은 규칙 제55호에 기재된 요소와 규칙 제56호의 준수를 고려한다.
59. 패널이 요청을 수용하는 경우, 비정부기관은 심리일로부터 21일 이전에 책임 사무소가 지정하는 날까지 서면 의견을 패널에게 제출 한다.
60. 비정부기관의 서면 의견은 규칙 제56호를 준수하여야 하며
  - (가) 모든 부록을 포함하여 10쪽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리고
  - (나) 비정부기관이 요청에 기술하고 패널이 수령하기로 합의한 사실적 및 법적 사안만을 다루어야 한다.

61. 책임 사무소는 규칙 제59호에 따라 비정부기관의 모든 서면 의견을 신속하게 양 당사국에게 제공하며 그 서면 의견을 대중에게 공개한다.
62. 패널은 각 당사국에게 패널이 수령하기로 결정한 어떠한 비정부 기관의 어떠한 서면 의견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고 응답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63. 패널은 규칙 제59호 및 제60호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서면 의견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패널은 수령하기로 결정한 비정부기관의 서면 의견에 제기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보고서에 언급할 것을 요구 받지 아니한다.
64. 분쟁에서 비정부기관의 서면 의견 제공 요청의 제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각 당사국은 패널 구성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을 공개적으로 통보한다.
  - (가) 패널의 설치,
  - (나) 각 당사국 영역 내의 비정부기관이 분쟁에서 서면 의견 제공 요청을 제출할 기회, 그리고
  - (다) 이 모범규칙에 합치되는 그러한 제출을 하기 위한 절차 및 요건.
65. 패널은 비정부기관에게 당사국들이 합의하는 경우 패널 절차에 참여할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일방적 접촉

66. 패널은 다른 쪽 당사국의 참석 없이 한 쪽 당사국과 회합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67. 어떠한 패널위원도 다른 패널위원과 다른 쪽 당사국의 참석 없이 한 쪽 당사국과 그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안의 어떠한 측면도 논의 할 수 없다.

68. 당사국 대표자의 부재 시, 패널은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는 인 또는 기관과 회합하거나 패널이 고려하는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지 아니한다.

### 정보 및 기술적 자문

69. 패널은 제22.10조제4항(절차규칙)에 따라 자체 발의 또는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심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을 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70.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을 구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한 후 그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는 하나 이상의 인 또는 기관을 선정한다.

71. 패널은 본인, 또는 그의 고용인, 파트너, 동업자 또는 가족이 본인의 독립성 또는 공평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행동 규범상 부정의 인상 또는 편견의 우려를 합리적으로 야기할 수 있는 재정적 또는 그 밖의 이해를 가지는 경우 규칙 제 70호에 따라 그를 선정하지 아니한다. 패널은 기관, 또는 그 소유인 또는 지배인, 또는 패널의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 요청을 처리하는 고용인이 기관의 독립성 또는 공평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행동 규범상 부정의 인상 또는 편견의 우려를 합리적으로 야기할 수 있는 재정적 또는 그 밖의 이해를 가지는 경우 규칙 제70호에 따라 그 기관을 선정하지 아니한다.

72. 각 당사국은 규칙 제70호에 따른 인 또는 기관 선정일 후 5일 이내에, 제안된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 요청에 대하여 규칙 제7호에 따라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패널은 요청을 종결 짓는데 있어 양 당사국의 의견을 고려한다.

73. 패널은 책임 사무소에 그 요청의 사본을 전달하고, 책임 사무소는 양 당사국 및 규칙 제70호에 따라 선정된 인 또는 기관에 그 요청의 전자 사본을 실행 가능한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전달한다. 책임

사무소는 그 요청을 대중에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74. 패널은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도록 요청 받은 인 또는 기관이 그 요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책임 사무소에 답변을 전달하도록 요청한다.
75. 책임 사무소는 자문을 제공하도록 요청 받은 인 또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을 양 당사국에게 전달하고 규칙 제14호에 따라 대중에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패널은 규칙 제7호에 따라 양 당사국에게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이 전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양 당사국이 그에 대한 서면 의견을 패널에 제출하도록 날짜를 정한다.
76.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의 제공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언제나, 패널 절차에 적용 가능한 모든 기간은 그 요청이 전달된 날로부터 패널에 그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이 전달된 날 또는 그 요청이 전달된 날 후 45일 중 이른 날까지 정지된다.

### 기간 산출

77. 패널 절차를 위한 기간은 피소 당사국 영역의 날짜에 합치되는 달력상의 일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78. 협정, 이 모범 규칙 또는 패널이 어느 날짜 또는 사건 전 또는 후에 어떤 일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날짜 또는 사건 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언어

79. 패널 구성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양 당사국은 패널 절차를 위한 공동 작업언어에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사국이 하나의 공동 작업언어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모든 서면입장

제출 및 구두 변론을 영어 또는 한국어로 한다. 양 당사국이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언어를 공동 작업언어로 합의하는 경우, 패널은,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규칙 제9(가)호, 제9(나)호, 제9(다)호, 제9(바)호, 제9(사)호, 제55호, 또는 제59호에 따라 그 당사국의 서면입장 제출 기간을, 적절한 경우, 최대 3일까지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패널은 3일 보다 더 길게 연장할 수 있다.

80. 각 당사국은, 패널 절차에서 자국의 최초 서면 입장을 전달하기 전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서면 입장 및 구두 변론을 영어, 한국어 또는 두 언어 모두로 할 것인지 여부를 책임 사무소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책임 사무소는 신속히 패널에게 통지 한다.
81. 규칙 제80호에 따라 각 참여 당사국이 제공한 자문에 의거하여, 양 당사국이 패널 절차에서 구두 변론을 두 개 이상의 언어로 할 의사가 있거나, 패널위원이 심리의 통역을 요청하는 경우, 책임 사무소는 심리 통역을 주선한다. 패널위원이 서면 입장의 영어 또는 한국어 번역을 요청하는 경우, 각 경우에 맞게, 책임 사무소는 신속히 번역을 주선하고 양 당사국에게 서면 입장 번역본을 전달한다. 한 쪽 당사국이 패널위원이 번역을 요청하지 아니한 서면입장의 번역을 요청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책임 사무소에 이를 알리고, 책임 사무소는 신속히 번역을 주선하고 양 당사국에게 서면 입장 번역본을 전달한다. 책임 사무소는, 패널위원 또는 한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서면입장 번역에 필요한 시간을 신속히 산정한다.
82. 책임 사무소가 문서의 번역을 주선하도록 요구되는 경우, 그 문서의 제출에 따라 산출이 되는 기간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번역 기간을 주도록 한다. 번역본을 준비하는 것이 규칙 제81조에 따라 패널에게 제공된 산정치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 패널은 규칙 제9호에 따라 공표된 일정표를 그에 상응하도록 조정한다.

83. 패널위원이 번역을 요청하지 아니한 문서를 번역하는 데서 발생한 비용은 번역을 요청하는 당사국이 부담한다. 패널 절차에서 요청된 그 밖의 모든 번역 및 통역의 비용은 양 당사국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84. 각 당사국은 이 모범 규칙에 따라 행해진 통역 또는 번역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원본 문서와 이 모범 규칙에 따라 준비된 번역본 사이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원본 문서가 우선 한다.

### 혜택의 정지 및 이행 패널

85. 패널은 제22.13조 (불이행) 또는 제22.14조 (이행 검토)에 따라 한 쪽 당사국이 패널을 요청하는 경우 재소집한다. 그러한 요청 시점에 패널위원이 직무수행이 가능하지 아니할 경우, 대체되는 패널위원을 선정했던 선정 절차에 따라 가능한 한 신속히 대체 패널위원을 선정한다.

86. 이 모범 규칙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제22.13조 (불이행) 또는 제22.14조 (이행 검토)에 따라 재소집된 패널에 적용된다. 단, 다음을 제외한다:

- (가) 패널의 재소집을 요청하는 당사국은 패널의 재소집일 또는 재소집 된 패널에서 직무를 수행할 모든 인들이 확정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국의 최초 서면입장을 제출한다
- (나) 패널이 공표하는 일정표는 규칙 제85호에 따라 패널을 요청한 당사국의 최초 서면입장 전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피소 당사국이 최초 서면입장을 제출하도록 날짜를 정한다
- (다) 패널은 반박 서면입장을 포함한 추가적인 서면 입장 제출을 위한 날짜를 정하여 각 당사국이 협정 및 이 모범 규칙에 규정된 패널 절차를 위한 기한을 조건으로 동일한 수의 서면 입장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라)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심리를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심리를 열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 금융 서비스 및 자동차에 관한 분쟁

87. 이 모범 규칙은, 필요한 변경을 위하여, 제13.18조 (분쟁해결) 및 부속서 22-가 (자동차에 관한 대체적 분쟁 절차)에 따라 설치된 패널과 그 절차에 적용된다.

### 책임 사무소

88. 피소 당사국은 책임 사무소를 설치하여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 (가) 패널에게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 (나) 패널을 위한 접촉선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 (다) 패널위원 및 패널 절차에서 패널이 보유하는 그 밖의 개인에 대한 보상의 지급을 주선한다.
- (라) 협정과 이 모범 규칙 및 행동 규범을 포함하여 절차에 관련된 그 밖의 문서의 사본을 패널위원에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 (마) 심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실행 계획을 조직하고 조율한다
- (바) 패널 절차의 완전한 기록 사본을 영구적으로 보유한다 그리고
- (사) 협정, 이 모범 규칙에 따른 또는 공동 위원회가 정한 그 밖의 모든 임무를 수행한다.

### 패널후보명부의 유지

89. 양 당사국은 제22.9조제3항 (절차 규칙)에 따른 패널후보명부의 구성을 각 다른 쪽 당사국에게 알린다. 양 당사국은 패널후보명부에 가해진 모든 변경에 대하여 다른 쪽 상대국에게 신속히 알린다.

## 보상 및 경비의 지급

90. 교통비 및 숙박비를 포함하여, 제 22.10조4항 (절차 규칙) 및 이 모범 규칙에 따라 패널위원 및 패널절차에서 패널이 보유하는 그 밖의 개인이 제공한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보상과, 규칙 제81호 내지 제83호에 따라 합의된 경우 번역 및 통역 비용을 포함한 패널의 제반 경비는 양 당사국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91. 각 패널위원, 보조인 및 전문가는 각자의 시간 및 경비를 기록하고 최종 청구서를 책임 사무소에 제공하며 패널은 제반 경비를 기록하고 최종 청구서를 제공한다.

## 개정

92. 양 당사국은 이 모범 규칙의 개정을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개정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한다.

## 발효 및 종료

93. 이 모범 규칙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
94. 이 모범 규칙은 본 협정의 종료와 함께 또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종료한다.

## 부록 1 승인된 인

1.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제출한 비밀 정보에 접근이 필요하고 패널이 승인된 인으로 지정하기를 희망하는 권한 있는 대표 명단을 패널 및 다른 쪽 당사국에 제출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 명단상의 인수를 가능한 한 제한한다. 한 쪽 당사국은 자국 명단에 대한 개정사항을 언제라도 제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한 쪽 당사국 또는 책임 사무소는 비밀 정보를 수령함으로써 제22장에 따른 패널 절차 밖에서 혜택을 얻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인, 또는 실체의 피고용인, 임원 또는 대리인을 승인된 인으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3. 책임 사무소는 분쟁 중 비밀 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고 패널이 승인된 인으로 지정하기를 희망하는 책임 사무소의 승인된 피고용인 또는 패널위원의 보조인 명단을 패널 및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책임 사무소는 명단상의 인 수를 가능한 한 제한한다. 책임 사무소는 명단에 대한 개정사항을 언제라도 제출할 수 있다.
4. 한 쪽 당사국은 명단 또는 명단에 대한 개정사항이 전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또는 행동규범의 위반을 입증할 정보에 대해 알게 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패널이 인을 승인된 인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전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패널은 해당 지정으로 인해 비밀 정보의 소유인 또는 정보원의 이해에 대하여 발생하는 모든 잠재적인 피해를 고려하여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한다.
5. 당사국이 이의를 제기한 후 패널이 인을 지정하는 경우, 비밀 정보는 정보를 제출하는 당사국이 다음의 합리적인 기회를 가지기 전까지 승인된 인에게 공개될 수 없다.:
  - (가) 정보의 회수, 이 경우 패널은 비밀 정보를 제출한 당사국에게 그 정보를 포함하는 모든 기록을 반환하고 다른 쪽 당사국은 자국 국내법에 따라
    - 1) 그 정보를 포함하는 모든 기록을 파기하거나, 또는
    - 2) 그 정보를 제출한 당사국에게 그러한 모든 기록을 반환한다. 또는
  - (나) 해당 정보의 비밀 정보로의 지정을 철회.
6. 인을 승인된 인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이의에 대한 결정을 조건으로

하여, 패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명단 상의 인을 분쟁을 위해 승인된 인으로 지정한다. 각 승인된 인은 부록 3에 규정된 비밀유지각서에 서명하고 패널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한·미 FTA 주요내용

---

2012년 6월 인쇄 & 발행

발 행 | 외교통상부 FTA 이행과  
Tel.(02)2100-0830

---

인쇄 | 애드컴서울  
Tel.(02)2285-6601

